

월간

재정포럼

2015. November_Vol.233

11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미래세대를 생각해야 하는 국가채무/ 이인실

현안분석

장기전망 방법에 대하여: 의료비(건보진료비)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종면
201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의 업적 바로 보기/ 홍우형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폴란드, 연구·개발 소득공제에 대한 개정안 발표 외

정책흐름

G20 정상회의 재무트랙(경제분야) 주요성과 외

CONTENTS

권두칼럼

미래세대를 생각해야 하는 국가채무 · 이인실 02

현안분석

장기전망 방법에 대하여: 의료비(건보진료비)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중면 08

201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의 업적 바로 보기

· 홍우형 22

공공정책포럼

Global macro outlook and key macro issues for Korea 35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폴란드, 연구·개발 소득공제에 대한 개정안 발표 외 44

정책흐름

G20 정상회의 재무트랙(경제분야) 주요성과 84

농식품부, 내년 봄 가뭄대책 예산 1,450억원 추가 편성 89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환원 추진 92

연말정산, '정부3.0'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준다 93

이슈&포커스

복지재정 늘리기 전에 새는 곳부터 찾아야 외 98

미래세대를 생각해야 하는 국가채무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찬바람이 불고 한 해를 마무리할 연말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악몽이 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한국전쟁만큼이나 흘러간 옛 사건인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정황들이다. 최근 한국경제가 당면하는 현실이 18년 전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당시의 건전한 재정이 위기극복에 큰 힘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상력을 발동해보면 더욱 실감이 난다. 주지하다시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1997년 11.9%였지만 2003년 20.4%로 20%대로 올라선 이후 2009년 31.2%로 30%를 넘어섰고 2016년에는 40%대에 진입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선진국에서 비롯된 위기였다면 최근 솔솔 피어나는 위기설은 선진국 신흥국 가릴 것 없이 광범위한 국가들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개인도 가계도 정부도 기업도 부채가 적정 수준이어야 위기 상황이 닥쳐와도 견딜 수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 불황 지속, 되살아나는 악몽

10월초 IMF가 낸 금융안정보고서 추산에 의하면 지금 신흥국의 기업들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부채의 규모가 3조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세계경제가 아주 호황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오히려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IMF는 세계 금융 위기가 일어난 이래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긴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하방위험의 배경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중국 경제의 구조 전환과 하락하고 있는 국제 원자재 가격,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들고 있다.

물론 이번 IMF보고서도 한국을 위협스런 국가에 넣고 있지도 않고 당시와 달리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두둑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997년 당시 개도국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로 인해 선진국들이 위험회피 차원에서 자금을

회수했고 외화표시 채권 차환이 어려워지며 유동성 부족사태가 일어나고, 급격하게 위험 프리미엄이 폭증했던 악몽이 되살아나는데 지금의 상황이 그 당시와 매우 닮아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의 세월호 침몰사고와 금년 들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파동까지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고 무엇보다 늘어가는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욕구와 분배중심의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채무를 이 정도 수준에서 방어하기도 쉽지 않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반복되는 걱정스러운 점들이 있다. 우선 최근 들어 예산 편성시 경제전망치를 계속 낙관적으로 보아왔다는 점이다. 세입 산출의 기초자료인 경상성장률을 2012년 이후 매년 6~7%로 전망했지만 결과는 3%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나마 이번 2016년 예산에서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3.3%에 물가지수인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0.9%를 더한 경상성장률을 4.2%로 잡은 것은 그나마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감안하려는 노력으로 생각된다.

낙관적 경기전망과 정치권 포퓰리즘 경계해야

또한 최근의 재정정책의 변화 중 주목되는 점은 경기대응적인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추경예산은 그 규모가 커지기도 했지만,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서 편성되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상황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다양한 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증가일로에 있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문제이다. 국가가 국민복지를 책임지는 정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가채무와 가계부채와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기 마련이고 가계와 기업부채가 느는 것을 방치할 경우 결국은 정부부채로 전이된다는 교과서적인 논리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커지면 소비여력이 떨어져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이렇게 해서 불황이 장기화되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추경 등을 통해 다시 빚을 져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가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반복되는 우려 중 가장 압권은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채무비율을 단순 국제비교를 통해 안심하고자

.....
반복되는 우려 중 가장 압권은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채무비율을 단순 국제비교를 통해 안심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제일 바보 같은
 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반복되는
 국가부채의 미래에 대한
 우려는 절대
 과하지 않다.**


하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들이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병행하여 경기회복을 도모해 왔고 이로 인해 주요 선진국의 국가채무가 급증해 OECD 평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73.5%에서 2015년에는 114.6%로 41.1%p나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은 같은 기간 동안 28.7%에서 38.5%로 9.8%p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단순 숫자놀이가 그것이다.

절대적 수준에서 OECD 국가의 평균 수준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단순한 국제적 비교는 재정건전성에 대해 판단을 잘못하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어 위험하다. 선진국의 경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전비조달을 위하여 국채를 발행하였고, 1970년대 이후는 석유파동, 최근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 정책을 취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도 적극적 정책을 전개해 왔다. 반면 몇몇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가부채비율이 20~30% 수준에 불과하여도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재정건전성이 의문시 되고 있기도 하다. 라인하트와 로고프의 연구 이후 이루어진 많은 실증연구결과들이 높은 국가부채가 성장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는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도 감내할 수 있지만 개도국이나 신흥국의 사정은 다르다. 국제자본시장이 요동을 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것만으로 금융시장과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국가부채 우려 불식시켜야

안타깝게도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국가채무는 정부가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힌 계획을 지키지 못하고 매년 확대되어 왔다. 그동안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열 번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해 볼 때 매년 정부가 계획상 전망한 수치보다 증가해 왔다. 최근 2년간 정부가 발표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만 비교해 보아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적게는 2.8%p(2015년)에서 많게는 4.8%p(2018년)나 전망했던 수치보다 높아졌다.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제일 바보 같은 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반복되는 국가부채의 미래에 대한 우려는 절대 과하지 않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재정법」 제86조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

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을 지키기에 앞서서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를 위해서라도 국가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선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맘 때면 외환위기의 악몽을 떠올리게 되나보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losing	Mid	Ch
	6.1293		
	1.2386		
	0.4823		
	8.8393		
	2.6432		
	1.2827		
	618.813		
	7.9738		
	0.0082		
	-0.0029		
	-0.0004		
	-1.3000		
	0.007		
	0.005		
	6.9100		
	2.0663		
	1.0028		
	483.750		



| 현안분석 |

- 장기전망 방법에 대하여: 의료비(건보진료비)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종면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1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의 업적 바로 보기
홍우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장기전망 방법에 대하여: 의료비(건보진료비)의 사례를 중심으로

I. 서론



김종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hrv@kipf.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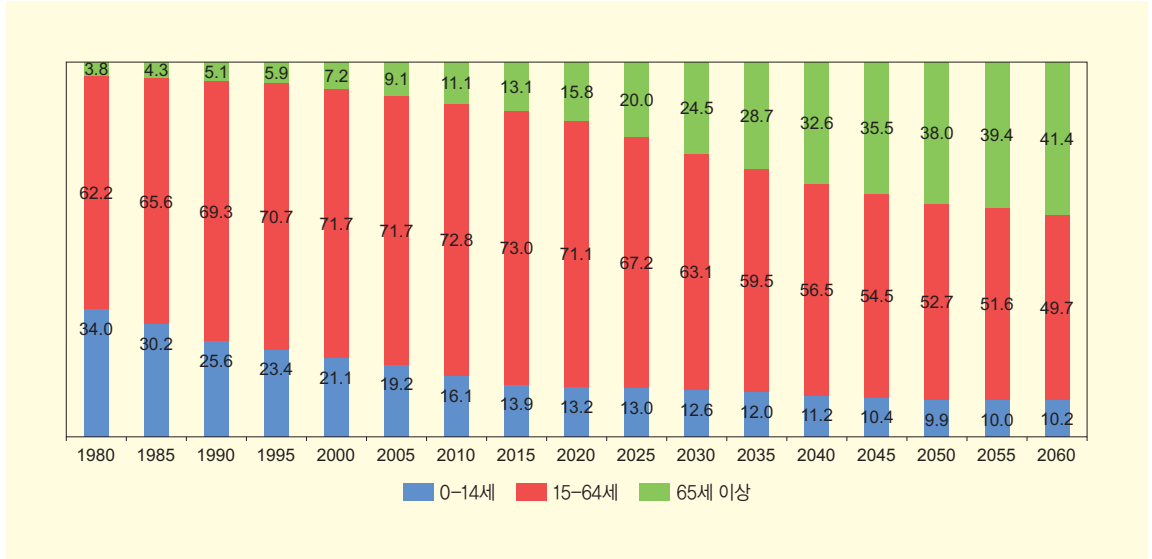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경제 및 재정분야에서 이에 대응한 정책을 강구함에 있어 최근에는 장기적인 시각의 중요성 및 그에 따른 장기추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과거 개발연대에는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사회 여러 분야의 급속한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 사회와 정책의 주요 관심사였다면, 근래에는 인구 고령화가 우리 사회 모든 방면의 큰 흐름을 다른 요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경제성장을 최우선 시하였던 과거에는 미래를 수동적 입장에서 전망하기보다는 미래의 변화를 정책당국의 의지로써 선택하고 기획하여 구현한다는 성격이 다분히 강하였으며, 그 대상이 되는 기간도 5년 내지 10년 정도로 상대적으로 짧았다. 반면 인구연령구조의 고령화 현상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수십 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펼쳐지나, 그 변화의 폭이 워낙 커서 다른 모든 사회변동 요인을 압도한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변화의 방향이나 속도를 바꾸려는 거의 모든 정책적 노력에 지금껏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같은 경험을 볼 수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인구연령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사회복지 및 사회보험의 지출대상 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세입 기반이 위축되고 지출에 대한 수원은 급증하여 재정에 대한 압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일례로 <표 1>과 [그림 2]에서는 지난 24년간의 건강보험 재정을 요약하였는데, 총비용이 1990년대까지는 명목GDP와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나,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정 전망을 확장하면서 2000년 이후에는 경제성장보다 확연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입 측면에서는 건강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년 소요 비용을 충당할 수

[그림 1] 연령별 인구 구성비 추이(1980-2060년)

(단위: %)



출처: KOSIS 인구가구/추계인가구/장래인가구추계/가정별·연령별(전국) 추계인가구를 이용하여 작성

<표 1> 건강보험 재정추이(1990-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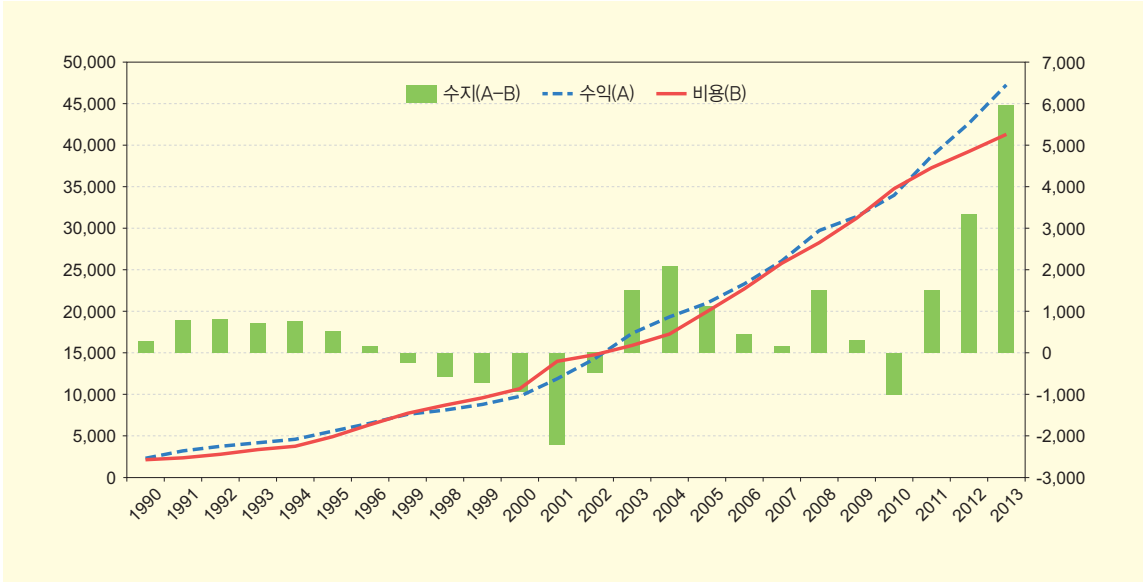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원,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수익(십억원)	계(A) (전년 대비 증가율)	2,432 (15.11)	5,614 (19.17)	9,828 (10.53)	21,091 (8.67)	33,949 (7.77)	47,206 (11.14)
	보험료	1,884	3,601	7,229	16,928	28,458	39,032
	정부지원금	364	755	1,553	3,695	4,856	5,799
	기타	185	1,258	1,046	469	635	2,375
비용(십억원)	계(B) (전년 대비 증가율)	2,164 (15.11)	5,076 (27.86)	10,744 (11.80)	19,980 (15.28)	34,926 (11.98)	41,265 (5.40)
	보험급여비	1,803	3,628	9,286	18,394	33,749	39,674
	관리운영비	192	385	696	759	675	631
	기타	169	1,064	763	827	502	960
총수지율(B/A) (%)		89.0	90.4	109.3	94.7	102.9	87.4
당기차액(A-B)(십억원)		268	538	-916	1,111	-977	5,941
연간적용 인구 1인당 보험료(원)		59,583	108,642	187,432	432,368	683,228	899,690
연간적용 인구 1인당 급여비(원)		49,687	92,839	202,144	388,017	692,159	796,199
전년 대비 명목GDP 증가율		(20.9)	(17.2)	(10.1)	(5.0)	(9.9)	(3.8)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명목GDP 증가율은 국가통계포털(KOSIS)의 명목GDP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산정하였으며, 명목 단위인 건보 수익과 지출과 비교하기 위하여 실질GDP 성장률이 아니라 명목GDP 증가율을 제시하였음

[그림 2]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1990-2013년)

(단위: 십억원)



주: 그래프는 전병목 외(2010)의 p. 87 그림을 참조하고 데이터를 update하여 그래프 작성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전병목 외, 『사회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12.

있는 수준으로 보험요율을 책정하여, 대체로 비용과 같은 속도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세와 연금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수입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건강보험에 비해 재원확보가 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험료는 국민이 체감하는 재정부담이라는 관점에서는 이미 조세 및 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의 기여금 부담과 별개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대체적(substituting)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연관된 주요 정책 분야에서 공통 요인은 인구변화라고 사료된다.

단기·중기 전망과 아울러, 인구학적 요인의 특성상 장기전망에 대한 필요성이 이처럼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같이 중요성이 더해가는 장기전망의 방법론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몇 가지 생각을 제시

하고자 한다.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의료비, 특히 건강보험 진료비로 국한된 분석을 제시하고자 하나, 본고의 주요 논점은 연금 등 장기추계가 필요한 다른 분야에도 일반화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의료비 자료 검토의 사례

1. 추계방법의 정형화(stylization)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의료비 등의 장래추계 방법을 매우 단순화하여 아래의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우선 의료비 등 장래추계를 하고자 하는 (총량)

변수를 $F(t)$ 라고 했을 때,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는 여러 변수의 벡터인 $\bar{x}(t)$ 와의 관계식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추산할 수 있다. 물론 이때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효과를 생각하거나 정보가 제약되어 과거의 정보에 의존하여야 하는 경우, $\bar{x}(t)$ 보다는 $\bar{x}(t, t-1, t-2, \dots)$ 등과 같이 설명 변수 벡터를 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되도록 간략한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F(t) = F(\bar{x}(t))$$

그런데 위와 같이 가장 일반적인 함수 형태를 사용하면, 장기추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요인인 인구변화가 잘 부각되기 어렵다. 따라서 장기추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구 $P(t)$ 와 인구 외의 다른 요인을 곱셈형식으로(multiplicatively) 분리한 함수 형태로 추계식을 설정하여 인구의 영향을 보기 쉽게 한다. 이때 아래 식에서 $f(t)$ 는 추계변수의 1인당 크기를 나타낸다.

$$F(t) = f(t)P(t), f(t) \equiv \frac{F(\bar{x}(t))}{P(t)}$$

이때 $P(t)$ 는 통상적으로 통계청 인구추계 등을 인용하여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처리하며, 따라서 전망 과정에서는 $f(t)$ 를 규정하여 전망치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된다. 물론 $f(t)$ 까지 구하였다면 최종적으로 여기에 다시 $P(t)$ 를 적용하여 본래 목적했던 $F(t)$ 라는 전망치를 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장기전망에 사용되는 추계 방법은 여기서 다시 ‘거시추계’와 ‘조성법’으로 나눌 수 있다. 거시추계라고 저자가 명칭을 붙인 그룹은 이름 그대로 각 변수를 추가적으로 분해하여 세세한 정보를 활용하기보다는 집계변수(aggregated variables) 위주로 회귀분석 등을 시도하며, 따라서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위와 같은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F(t) = f(t)P(t)$$

이러한 거시추계의 예로는, 특정 시점 t 에서의 사회의 평균소득수준에 대하여 평균의료비의 탄력성이 일정하다는 특성을 이용하는 의료비 전망 방법을 들 수 있다. 즉 평균소득 전망을 먼저 구하거나 가정 한 후, 이를 사용해 $f(t)$ 를 도출하고 이에 다시 $P(t)$ 를 적용함으로써 $F(t)$ 를 구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전망기법으로 보다 자주 사용되는 조성법(cohort-component method)에서는 변수를 더 세밀하게 분해하여 추계한 후 다시 부분별로 추계된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전망 결과를 얻는다. 본래 이 기법은 인구학에서 인구추계를 위해 개발되었는데, 이하 본고에서 살펴보는 의료비의 사례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그 외에도 인구를 한 요인으로 포함하는 전망변수의 추계에서 자주 사용한다. 이러한 인구학적 영향을 받아서인지, 대다수 전망의 사례에서도 더 세밀하게 분해하여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는 연령별 인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연령을 a 라는 첨자로 표기하면, 앞서 살펴봤던 의료비의 추정식은 다음과 같이 더 분해된 형태로 표기할 수 있다.

$$F(t) = \int_a f_a(t)P_a(t)da$$

2. 건보진료비 자료의 실례(조성법)

이제 본절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표기법으로 『건강보험통계연보』에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비를 추계하는 실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통계연보』에 수록된 연도·연령별 진료비와 연도·연령별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분석하기로 한다. 연도별로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시된 자료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4개 연도가 있다.

우선 연령별 1인당 의료비(진료비)를 나타내는 $f_a(t)$ 의 실례는 아래 표에 연도별로 제시되어 있다. 이하 진행되는 논의는 모두 그래프를 이용하여 전개하고자 하나, 같은 내용을 여기서 일단 표로 제시한 것은 이것이 전형적인 조성법 추계임을 독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다. 아래 표에서는 연도별로 특정 변수(여기서는 1인당 진료비)의 연령별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장래 전망치의 추계는 이와 같은 1인당 진료비의 연령별 분포

〈표 2〉 연령별 1인당 진료비 추이

(단위: 천원)

연령층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세	541.6	866.4	958.2	939.5	691.2	572.3	652.8	700.8	728.3	1,075.4
1-4세	361.9	603.5	660.4	706.6	778.1	832.1	957.2	965.6	975.2	950.0
5-9세	200.7	324.8	368.4	386.7	423.6	495.0	543.6	567.7	574.5	571.3
10-14세	108.3	187.7	218.2	230.5	242.7	300.0	320.7	326.6	333.3	344.1
15-19세	105.3	188.7	211.4	229.4	238.2	285.8	302.3	298.8	298.8	314.6
20-24세	119.9	213.6	242.3	266.7	259.8	287.9	308.8	317.4	324.2	337.6
25-29세	189.6	279.9	305.2	339.0	341.1	373.4	401.8	411.6	416.2	433.7
30-34세	198.8	321.4	356.3	394.0	407.7	445.9	485.6	502.4	515.4	540.5
35-39세	214.8	333.7	363.3	400.4	414.2	456.0	492.3	514.8	530.0	561.4
40-44세	240.2	415.4	457.8	494.3	489.9	535.9	567.5	585.2	590.5	622.0
45-49세	301.1	525.6	588.5	648.5	658.2	713.9	759.9	776.1	776.7	801.2
50-54세	404.4	703.9	788.9	873.9	902.6	980.5	1,041.1	1,068.7	1,064.7	1,094.9
55-59세	540.4	923.0	1,072.0	1,162.2	1,203.8	1,292.4	1,375.8	1,414.4	1,394.3	1,418.7
60-64세	647.4	1,221.5	1,368.1	1,522.6	1,528.4	1,651.5	1,777.2	1,837.1	1,810.2	1,850.1
65-69세	741.5	1,485.7	1,674.6	1,840.2	1,991.1	2,152.6	2,327.1	2,384.0	2,333.2	2,375.2
70-74세	828.2	1,630.0	1,896.7	2,200.9	2,392.6	2,609.0	2,824.3	2,897.0	2,877.3	2,959.6
75-79세	686.8	1,720.9	2,035.8	2,381.4	2,695.0	2,960.9	3,245.5	3,367.6	3,423.9	3,606.6
80-84세		1,538.1	1,893.6	2,324.3	2,785.0	3,130.6	3,526.3	3,747.0	3,903.5	4,186.7
85세+		1,110.3	1,431.5	1,892.7	2,596.2	2,999.7	3,536.3	3,948.8	4,268.5	4,678.8
전체	281.3	524.6	599.3	677.3	724.0	809.2	892.1	937.9	963.3	1,018.7

주: 1. 연령별 1인당 진료비는 연령별 진료비를 연령별 적용인구(건강보험)로 나누어 산정

2. 2000년도는 75-79세에 75세 이상 값 포함

출처: - 연령별 진료비 2004-2013년 데이터는 KOSIS/시도별·연령별·성별 급여실적에서 추출

- 연령별 진료비 2000년 데이터는 『2000 건강보험통계연보(제 III-6 표)』 참조

- 연령별 적용인구 2004-2013년 데이터는 KOSIS/시도별·연령별·성별 적용인구 현황(건강보험)에서 추출

- 연령별 적용인구 2000년 데이터는 『2000 건강보험통계연보(제 I-3-1 표)』 참조

를 미래 연도에 대해 추계하여 도출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조성법에 익숙한 독자들은 이 표가 조성법에서 흔히 등장하는 형태로서, 조성법을 이용한 전망치 추계의 출발점에서 오래 등장하는 형태임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제시한 의료비의 경우로 국한하지 않고, 보다 일반적으로 조성법 추계가 사용되는 연금 또는 세대간회계(intergenerational accounting) 분석 등에서도 대부분 이러한 유형의 분포를 사용하며, 여기서는 1개 변수(연령)에 따른 관심 변수(진료비)의 분포를 사용하였으나, 흔히 2개 또는 3개 정도의 변수에 따른 결합분포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제 그래프를 이용한 분석으로 들어가서, <표 3>의 내용과 동일한 정보를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이 기존 자료와 연구에서 이미 여러 번 제시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편의상 그래프에서는 약 5개년 간격으로 일부 연도만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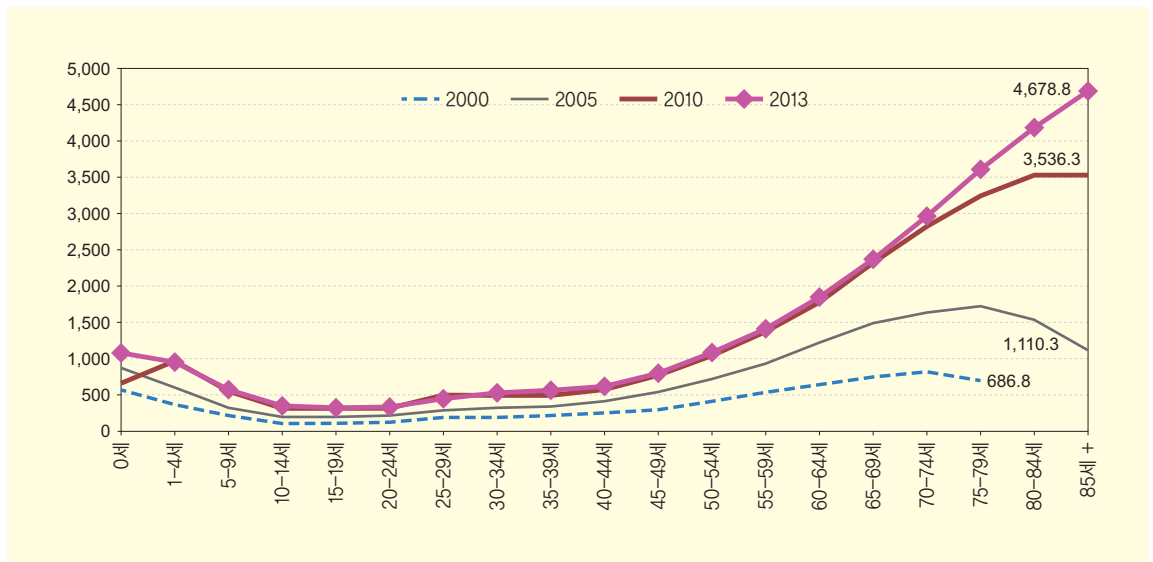
위에 제시한 그래프는 $f_a(t)$ 를 나타낸 것이며,

진료비 추계를 위해서 이에 더해 필요한 $P_a(t)$ 의 실례를 보기로 하자. 건강보험 통계연보에서 연령별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찾아 정리하면 아래 [그림 4]와 같은 형태로 $P_a(t)$ 를 구할 수 있다. 이제 위의 $f_a(t)$, 즉 연령별 1인당 진료비에 아래의 $P_a(t)$ 를 적용하여 t 기의 연령별 총진료비를 구하고, 이를 다시 전 연령층에 걸쳐 합산하면 t 기의 총진료비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과 [그림 4]에서 제시한 그래프는 $f_a(t)$ 와 $P_a(t)$ 를 나타내면서, 두 곡선이 시간 t 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두 그래프를 유심히 보면, 두 그래프를 결합한 총진료비 $F(t) = \int_a f_a(t)P_a(t)da$ 가 어떤 특성을 보이며 움직이는지 '눈대중(eyeballing)'으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정밀한 분석을 시도해 볼만한 연구주제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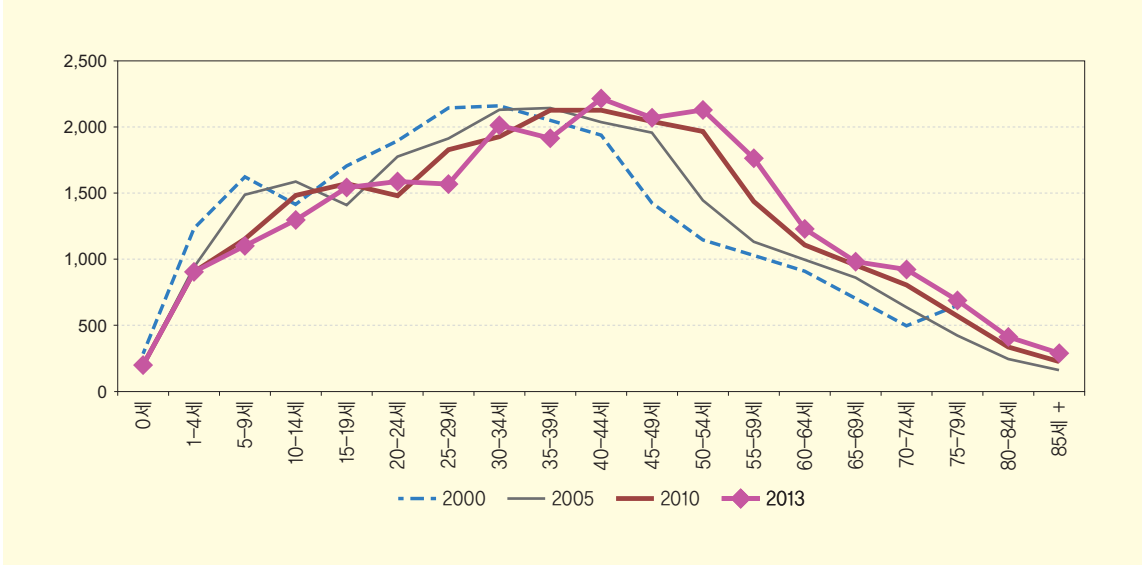
[그림 3] $f_a(t)$: 연령별 1인당 진료비(2000년, 2005년, 2010년, 2013년)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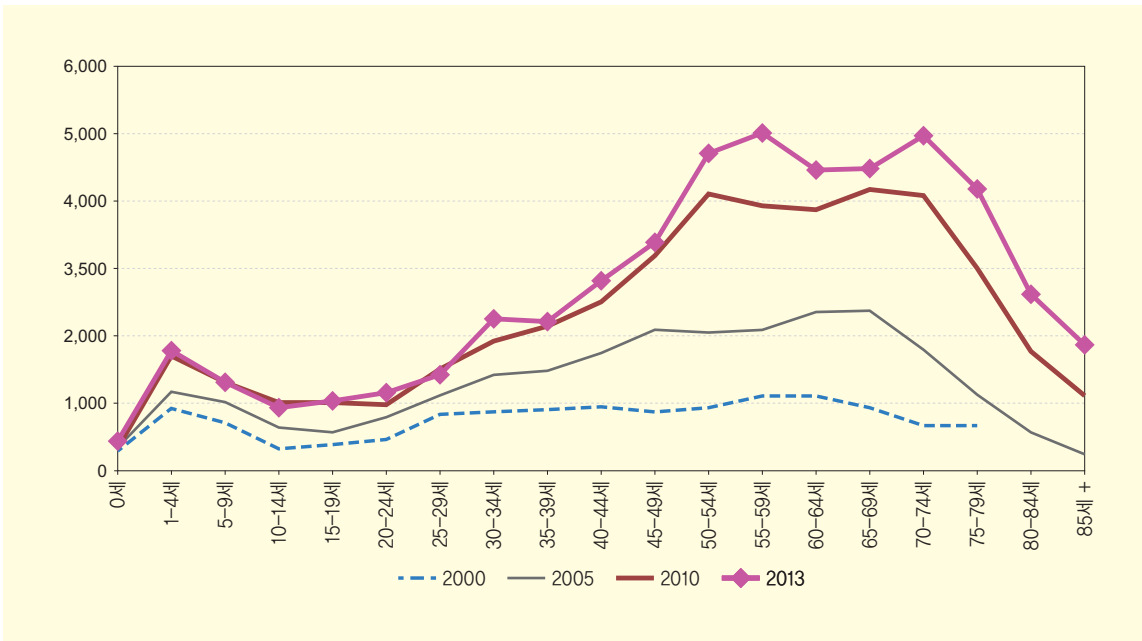
[그림 4] $P_a(t)$: 연령별 건보 적용인구(2000년, 2005년, 2010년, 2013년)

(단위: 천명)



[그림 5] $f_a(t) P_a(t)$: 연령별 진료비 총액(2000년, 2005년, 2010년, 2013년)

(단위: 십억원)



우선 t 기의 총진료비인 $F(t) = \int_a f_a(t) P_a(t) da$ 를 $f_a(t)$ 와 $P_a(t)$ 를 결합하여 구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이미 살펴본 [그림 3]과 [그림 4]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래프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우측으로, 즉 연령이 높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1인당 진료비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그래프가 상향 이동하는 경향도 관측된다. 따라서 이를 결합한 연령별 총진료비 역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우측으로, 그리고 그 수준도 위쪽으로 점차 이동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그림 5]는 이러한 예측과 부합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즉 연령별 총진료비의 전반적 수준이 증가하고 있으며, 진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연령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다.

3. 전망 오차의 사례

고령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자일수록 의료비 지출이 크다는 것은 이제는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이며, 그 결과 총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중 고령층의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진료비 전망 기법과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의료비의 향후 추이에 대한 명제를 제시하여 보다 자세히 검토해보기로 한다.

- ① 연령별 의료비의 특성 : [그림 3]에 나타난 $f_a(t)$ 의 특성은 ‘고령일수록 의료비가 급증한다’고 표현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의료비의 향후 추이에 관한 전문가들의 논의에서 사실상

“
 $f_a(t)$ 와 $P_a(t)$ 두 곡선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하여 두 곡선의 복합적 효과가 반드시 의료비 증가의 가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오히려 지출의 증가 속도를 완화시킬 수도 있다.
 ”

서로 같은 의미로 아래와 같은 명제들이 제시되었다.

- 평생 지출되는 의료비의 대부분은 사망 전 수년 동안에 사용된다.¹⁾
- 평생 지출되는 의료비 중 대부분은 인생의 마지막 1/3 기간에 사용
- ② 연령별 인구 분포의 특성 : [그림 4]에 나타난 $P_a(t)$ 의 특성은 ‘향후 고령층, 특히 초고령층이 급증한다’로 요약될 수 있다.

이제 다시 위의 2개 명제를 복합하면, 고령자일수록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는 현상이 가속화되어 지출이 높은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고령자의 수가 늘고 있고, ‘따라서 고령화로 인하여 통상적인 전망보다도 의료비 증가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명제가 제시될 수 있다. 실제로 의료비 전망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서 그런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f_a(t)$ 와 $P_a(t)$ 두 곡선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하여 두 곡선의 복합적 효과가 반드시 의료비 증가의 가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오히려 지출의

1) 이를 흔히 time-do-die 가설이라고 하며, 의료비 지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절대 연령이 아니라 사망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전의 일정 기간이라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Demographic transition이라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일생 중 의료비 지출이 많은 연령대가 평균수명 증가와 같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본고에서 제시한 단순한 정형화된 식을
 사용하여 많은 조성법 추계연구에서
 사용하는 전망방법을 통해
 실제로 전망치를 도출해보기로 하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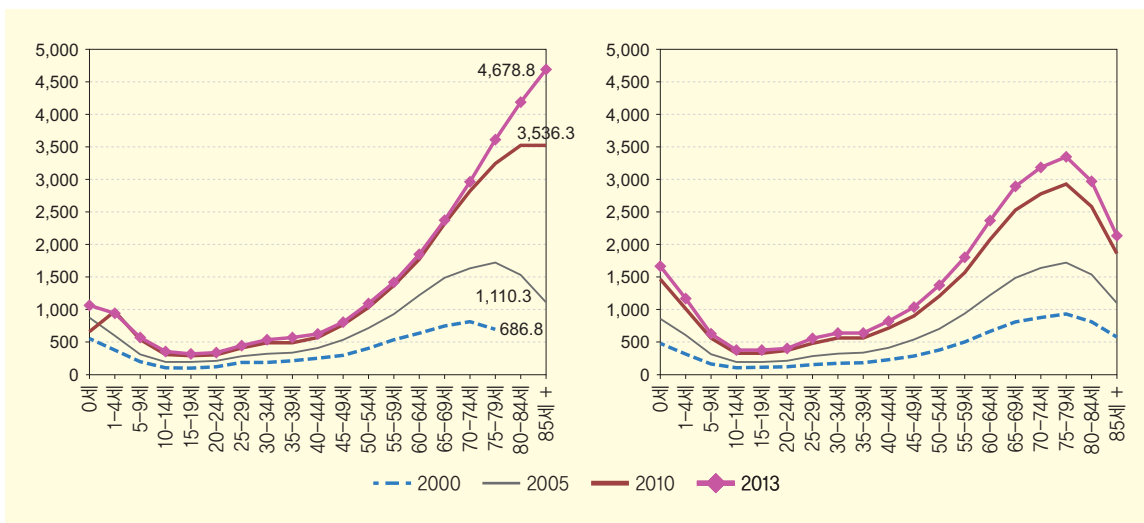
증가 속도를 완화시킬 수도 있다. 나아가 이는 우리가 장기 추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조성법 전망의 취약점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것이 본고에서 제시하는 주요 논점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본고에서 제시한 단순한 정형화된 식을 사용하여 많은 조성법 추계연구에서 사용하는 전망방법을 통해 실제로 전망치를 도출해보기로 하자. 조성법 추계의 경우 $f_a(t) = f_a(\tau) s(t - \tau)$ 의 형태로 특정시점 τ 에서 관

측되는 $f_a(\tau)$ 를 기본으로 하여 $s(t - \tau)$ 라는 배율로 규모를 조정(scaling)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이때 본고와 같은 자료를 사용한다면 $s(\cdot)$ 는 각 연도의 (전 연령 평균)1인당 진료비의 비율을 사용하여 $t - \tau$ 의 기간에 총진료비가 어떤 배율로 변하는지를 추정하기 마련이다. 즉 아래 [그림 6]에서는 2005년의 1인당 연령별 진료비 $f_a(2005)$ 를 기준으로 하여 그래프의 높이를 조절하였는데,²⁾ 비교적 단순한 방법이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조성법 추계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실제 1인당 진료비의 변화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즉 추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에 대한 강한 암묵적 가정이 들어갈 개입될 개연성이 있다.

[그림 6] 실제 $f_a(t)$ 와 $f_a(2005) s(t - 2005)$ 의 비교(2000년, 2005년, 2010년, 2013년)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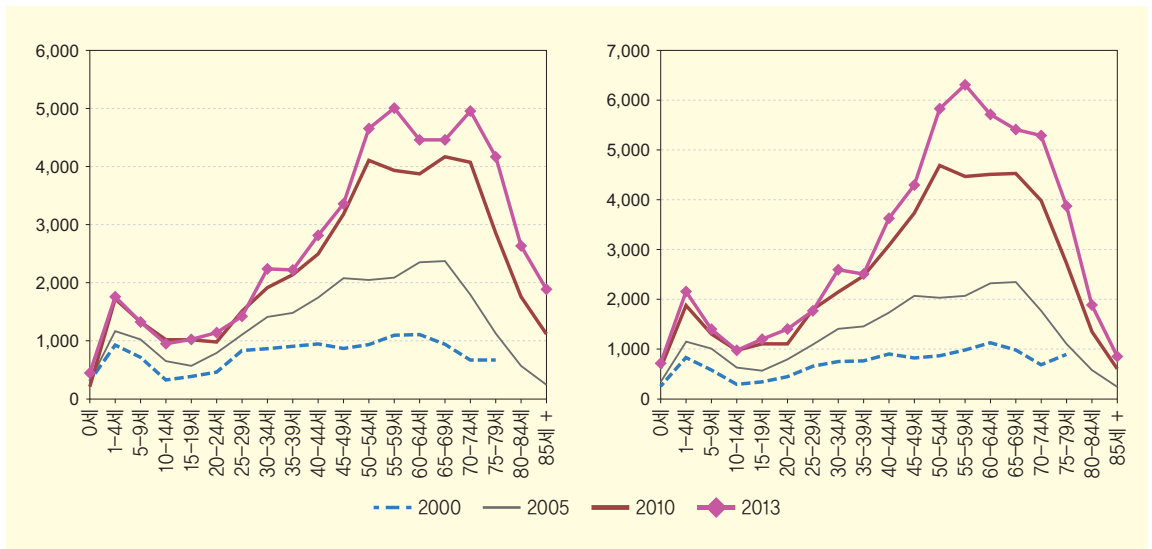
2) 이하에서는 연도별 총진료비의 비율을 사용하여 배율을 조정하였다. 즉 $s(t - 2005) = f(t) / f(2005)$, $f(t) = F(t) / P(t)$ 를 사용하였다.

위의 [그림 6]에서 좌측의 실제 1인당 연령별 진료비 그래프는 지출이 가장 많은 연령이 (그래프의 '최고점'에 해당되는 연령) 2000년 이후 점차 우측으로, 즉 보다 높은 연령대로 이동하는 것이 관측되는 반면, 단순하나 대표적인 조성법 기법으로 도출한 우측의 그래프는 이러한 특성을 놓치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자료 또는 추계에 필요한 지식이 제약된 상황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오차로 생각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 예를 들어 전연령에 걸친 총진료

비는 대략 큰 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기 쉽다. 또한 지금 사례보다 더 복잡한 추계의 경우에는 전망오차를 가늠해보는 것이 본고의 사례와 달리 더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특히 엄밀히는 미래의 소득분포의 변화까지 분석에서 감안해야 하는 연금이나 세대간회계 분석에서는 이러한 검증 및 조율 작업이 어렵고, 반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생략하기 쉬운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7] 실제 $f_a(t)$ 와 $f_a(2005)s(t-2005)$ 를 사용한 연령별 진료비 총액 추계의 비교 (2000년, 2005년, 2010년, 2013년)

(단위: 십억원)



<표 3> 전 연령 총진료비의 추정치 비교

(단위: 십억원)

연도	2000	2005	2010	2013
실제 : $\int f_a(t) P_a(t) da$	12912.22	24861.52	43628.32	50926.22
조성법 추계 : $\int f_a(\tau) s(t-\tau) P_a(t) da$	12251.42	24861.52	47219.93	58012.08

“
 $f_a(t)$ 의 우측 이동은 이전에 지출이 컸던
 연령대의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그보다 고령의 연령대의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그러면 1인당 진료비는 다소 오류가 있어도 총 진료비 전망에서는 오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검증해보기로 하자. [그림 7]에서는 연령별 총진료비의 그래프와 함께 <표 3>에서는 이를 전 연령에 대해 합산한 건강보험의 총진료비가 제시되어 있다. 위의 [그림 6]과 마찬가지로 좌측에는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실제의 연령별 총진료비 통계를 그래프로 나타냈으며, 우측의 그래프는 [그림 6]의 우측에서 본 1인당 연령별 진료비의 추계치 $f_a(2005)s(t-2005)$ 에 [그림 4]의 연령별 건보 적용인구 $P_a(t)$ 를 곱하여 연령별 총진료비의 추계치를 구한 결과이다.

추계 결과를 실제 통계와 비교해보면 기준 연도인 2005년에서 멀어질수록 연령별 총진료비의 추정오차가 커지며, 표에서 제시한 전 연령의 총진료비 역시 상당한 오차가 생긴다. 본고의 추계실험에서 사용한 분석 기간은 약 15년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수십년에 걸친 장기추계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오류가 상대적으로 더 클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오차는 전망과정에서 몇 차례의 조율(calibration)을 통해 다소 완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지금껏 사용한 단순한 조성법 추계가 향후 의료비 변화의 중요한 특성 중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본 절을 시작하면서 제시했던 명제와 같

이 고령층의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총의료비가 지금껏 제시했던 추계결과보다도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추측과 정반대의 결과를 볼 수 있다.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망한 것보다 실제 의료비 증가의 속도는 오히려 낮다는 것을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스케일링을 담당하는 $s(\cdot)$ 의 폭을 조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4. 추계방법의 특성

이상 본고에서 전형적인 조성법 추계 방법으로 간략한 검토를 한 결과, 아래와 같은 제언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연령별 1인당 진료비 곡선 $f_a(t)$ 가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언급한 것이나, 의료비 전망에 이러한 현상이 잘 반영된 사례는 드물다. 오히려 고령층의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증가하고 있고,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총의료비 지출의 증가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f_a(t)$ 의 우측 이동은 이전에 지출이 컸던 연령대의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그보다 고령의 연령대의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별 인구 곡선 $P_a(t)$ 의 움직임을 같이 생각한다면, 앞의 연령대의 인구가 증가하고 후자의 연령대는 인구가 증가하나 아직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의료비의 총량에 미치는 복합적인 효과는 지출의 총량이 전반적으로는 증가하나 단순 추정한 전망치에 비해서는 증가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해석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f_a(t)$ 와 $P_a(t)$ 의 구체적 모양과 각각의 이동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당분간 이러한 증가 둔화 추세

가 유지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의료비의 장기추계에 이를 반영하려면 전망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스케일링 요소인 $s(\cdot)$ 를 본고에서 시도했던 것보다는 정교하고 다소 복잡한 형태로 상정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주요 시사점이라고 사료된다.

이에 더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저자의 견해로는, 위의 제언과 같이 $s(\cdot)$ 를 적절히 수정한다고 하여도 본고에서 시도한 것과 같은 조성법 추계방식으로는 총진료비를 과대추계(overestimate)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조성법 방식은 거시추계 방식에 비해 연령, 소득수준, 기타 계층별 특성별로 상세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한다는 위안을 줄 수도 있고, 거시추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관련 제도를 분석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장기추계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장점 모두가 의미가 퇴색되거나 사실상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체계적 방법론이라고 우리에게 주는 위안에도 불구하고 전망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장애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마지막 절에서 더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
**본고에서 집중한 조성법 전망방법은
 거시추계에 비해
 상세한 분석을 할 수 있으며,
 제도 및 기타 여건을 분석에 반영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

Ⅲ. 맺음말

본고에서는 전망 방법, 특히 장기전망의 주요 접근법에 대한 비교를 시도하였다. 논의의 편의상 상당히 단순화·일반화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추계 방법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이 요약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우선 본고에서 집중한 조성법 전망방법은 거시추계에 비해 상세한 분석을 할 수 있으며, 제도 및 기타 여건을 분석에 반영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거시추계에 비해 분석이 과학적이고 복잡해 보이므로 연구 결과물의 분량이나 제시되는 내역이 연구과제에 투입되는 비용과 노력을 잘 나타낼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고에서 사용한 표기법을 다시 빌리자면, 대개 $f_a(t) = f_a(\tau) s(t-\tau)$ 또는 유사한 설정을 이용하며, 이 과정에서 모형에 설정단계부터 짐작가능한 편익(known bias)를 넣고 분석을 시작할 우려가 있다.³⁾ 본고에서 살펴본 의료비와 달리 연금의 추계 또는 세대간 회계 등에서는 연령에 더하여 소득

3) 앞의 절에서 통상적인 추계방법으로 의료비 전망을 시도할 경우 미래 의료비를 과대추계(overestimate)하기 쉽다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즉 기존 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있었다면 의료비가 피상적인 전망보다는 느린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인지할 수 있었다. 실제로 [그림 2]에서는 2011년 이후 건강보험 지출이 예상을 밑돌아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과대추계한 비용증가에 맞춰 수입을 확보한 점도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2015.9.9일 조선일보 종합A6면에 보도된 기사 「'건강 노인' 늘고, 癌 발생률 줄고, 불경기로 병원 안 가고... 健保흑자 3대 요인」에서는 건강보험 흑의 사후 분석으로 노령층의 건강이 예상보다 개선되었다는 설명이 제시되었는데,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될 수 있었던 현상이라고 사료된다.

“
**현존하는 장기추계 기법은
 모두 각기 비교적 뚜렷한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접근법으로 도출한 결과를
 상호 보완적으로 비교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계층의 결합분포가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전망변수의 스케일링 과정에서 분석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득분포가 암묵적으로 고정되는 사례도 있다. 즉 본고의 단순한 사례보다도 이러한 종류의 암묵적 편이나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비해 거시추계는 상대적으로 암묵적 편이 개입될 가능성이 낮으나, 전망에서 핵심이 되는 $f(t)$ 의 설정에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 반면,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한 연구결과는 적어도 피상적으로 결과물에서 그러한 고민을 보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며, 또한 제도 변화나 계층별 영향 등을 반영한 상세한 분석이 사실상 모형의 설정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면, 조성법은 추계기간이 10~15년 정도로 비교적 짧은 경우에 적합하며, 거시추계는 단기 또는 중기보다는 수십년에 걸친 장기추계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조성법의 원리는 장기추계와 그 기본 취지가 상충되기 쉬우므로 장기추계에서는 되도록 지양해야 할 접근법이라는 저자의 견해를 설명하고자 한다. ‘장기’라 함은 모든 요인과 여건 등이 필요한대로 변화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본고의 $f_a(t)$ 와 같이 조성법 추계에서 설정하는 기본 출발점에는 현 시점의 여건, 제도 등 현황이 반영되고, 이러한 요인들이 향후에도 불변이거나 제한된 변화만 한다는 매우 강하나 암묵적

인 가정들이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의료비 추계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인들이 모두 현격하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특히 조성법을 이용한 추계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주요 사망원인 또는 의료비 지출이 크게 수반되는 질병 등의 변화가 있다. 불과 100년 또는 200년 전까지도 주요 선진국에서도 급성 전염병(acute infectious diseases)으로 인하여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만성·성인질환(chronic degenerative diseases)이 주요 사망원인으로 대두되었다(epidemiological transition). 비근한 예로 1900년대 초중반까지도 결핵 등과 같은 불치병이 주요 사망원인에 들어갔으며, AIDS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이로 인한 사망은 급감하였다. 반면, 과거에 비해 알츠하이머(Alzheimer’s) 같은 새로운 질병이 등장하고 의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하였다. 실제로 의학사를 보면 주요 질병은 시대에 따라 크게 변해 왔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주요 질병의 향후 추이를 기반으로 하거나 암묵적으로 반영한 접근법은 수십년 이상의 전망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분석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반영하는가에 따라 모형 설정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전망의 편이(bias)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요인으로 신의학 기술이나 치료법 등이 개발되면서 의료비 지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는 예를 들어 항생제의 발견, 수술 장비 및 기법의 발전 등의 요인이 있으며, 체계적인 구체성을 지향하는 조성법은 이러한 요인의 장기적인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

요약하면, 현존하는 장기추계 기법은 모두 각기 비교적 뚜렷한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접근

법으로 도출한 결과를 상호 보완적으로 비교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일례로 총진료비 등 거시집계변수(macro aggregated variables)까지는 거시추계로 전망하여 미래 연도의 전반적 지출 수준을 추계하고, 각 연도별로 연령이나 소득수준의 분포를 감안하여 더 상세한 계층별 효과 분석 등은 조성법의 틀을 적용하여 전망을 보완하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논의는 의료비, 그중에서도 건강보험 진료비 위주로 전개하였으나, 주요 논점은 그보다 일반화하여 연금 및 다른 장기추계에도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참고문헌〉

- 국가통계포털(KOSIS), 「추계인구 및 가구 통계」,
<http://kosis.kr>.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전병목 외, 『사회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2010.12.

201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의 업적 바로 보기

I. 불평등의 경제학자, 앵거스 디턴?



홍우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whhong@kipf.re.kr)

매년 10월, 경제학자들의 한 가지 관심사는 “올해의 노벨 경제학상은 누가 받을까” 하는 것일 것이다. 실제로 쟁쟁한 세계의 석학들 중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올해도 역시 세간에서는 누구에게 노벨 경제학상이 주어질까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결국, 대부분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는 미국 프린스턴(Princeton) 대학의 앵거스 디턴(Angus Deaton, 69) 교수에게 주어졌다.

그의 수상이 발표되자, 일부 국내 언론은 그가 “불평등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주장을 했다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신자본론자의 대표로 프랑스 파리 대학의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 교수 그리고 신자유론자의 대표로 앵거스 디턴 교수라는 이분법적인 대결 구도를 조장하며, 이번 노벨 경제학상 선정이 불평등의 해소를 주장하는 분배론자보다는 경제성장을 우선으로 하는 성장론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해석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에 대한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그의 최근 저서인 *The Great Escape: Health, Weal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인데, 이는 이미 국내에 『위대한 탈출: 불평등은 어떻게 경제성장을 촉발시키나』라는 제목의 번역본으로 소개된 바가 있다. 원문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 책의 제목은 『위대한 탈출: 건강, 부 그리고 불평등의 기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는 “불평등은 어떻게 경제성장을 촉발시키나”라는 부제를 달고 출판되었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국내의 번역본을 읽어 보았으나, (번역본에 대한 신빙성의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¹⁾ 그의 저서 어디에서도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촉진하였다는 주장은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이 저서를 통해, 인류가 경제성장을 통해 어떻게 죽음과 빈곤의 위험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엄밀한 역사적, 실증적 고증과 함께, 경

제성장을 통해서 나타난 국가 간 혹은 국가 내 불평등이라는 부산물이 결국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이에 대한 슬기로운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한 가지 필자가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왜 유독 국내에 들어와서 디턴의 업적이 불평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이다. 분명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소비, 빈곤 그리고 후생(for his analysis of consumption, poverty, and welfare)’에 대한 그의 연구 업적을 이유로 그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²⁾ 그 어디에서도 ‘불평등(Inequality)’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굳이 그의 연구를 ‘불평등’과 관련을 짓자고 한다면 (추후 소개가 될 것이지만) 바로 개발도상국가의 가계자료(household data)를 이용하여 후생과 빈곤을 엄밀하게 측정(measure)하고자 한 방법론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그의 연구 주제 중 일부에 속할 뿐 전체를 대변하지 못한다.

비록 언론에서 주목받지 못하였지만, 필자의 경우에 노벨 경제학자상 수상의 발표와 함께 떠오른 단어는 ‘AIDS’였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병리적인 개념인 에이즈가 아닌 디턴과 뮐엘bauer (Deaton and Muellbauer, 1980)가 1980년에 발표한 논문인 「거의 이상적인 수요체계(Almost Ideal Demand System, AIDS)」의 약자이다. 개인적으로 필자의 석사 논문에서 그의 논문을 자주 인용하였기에 필자가 그를 ‘AIDS의 디턴’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전 세계 저명한 학술지

“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소비, 빈곤 그리고 후생’에 대한
그의 연구 업적을 이유로
앵거스 디턴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그 어디에서도 ‘불평등’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

에 발표된 논문의 인용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구글 스칼라(Google Scholar)에서 디턴의 이름을 검색해 보면, 이 논문의 인용횟수가 4,389회로 전체 그의 논문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 물론 학문적인 성과가 노벨 경제학상을 결정하는 최우선 순위는 아닐 수 있지만 이 논문에 전 세계 학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는 점은 분명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의 언론이 보여 준 모습은 노벨상 수상자의 업적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의 업적 중 일부만을 강조하여 우리의 기호에 맞게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으로 해석하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그의 업적을 제대로 마주하고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차분히 논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물론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문제는 분명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그에 대한 해결책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언론이 불평

1) 『미디어 오늘』 10월 18일자의 기사는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글을 게재하면서, 번역본의 일부가 자의적으로 해석되었으며, 심지어 서론의 일정 부분이 원문과 비교해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606> 접속일자: 10월 19일 14:20

2) http://www.nobelprize.org/nobel_prizes/economic-sciences/laureates/2015/ 접속일자: 10월 18일 11:10

3) https://scholar.google.co.kr/scholar?hl=en&q=angus+deaton&btnG=&as_sdt=1%2C5&as_sdtp= 접속일자: 10월 19일 16:38

“
**인간의 후생에 대해 끊임없이
 고찰한 그의 연구 성향을 통해 유추해 볼 때,
 그에게 있어 수요체계 고찰을 통한
 소비 선택에 대한 연구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는지도 모른다.**
 ”

등에 대한 중요한 논의 주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지 끄쓸한 미소를 짓게 만든다.

필자가 본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현재의 모든 선입견을 배제하고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디턴의 업적 바로 보기’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둘째로는 이러한 ‘바로 보기’ 작업을 통해서 기존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에 의한 것이 아닌, 그의 ‘실제’ 업적으로 통해서 도출한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다시 논하고자 한다.

II. 앵거스 디턴의 연구 업적 바로 보기⁴⁾

스웨덴 왕립과학원의 보고서는 그의 연구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그의 업적에 대한 매우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첫 번째 그의 업적은 간단(simple)하고 유연(flexible)하면서도 일반성(generality)을 갖춘 새로운 수요체계(Demand System)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로 그는 거시경제학적 개념인 총소비(aggregate consumption)와 총저축(aggregate savings)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 분석하는 것은 미시경제적 자료

(microeconomic data)를 이용하여 개별 경제주체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그를 현재 미시자료를 기반으로 한 거시경제학의 한 흐름을 만드는 데 있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의 가계자료(household data), 특히 소비에 대한 가계의 자료를 이용하여 삶의 질과 빈곤의 정도를 엄밀하게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그의 연구는 과거에 이론적인 분석에만 머물러 있던 연구영역인 개발경제학(development economics)을, 현재는 양질의 미시자료를 이용한 실증연구의 장으로 탈바꿈 시키는 데 있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영역에서의 디턴의 업적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새로운 수요체계를 구상하다

비록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의 영역으로 그의 연구를 구분하고는 있지만, 그의 한 가지 공통된 연구 테마(theme)는 바로 소비(consumption)로 귀결될 수 있다. 소비는 경제주체의 효용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며, 소비의 다른 한 측면인 저축(=소득-소비)은 미래 소비에 대한 투자로서 이 또한 경제주체의 후생을 결정한다. 따라서 인간의 후생(welfare)에 대해 끊임없이 고찰한 그의 연구 성향을 통해 유추해 볼 때, 그에게 있어 수요체계 고찰을 통한 소비 선택에 대한 연구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는지도 모른다. 여기서는 디턴과 뮐엘바우어(1980)의 「거의 이상적인 수요체계(Almost Ideal Demand System, 이하 AIDS)」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그 의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4) 디턴의 연구 업적에 대해서는 Economic Science Prize Committee of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2015)를 참고하였다.

수요량(quantity demanded)과 개별 상품의 가격 그리고 총지출(total expenditure)과의 관계를 함수의 형태로 나타낸 것을 수요체계(demand system)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이 어떻게 개별 상품별 소비를 선택하는지 알 수 있다. 즉, 주어진 한 시점에서 한 가격의 수요체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q_{jh} = q_{jh}(p, c_h) \quad j=1, 2, \dots, J, h=1, 2, \dots, H \quad (1)$$

여기서 q_{jh} 는 t 시점에서 개별 상품 j 에 대한 가격 h 의 수요량(quantity demanded)을, $q_{jh}(\cdot)$ 은 가격 벡터 $p=(p_1, \dots, p_J)$ 와 가격 h 의 총지출 c_h 에 대한 함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요체계는 개별 상품에 대한 가격의 수요가 가격과 총지출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의 정도를 알려 준다. 또한 가격과 총지출에 시장 수요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는 시장 수요체계는 식 (1)에서 아래 첨자 h 를 제거하면 쉽게 표현할 수 있다. 개념적으로 시장 수요(q_j)는 개별 수요(q_{jh})의 총합으로 흔히 이해할 수 있는데, 디턴의 수요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은 바로 이렇게 개별 수요에서 시장 수요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총합(aggregation)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초기의 수요체계에 대한 실증 연구는 시장 수요 함수가 합리적 개별 소비자의 수요함수를 대표할 수 있다는 가정을 여과 없이 받아들였으며, 대부분 총합적 자료(aggregate data)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식 (1)을 추정하기 위한 방정식 또한 어느 특정

“
**디턴의 수요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은 바로 이렇게 개별 수요에서
 시장 수요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총합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

한 효용함수를 통해 도출되어 이미 소비자의 합리성을 만족하는 추정방정식에 의존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요함수에 내재된 소비자의 합리성 그리고 총합의 문제는 고려대상이 아니라 단지 전제조건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초기의 수요체계에 대한 연구는 바로 소비자의 합리성(rationality)을 검정하는 과정에서 그 전환점을 맞게 된다. 소비자 이론에 따르면 합리적인 소비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나타난 수요함수는 세 가지 특성을 갖는데, 1) 명목변수(가격, 지출, 등)에 대한 0차 동조성(homogeneity), 2) (수요함수의 1계 도함수의) 대칭성 (즉, $\frac{\partial q_i}{\partial p_j} = \frac{\partial q_j}{\partial p_i}$), 3) $J \times J$ 슬러츠키(Slutsky) 행렬의 음반정부호(negative semi-definite)가 그것이다.⁵⁾ 바로 이러한 소비자의 합리성을 실증적으로 검정한 최초의 연구로는 Barten(1967)을 들 수 있는데, 그는 네덜란드의 총합적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세 가지 합리성의 특성이 현실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론이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하였고, 경제학자

5) 경제주체의 합리성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은 굉장히 수학적 개념이나,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0차 동조성은 모든 재화의 가격과 가격의 총지출이 동일한 배수로 증가하였을 때, (예를 들어 모든 재화의 가격과 가격의 총지출이 2배로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경제주체의 각 재화에 대한 수요량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대칭성은 i 재화의 가격이 증가했을 때의 j 재화의 수요량의 반응 정도와 j 재화의 가격이 증가했을 때의 i 재화의 수요량의 반응 정도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음반정부호는 주어진 가격과 총지출에 대하여 경제주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각 재화에 대한 최적 수요량이 유일(unique)하도록 하는 수학적 조건을 의미한다.

“
**AIDS는 뮤엘바우어의
 PIGLOG 선호 체계에 기반하고 있어,
 대표적인 경제주체의 수요함수로부터
 시장 수요함수를 도출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

들에게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공하였다.

디턴(1974)의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고, 그 역시 실제 자료와 이론이 상충되다 는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듯 이론과 실제의 이율배반적 인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에 주목하였다. 그에 의하면, 실제의 수요체계가 합리성이 성립되지 않는 것 은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첫째는 개별 경제주 체의 합리성을 근거로 도출한 개별 수요함수가(비 록 경제주체는 합리적일지라도) 총합의 개념에서 도출한 시장 수요함수에서는 동일한 합리성이 적용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시장 수요함수가 개별 수요함수의 합리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대표적 인 경제주체(representative agent)를 가정해야 하 는데, 기존의 수요체계는 바로 이 대표성의 문제를 간과하였기 때문에 추정방정식이 제대로 설정되지 못한 문제를 갖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존의 추 정 모형이 실제 자료의 패턴을 담아내기에 너무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초 기 연구에서는 대부분 총지출에 대한 선형 함수를 가정하였고, 이는 다양한 개별 상품에 대한 수요의 반응을 담아내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탄생한 새로운 수요체계가 바로 디턴과 뮤엘바우어(1980)의 AIDS였다. 이 새로 운 수요체계는 합리성(rationality)을 검정할 수 있 을 정도로 유연하며, 쉽게 추정할 수 있고, 총지출

에 대한 비선형성(non-linearity)을 갖추고 있다. 특히, AIDS는 뮤엘바우어(1975, 1976)의 PIGLOG (Price-Independent Generalized Logarithmic) 선호(preference) 체계에 기반하고 있어, 대표적인 경제주체의 수요함수로부터 시장 수요함수를 도출 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AIDS는 다음의 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w_j = \alpha_j + \sum_k \gamma_{jk} \log(p_k) + \beta_j \log\left(\frac{c_r}{P}\right) \quad (2)$$

여기서 $w_j = \frac{p_j q_j}{c}$ 은 개별 상품에 대한 예산 비중 을, P 는 가격지수(price index)를 의미한다. 또한 c_r 은 대표적인 경제주체(representative agent)의 총지출을 나타내며 이는 다음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c_r = \exp\left(\frac{\sum_h c_h \log\left(\frac{c_h}{k_h}\right)}{\sum_h c_h}\right) \quad (3)$$

이와 같은 AIDS는 기존의 수요체계와 비교하 여 보았을 때, 몇 가지 이점을 갖는다. 첫째는 개 별 상품에 대한 지출($p_j q_j$)이 총지출(c)에 대해 비 선형적이라는 점이며, 둘째는 식 (2)의 각각의 계 수 α, β, γ 가 경제주체의 합리성, 즉 동조성, 대칭 성, 음반정부호를 검정할 수 있게 고안되었다는 점 이다. 마지막으로 식 (2)에서 제시된 수요체계가 대표적인 경제주체(representative agent)의 수 요를 통해 도출됨과 동시에, 개별 가계가 이질성 (heterogeneity)을 갖출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식 (3)을 보면 대표적인 경제 주체의 수요는 개별 가계의 소비(c_h)와 어떤 특정한 계수(k_h)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계수를 통해 수요체계에 개별 가계의 고유 특성(예를 들어 가구원의 수, 가구주의 나이, 성별, 직업, 등등)을 반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디턴과 뮤엘바우어의 AIDS의 추정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들은 영국의 총합적 자료를 사용하여 경제주체의 합리성을 검정하였으나 그 결과는 모두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모형이 잘못 설정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모형의 수정이 필요함을 역설(力說)하였다. 경제학자들은 이에 부응하였으며, 이들의 수요체계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유연하였기에 추후 이론적인 발전(예를 들어 Bank *et al.*(1997)의 Quadratic AIDS)과 더불어 다양한 실증연구에도 쉽게 적용되었다. 특히, 이들의 모형은 세제와 무역 개혁 등 다양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틀을 제공하였다.

나. 디턴의 역설(Deaton's paradox)과 미시적 접근의 필요성

초기의 디턴의 연구에서는 총지출이 외생적으로 주어졌다는 가정하에 가계의 개별 상품에 대한 소비 선택을 다루었던 반면에, 이것이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각 기간의 총지출, 나아가 총소비(aggregate consumption)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주목하였다.

당시의 총소비에 대한 연구는 케인즈 이후 고전 학파로 넘어오면서, 프리드만(Friedman)의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 이하 PIH)과 모디글리아니(Modigliani)의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 이하 LCH)이 그 중심에 있었다. 이러한 PIH와 LCH의 한 가지 공통된 논점

“
**총소비에 대한 선택은
 현재의 소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의 소득(항상소득 혹은 생애주기소득)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소득과 저축에 비해 총소비의 변동성이
 작을 것이라는 것이다.**
 ”

은 경제주체의 소비 선택이 일정한 장기적인 소득 추세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인 소득의 변동은 저축률의 증가 혹은 감소에 기여할 뿐 총소비의 변동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컨대 총소비에 대한 선택은 현재의 소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의 소득(항상소득 혹은 생애주기소득)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소득과 저축에 비해 총소비의 변동성이 작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 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 현상을 당시에는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였고 실제 자료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비록 이러한 모형이 개별 주체(individual agent), 즉 대표적인 경제주체(representative agent)의 소비 선택을 기반으로 도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총소비와 총소득에 대한 총합적 자료(aggregate data)를 이용하여 이러한 특성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PIH와 LCH에 기반한 소비 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에 대한 맹신은 디턴에 의해 깨지기 시작하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캄벨과 디턴(1989)의 연구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항상소득, y_t^p 는 미래 기대소득을 현재 가치(present value)로 환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현실에 나타난 총소비의 변동성은
 현재 소득의 변동성보다
 언제나 크다는 결론을 얻는다.**
**현실에 나타난 총소비의
 변동성은 너무나 작은 수준이 되며,
 바로 이러한 과도한 총소비의 평탄화는
 디턴의 역설로 알려지게 되었다.**
 ”

$$y_t^p = \frac{r}{1+r} E_t \left[\sum_{s=0}^{\infty} \left(\frac{1}{1+r} \right)^s y_{t+s} \right] \quad (4)$$

여기서 E_t 는 t 시점에서의 기댓값을, r 은 이자율을 그리고 y_{t+s} 는 $t+s$ 시점에서의 소득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는 추가적으로 소득이 확률적 과정(stochastic process)을 따른다고 가정할 것이다. 먼저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소득이 AR(1)의 과정을 따른다고, 즉 $y_t = \phi y_{t-1} + \epsilon_t$, (단, $0 < \phi < 1$)라고 가정해 보자.⁶⁾ 여기서 ϵ_t 는 *i.i.d.*이다. 그러면 항상소득은 $\bar{y}_t^p = \frac{r}{1+r} \cdot \frac{y_t}{1-\phi} = \frac{r}{1+r-\phi} y_t$ 가 되

며, 이 경우 $0 < \phi < 1$ 일 때 $\frac{r}{1+r-\phi} < 1$ 이므로 항상소득의 변동성 혹은 분산은 현재소득의 변동성보다 언제나 작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캠벨과 디턴(1989)은 소득이 AR(1)을 따른다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며 실제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자료와 더 부합하고 더욱 적합한 형태는 소득의 성장률이 AR(1)을 따르는 모형, 즉

$\Delta y_t = \phi \Delta y_{t-1} + \epsilon_t$ 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경우 항상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begin{aligned} \bar{y}_t^p &= \frac{r}{1+r} \cdot \frac{y_t}{1-(1+\phi)\left(\frac{1}{1+r}\right) + \phi\left(\frac{1}{1+r}\right)^2} \\ &= \frac{1+r}{1+r-\phi} y_t \end{aligned} \quad (5)$$

이렇듯 소득의 성장률이 AR(1)을 따른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는 앞서 소득이 AR(1)을 따른다고 가정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즉, 식

(5)의 경우 $0 < \phi < 1$ 일 때 $\frac{r}{1+r-\phi} > 1$ 이므로, 항상

소득의 변동성이 언제나 현재 소득의 변동성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IH나 LIC의 주장처럼 만약 총소비가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된다면 총소비는 항상소득과 그 변동성을 함께하게 되고, 그 결과 총소비의 변동성이 현재 소득의 변동성보다 언제나 크다는 결론을 얻는다. 이 결론에 따르면 현실에 나타난 총소비의 변동성은 너무나 작은 수준이 되며, 바로 이러한 과도한 총소비의 평탄화(excess consumption smoothness)는 디턴의 역설(Deaton's paradox)로 알려지게 되었다.

디턴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에서 찾았는데, 그 첫 번째는 기존의 모형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제약들(예를 들어 유동성 제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로 그는 기존의 거시 모형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대표적인 경제주체에 대한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그는 앞서 디턴과 뮤엘bauer(1980)의 AIDS 논문에

6) 더욱 정확한 방법으로는 소득이 $y_t = \mu + \phi y_{t-1} + \epsilon_t$ 의 확률적 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이나, 이를 반영하면 방정식은 복잡해지는 반면 변동성에 대한 결론은 동일하므로 편의를 위해 여기서는 상수항이 없다고 가정하도록 하겠다.

서 제기한 바 있는 총합(aggregation)의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하게 되는데, 요지는 대표적인 경제주체가 있다는 가정하에 경제 전체의 문제를 개인의 선택에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도출한 모형이 실제 거시지표들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통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표 1〉 2기간을 사는 경제주체의 예

	소득		소비	
	1기	2기	1기	2기
A	100	0	60	40
B	0	100	40	60
계	100	100	100	100

총합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매우 극단적이지만 간단한 예를 고려해보자. 한 경제에 2기간을 사는 두 명의 경제주체, A와 B가 있으며, 각 기에 대한 이들의 소득과 소비는 〈표 1〉과 같다고 가정하자. A의 경우 1기에는 취업자(소득이 100), 2기에는 실직자(소득이 0)이며, 1기에는 60을 2기에는 40의 소비를 한다. B의 경우 1기에는 실직자, 2기에는 취업자이며, 1기에 40을 2기에는 60을 소비한다. 이와 같은 가상적 경제를 고려하면, 총소득과 총소비는 매 기간 100으로 동일하여 변화가 없으나, 개별 경제주체로 봤을 때 소비는 개인, 그리고 각 기간 사이에 20이라는 차이가 존재한다. 즉, 총합의 개념에서 총소비는 변화가 없지만, 개별 경제주체로 봤을 때 소비는 20이라는 변동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시지표인 총소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개별 주체를 기반으로 도출한 모형의 함의를 검증할 경우 소비에 대한 변동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디턴은 거시지표를 설명함에 있어 미시자료를 통한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하

“
**디턴은 거시지표를 설명함에 있어
 미시자료를 통한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은 미시자료를 토대로
 거시경제지표를 분석하도록 하는
 최근의 한 흐름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였으며,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은 미시자료를 토대로 거시경제지표를 분석하도록 하는 최근의 한 흐름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후 디턴의 연구는 대체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였다. 디턴의 주장대로라면 총소비의 패턴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위해서는 가계자료(household data), 특히 한 개인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관찰하는 패널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패널자료 자체가 매우 희귀하였다. 이에 그는 연령별 코호트(cohort)의 정보를 이용하는 가패널(pseudo panel)을 구성하는 획기적인 제안을 하였고, 이를 통해 경제학에서 방법론적인 진보를 가져왔다. 이 밖에도 그는 유동성 제약(liquidity constraint)하에서 총소비의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

다. 개발도상국가(developing countries) 내에서의 후생

1980년대만 해도 개발경제학(development economics)의 영역은 이론적 접근만 가능할 뿐,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 이유는 간단하다. 개발도상국가에서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불과 20년

“
**디턴은 현재 개발경제학의
 추세를 주도한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가계자료를
 사용하여 효율임금가설의 검증,
 부와 후생의 측정 및 국가 간 비교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 연구를 하였다.**
 ”

만에 이러한 상황은 급반전을 거듭하였다. 개발경제학의 최근의 동향은 활발하다 못해 폭발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다. 이에 대해서는 선진국 및 다양한 국제기구의 관심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제학적 실험의 용이성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엄밀한 설계하에 시행된 경제 실험을 통한 방대한 자료의 축적은 개발경제학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 대부분의 주요 경제학 저널에서 이 분야의 논문이 단골손님처럼 실리고 있는 현상은 바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디턴은 이러한 현재 개발경제학의 추세를 주도한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가계자료(household data)를 사용하여 효율임금가설의 검증, 부와 후생의 측정 및 국가 간 비교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 연구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 그의 업적을 다 열거하는 것은 매우 소모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의 저서 『위대한 탈출』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 빈곤(poverty)의 측정과 경제성장과 빈곤의 관계에 대한 그의 연구를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먼저 빈곤에 대해서 엄밀하게 측정하고자 한 디턴의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계의 자료를 가지

고 빈곤을 측정할 때의 한 가지 문제는 빈곤은 개인(individual) 단위로 측정되는 지표인데 가계의 소비자료는 대체로 가계(household) 단위로 수집된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전체 가계 소비에 가구원의 수를 나누어 개인의 단위로 환산한 수치를 사용해서 빈곤을 측정해도 가계 구성원의 특성(예를 들어, 비(非)성인 자녀의 수)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적절한 가중치를 찾는 것인데, 디턴은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 예로 디턴과 뮤엘바우어(1986)는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의 가계자료를 가지고, Rothbarth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실증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자녀의 비용(child cost)이 성인 한 명의 지출의 약 30~40%에 해당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었다.

경제성장은 정말 빈곤의 감소를 가져왔는가? 만약 경제성장이 모든 이의 소득을 비례적으로 증가시켰다면 빈곤선(poverty line)은 감소하여야 한다. 하지만 만약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가 비대칭적으로 분배되었다면, 빈곤선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언뜻 보기에 경제성장이 빈곤의 감소를 가져왔다는 주장이 우세할 것 같지만,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매우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디턴(2005)은 매우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디턴(2005)은 한 가지 중요한 경제 현상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가계자료를 사용하여 측정한 총소비(혹은 총소득)가 국민계정(national account)에서 측정한 총소비(혹은 총소득)보다 더욱 느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계자료를 통해 보면, 빈곤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한 가지 예를 들면, 국민계정 통계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된 서비스만을

그 추정치에 포함하는데, 경제성장과 함께 서비스 중 많은 부분이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되면서 국민계정 수치의 성장률이 과대 추정될 수 있다. 반면에 보통 부자들은 통계조사에 잘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가계자료를 통해 산출한 평균 총소비는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디턴(2005)은 경제성장이 빈곤의 감소에 미치는 효과가 과소 추정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Ⅲ. 시사점 및 결론

이상으로 올해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의 업적에 대해 ‘바로 보기’ 작업을 시도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의 업적을 국내 언론처럼 불평등에만 초점을 맞추기에는 매우 과소 평가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디턴의 연구는 인간의 후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소비(consumption)라는 한 우물을 파는 데 집중하였고, 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에 경제학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퍼즐들을 푸는 데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현재의 거시경제학과 개발경제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우리는 디턴의 연구에서 한 가지 공통된 관점을 추론해볼 수 있는데, 이는 바로 미시적 자료를 통한 경제문제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요체계를 고안할 때도 그러하고, 과도한 소비 평탄화의 문제를 논할 때도 그는 개인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한 경제 전체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인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대표적인 경제주체(representative agent)에 대한 가정을 여과

“
**이러한 그의 생각은
 대표적인 경제주체에 대한 가정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기존의 경제학에
 신선한 문제 제기를 하였으며,
 미시적 자료의 축적과 이를 통한 분석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

없이 받아들이는 기존의 경제학에 신선한 문제 제기를 하였으며, 미시적 자료의 축적과 이를 통한 분석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후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방대한 자료의 축적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나타난 경제학의 최근 경향은 ‘자세히 살펴보기’이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거시경제학이나 개발경제학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어떠한 경제 문제이든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문제해결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문제에서 그 해결점을 찾는 것이 때로는 매우 유익하고 적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점은 우리 경제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학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역시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약적 경제발전과 함께 다양한 경제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연구자들이 이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환경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특히나 접근 가능한 양질의 자료 부족은 연구자의 연구능력을 제한하는 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료의 부족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료의 활용 면에서 제약이 많다. 실제로 통계청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 방대한 양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만, 각 기관별 자료의 연계는 매우 제한적이다. 미국의 경우 인구조사(census)를 담당하고 있는 Census Bureau에서는 연구자의 과제제안에 대

“
**디턴은 양질의 자료를 기초로 한
 ‘자세히 살펴보기’의 작업이 경제 전반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

한 실효성 검토 후 지정된 장소에서 원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적이거나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경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제한적으로나마 자료에 접근을 허용하고 있으나 통계치의 내용과 포함 변수(variable)의 면에서는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 간 자료의 연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물론 원자료에 대한 접근과 이를 연계하는 과정이 개인정보 누출이라는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양질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우리 경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해결점을 찾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면, 시스템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된 방향으로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충분히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디턴이 ‘불평등의 경제학자’라는 데 공감할 수 없지만, 그가 불평등의 문제에 매우 관심이 많았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내 언론이 주장하는 바처럼 『21세기 자본론』의 저자 피케티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일괄적으로 부유세를 도입하여 재분배를 시도하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면,⁷⁾ 디턴은 이에 대해 아마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슷한 예로 그의 저서 『위대한 탈출』에서 그는 무분별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의 투입은 그 나라 경제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지 않고 독재 정권이 ODA를 전용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국가의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스템적으로 ODA가 오히려 성장의 인센티브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⁸⁾ 따라서 이런 경우 그는 오히려 ODA에 대한 투자를 줄여, 자율적 성장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대안이라고 주장하였다. 부유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부유세의 도입은 부자들의 인센티브를 줄인다. 하지만 이러한 인센티브의 감소가 경제 전체에 혹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각 나라의 산업구조와 고유 특성에 달려 있을 것이다. 따라서 디턴의 경우에는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개별 국가들의 국가 구조와 산업 특성에 대한 ‘자세히 살펴보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경제성장과 불평등 사이의 균형적 시각을 갖고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리라 추측해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불평등은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건전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그 대책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언론의 이슈 만들기에 편승하여 외국 학자의 주장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디턴은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예

7) 국내 언론을 통해 보여진 피케티는 ‘부유세 도입을 주장한 학자’라는 공식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그런 주장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좀처럼 주목받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우리는 피케티를 부유세 도입이라는 단편적인 모습만 가지고 그의 업적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또한 언론의 이슈 만들기에 의해 만들어진 예기치 않은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자문해 보고, 비판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고를 통해서 디턴의 업적에 대해 ‘바로 보기’ 작업을 시도하였듯, 피케티 또한 그의 업적에 대해서 ‘바로 보기’ 작업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8) 물론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는 것을 디턴은 인지하고 있었으며, 최근에 아프리카 많은 국가들에서 나타난 민주적 정권의 수립에 대해서 그는 경제성장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치 않은 희생양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디턴에게서 한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디턴은 양질의 자료를 기초로 한 ‘자세히 살펴보기’의 작업이 경제 전반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불평등의 문제는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디턴의 연구와 같이, 양질의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문제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경제성장과 불평등의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양한 대안 중 우리 경제에 가장 잘 맞는 옷을 찾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 더욱 건설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단발적 관심과 비난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평등의 문제를 건전한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에 더욱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 앵거스 디턴, 『위대한 탈출: 불평등은 어떻게 성장을 촉발시키나』, 이현정·최윤희 번역, 한국경제신문, 2014.
- Bank, J., R. Blundell, and A. Lewbel, “Quadratic Engel Curves and Consumer Demand,”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79, Issue 4, 1997, pp. 527–539.
- Barten, A.P., “Evidence on the Slutsky Conditions for Demand Equation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49, Issue 1, 1967, pp. 77–84.
- Campbell, J.Y. and A. Deaton, “Why Is Consumption so Smoothy?,”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56, Issue 3, 1989, pp. 357–373.
- Deaton, A., “The Analysis of Consumer Demand in the United Kingdom, 1900–1970,” *Econometrica*, Vol. 42, Issue 2, 1974, pp. 341–367.
- _____, “Measuring Poverty in a Growing World (or Measuring Growth in a Poor World),”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7, Issue 1, 2005, pp. 1–19.
- _____, A. and J. Muellbauer, “Almost Ideal Demand System,”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0, Issue 3, 1980, pp. 312–326.
- _____, and _____, “On Measuring Child Costs: With Applications to Poor Countr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4, Issue 4, 1986, pp. 720–744.
- Economic Sciences Prize Committee of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Angus Deaton: Consumption, Poverty and Welfare*, http://www.nobelprize.org/nobel_prizes/economic-sciences/laureates/2015/advanced-economicsciences2015.pdf, 2015.
- Muellbauer, J., “Aggregation, Income Distribution and Consumer Demand,”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42, Issue 4, 1975, pp. 525–543.
- _____, “Community Preferences and the Representative Consumer,” *Econometrica*, Vol. 44, Issue 5, 1976, pp. 979–999.



공공정책포럼

■ 제43회 공공정책포럼

공공정책포럼 소개

공공정책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 및 정부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본 포럼은 공공기관정책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수요를 청취하고 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격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Global macro outlook and key macro issues for Korea

개요

- 주 제 Global macro outlook and key macro issues for Korea
- 일 시 2015년 11월 4일(수), 07:30~09:30
- 장 소 서울 팔레스호텔 그랜드볼룸A(별관 B1)
- 진행순서
 - 07:30~08:00 조찬
 - 08:00~08:10 인사말씀
송대희 좌장
 - 08:10~09:00 주제 발표
권구훈 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미스트
 - 09:00~09:30 자유토론
 - 09:30 폐회

* 본 원고는 2015년 11월 4일 서울 팔레스호텔 그랜드볼룸A(별관 B1)에서 『Global macro outlook and key macro issues for Korea』를 주제로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개최한 제43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발표 및 토론요약입니다. 주제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 기관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인사말씀

송대희/좌장

오늘은 골드만삭스 권구훈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모시고 거시적인 틀에서의 세계경제에 대해 들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21세기에도 우리나라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세계경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제발표 요약

Global macro outlook and key macro issues for Korea

권구훈/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미스트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먼저 세계경제 성장률을 보면, 금융위기 전에는 4~5%대였으나, 2012년 이후로는 3% 초반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 상황과 유사하다. 내년의 경제상황이 올해보다는 더 나아지겠지만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앞으로의 경제상황에 대해 국제무역, 환율, 유가, 금리를 중심으로 말씀 드리고자 한다.

I. 세계무역 침체

먼저 국제무역의 문제이다. 세계의 실질 GDP 성장률을 보면 과거에 비해 최근의 기울기가 더 완만함을 알 수 있다. 과거 1980~90년대에는 세계경제 성장률도 현재보다 더 높았으며, 기업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무역탄력성도 기존 2~3에서 1로 줄어들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을 매우 긴축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언제 해소되고, 과거처럼 회복될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당분간, 3~4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아시아 국가들이 당면한 문제이다. 과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는 교역을 통해 혜택을 보고 있었다. 2012년부터는 수출증가율(export growth)이 둔화되었으며, 2015년에는 수출수요증가율(export demand growth)이 점점 더 하락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오다가 해외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자 국내로 눈을 돌려 수입대체가 일어났으며, 소비에서 투자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도 과거만큼 수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다른 나라에 비해 선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수출의 60~70%를 차지하는 개발도상국들은 중국이 수입을 줄일 경우 영향을 받는다. 지난 10~15년간의 세계무역을 살펴보면, 수출에 비해 수입이 줄어드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었다. 중국은 빠르게 생산구조를 내재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은 생산가동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나 대만과 같이 가공무역국들에 불리한 상황이다.

II. 환율: 달러화 강세·엔화 약세

한국의 상황에 비해 원화가 과도하게 강세를 보여 환율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수출에서 환율이 중요한데, 2014년 자료에 따르면 달러화로 환산했을 경우의 수출은 3%가 증가했지만, 원화로는 2% 감소하였다. 이렇게 국내통화로 환산했을 경우 수출이 감소한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경제구조가 비슷한 대만과 일본의 수출과 비교하면, 최근 2년 반 사이에 한국이 5%가 증가했지만 대만은 11%가 늘어났다. 일본은 2012년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이후 작년 말 기준 22%가 증가하였다.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엔화 약세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면 한국은 수출이 2배 늘어나고, 일본은 40~60% 감소한 것으로 나온다. 즉 지난 3~4년간의 수출실적은 80% 이상이 환율이 결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세계경제가 호황일 때에는 원화가 강세여도 기업이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로서는 대응하기에 취약하다.

III. 유가: 주로 공급요인에 따른 가격 하락

유가도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워낙 금융시장의 변동이 많아서 20~30% 정도의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불황 없이 이 정도 규모의 유가 하락은 198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또 1985년에 60%가 떨어진 지 20년이 된 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는 공급에 따른 문제이며 한국은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로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유가하락은 우리나라, 대만, 인도,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이 가계가 1년 동안 15조원 정도의 혜택을 보는 데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 소비가 늘어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IV. 금리: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

미국의 금리인상이 아시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다. 한국은 지난 5년간 들어온 돈이 거의 없어 빠져나갈 돈도 별로 없다. 성장률도 3%대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큰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는 달러가 많이 들어왔지만 중국의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큰 금액이 아니다. 증권시장에도 GDP의 2%밖에 유입되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터키에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이와 관련된 데이터가 없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더라도 빠르게 올리지 않고 변동환율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 질의응답

송대희/좌장

권구훈 박사님의 발제를 듣고 나니, 앞으로의 한국경제가 크게 밝지도 않지만 심각하게 어둡지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무역이 중요한 우리나라에 앞으로의 무역수요가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 한국의 챔피언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앞으로 닥칠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이다. 또한 권구훈 박사님께서 북한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서도 다양하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한수희/한국능률협회컨설팅 부사장

사실 산업현장에서는 박사님의 발제보다 더 비판적인 입장이 많다. 특히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담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하다. 그리고 가계부채 등 여러 정책적 이슈에 대해 정책적인 접근, 기업의 전략, 개인의 리스크 관리 등에 관한 의견이 궁금하다.

권구훈/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미스트

우리나라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는 다른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관련하여 일본과 유사한 경로를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국제무역의 문제,

제조업 중심의 수출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히려 대만과 유사하다. 일본은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부동산 버블 붕괴가 생겨났다. 당시 일본은 무역규모가 너무 커서 지속적인 내수 침체를 수출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일본과 같은 사례는 중국이 유사한 경로를 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제규모도 작은 편이 아니지만 세계시장이 과거보다 훨씬 성장하여 해외에서 수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도 저축을 통해 국가부채를 해결할 수 있었고, 경제성장이 멈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저축이 많지 않아 침체가 지속되면 환율이나 금융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가 지속되지는 않으리라 본다.

김학규/한국감정원 혁신경영본부장

미국은 제조업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업이 발달하여 전 세계를 빨아들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제조업이 미국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것이 한국의 수출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유가하락을 말씀하셨는데, 유가가 생산원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더 하락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

권구훈/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미스트

석유는 기술개발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 유가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과거에는 유전개발을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셰일오일은 투자에 대한 회수가 빨라 가격탄력성이 높은 것이다. 이렇듯 구조적으로도 유가가 더 상승하기는 어려우며,

단기적으로도 이란의 원유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아직 분석하기는 조금 이르고 다만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 추측하고 있다. 과거 사람의 노동력이 투입되던 일을 기계가 대체하기 시작하고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의 장점, 즉 낮은 임금의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다. 예전처럼 큰 공장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제조업이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신규투자에서는 국내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조성일/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우리나라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이다. 미국은 고용이 회복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권구훈/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미스트

고용은 서비스업에서 창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개혁이 시급한데 이것이 늦어지고 있다. 부가가치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제조업은 쉽지 않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다르다. 금융이나 교육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이를 통해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조성일/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수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은 포화상태로 금융이나 교육 서비스업에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과연 제조업을 대체할 만한 수준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한지 궁금하다.

권구훈/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미스트

금융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특히 중국시장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앞으로 금융의 규모는 커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서구에서는 중국의 금융에 직접 다가가기보다는 다른 매개체를 통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중국의 금융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친다는 인식이 있어 한국이나 일본의 금융업에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규제나 언어장벽, 중국기업과의 경쟁에서의 불리한 점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 10년 전 금융허브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때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임상준/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장

우리나라의 수출이 중국에 편향되어 있다보니 중국의 성장률이 둔감해질 경우 우리나라에 즉각적으로 전이된다. 따라서 수출 다변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전략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다. 그리고 금융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앞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는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고 이것이 다시 우리나라의 금리인하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서 바람직한지 궁금하다.

송대희/좌장

권 박사님께서서는 북한 전문가로 알고 있다.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구훈/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미스트

권구훈/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미스트

금리와 양적완화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순차적으로 올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3년간 금리인상이 가능한 국가는 미국 외에는 거의 없으며, 동조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본다. 미국은 경제규모가 크고, 미국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에서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국과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함께 올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일본은 양적완화를 늘릴 수도 있다.

지금 북한경제는 많이 변하고 있다. 북한의 지금 상황은 구 소련, 동구권의 1990년대 초 같은 상황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은 공산주의 경제가 와해되는 때이다. 북한의 김정은 집권 이후 중국식의 개방까지는 아니지만 농업부문의 경우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기업의 경우에도 시장경제를 받아들일려고 하고 있다. 지금은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더 교역하기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경제문제는 경제만 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교, 군사적인 측면 모두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다만 경제상황만 놓고 본다면 북한의 개방을 통해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는 동북아 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러시아와 중국의 동북3성이 우리나라와 북한과 연결된 경제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이 투자할 곳이 없을 때 통일비용보다 더 높은 투자가치가 있는 곳이 바로 북한이다. SOC가 부족하기 때문에 큰 비용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투자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다만 지금의 경우 북한이 그 시기를 놓치고 있어, 이번 기회에 북한이 핵을 어느 정도만 동결하더라도 충분히 win-win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다변화 전략에서는 국가별 다변화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상품의 다변화, 같은 상품을 수출하더라도 새로운 가치의 추가가 필요하다. 단적으로 애플과 삼성의 핸드폰을 비교했을 때 애플의 핸드폰이 더 비싸게 팔린다. 이는 서비스나 R&D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차별화를 통한 다변화, 고급화와 특화가 중요하다.

옥동석/중앙공무원교육원장

북한의 지도층, 즉, 자유경제에 대해 지식층이 신념이나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가 어렵다보니 일시적으로 방치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또 발표내용 중 경상학과 원화 강세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원화 약세로 경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권구훈/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미스트

원화 약세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대만과 인구구조가 비슷하고, 산업화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다.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5년 정도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대만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민간이 해외투자를 통해 수익을 낸다. 특히 보험사하고 연기금, 은행 등 해외에서 버는 수익이 더 많은 회사가 많다. 결국 해외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금융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정부가 개입해서 달러를 사야 하니 불공정하다는 말이 나온다. 민간이 알아서 할 수 있으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새로운 기술개발이 아니라 투자기회를 찾아서 수익을 얻는 것이 경쟁력이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환율정책의 모순점을 우리가 만든 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환율문제는 외환위기가 외화유출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타당한 점이 있지만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야 한다. 즉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결국 해외주식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데, 돈이 안나가니깐 투자를 안해 봐서 나가면 손해를 보게 되는 악순환

이 이어질 수 있어 이를 풀어줘야 한다. 해외투자에 세제혜택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이다. 지난 30년간 경제 발전이 해외로 나가서 된 것이다. 금융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문제는 일부 젊은이들은 실제로 중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목격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데 아직까지는 국가가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일시적인 측면에서 풀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는 시장경제 도입은 지도체제가 바뀌어야 가능할 것이다.

조봉환/공공정책국장


제조업이 우리 경제에서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제조업 특히 대기업의 미래가 어떠한지 궁금하다.

권구훈/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미스트

서비스업도 중요하지만 다른 식의 경쟁력이 있어야 하며, 제조업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 아직까지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제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제조업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대기업은 과거 정부의 지원을 통해 성장하였으며, 삼성이나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은 이제 기업 스스로가 알아서 헤쳐나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마무리말씀

송대희/좌장

자랑스러운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 과정 중에 지금이 과도기가 아닌가 한다. 앞으로의 우리 미래는 어둡지도 밝지도 않다. 또한 위험요소가 적지 않다. 이러한 과도기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세계경제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라고 생각한다. 포럼 발표와 참석에 감사드린다.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5-10

요약

- 폴란드 의회는 기술 혁신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자 R&D 소득공제에 대한 개정안을 9월 25일 가결함
 - 기존 기술혁신 소득공제(New Technology tax relief)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요건을 완화하여 R&D 소득공제를 개정함
 - 소득공제는 비용이 공제된 과세표준에 R&D와 관련된 지출의 일정률을 공제하여 이루어지며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적용됨
 - 이번 조치는 201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기존 기술혁신 소득공제는 폐지됨
- 덴마크는 국내·외 배당소득에 대한 자국의 원천징수규정이 해외법인 EU협약 '설립의 자유'를 위배하였음을 인정하고 개정을 예고함
 -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 '해외법인이 국내법인에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와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에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달리 처리하고 있었음
 -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러한 과세가 EU협약을 위배하였다고 판결함에 따라 덴마크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을 개정할 예

정입

- 배당소득에 대한 개정 제안의 내용은 국내 법인세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고, 조세조약이나, EU 모자회사 지침 여부에 따라 차별하지 아니할 것임을 포함함
- 중국 과세당국은 2015년 8월 27일 비거주자가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개정하는 '공고 제60호'를 공개함
 - 이 공고는 조세혜택을 받으려는 비거주자에 대해 기존의 사전승인절차 등을 폐지하고 자발적 평가에 따라 협약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임
 - 이 공고는 2015년 11월 1일부터 적용됨
- 중국 과세당국은 2015년 9월 17일 이전가격 등을 규정하는 특별과세조정방법 개정안을 공개함
 - 이 개정안은 이전가격, 무형자산, 그룹 간 용역, 이익수준평가 등의 포괄적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이 개정안은 2015년 10월 16일까지 의견수렴 후 확정될 예정임
-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2015년 9월 9일 부채/자본비율을 제한하여 관련 비용을 부인하는 규정을 공개함
 - 이 규정은 법인들의 부채/자본비율이 4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관련된 차입비용을 부인하도록 함
 - 이 규정은 2016년 과세기간부터 적용됨

- 미국 국세청은 2015년 9월 19일 해외금융기관의 미국 납세자 금융자산정보보고 마감일을 연장하고, FATCA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작일자를 연장할 계획이라 발표함
 - 해외금융기관의 2014년 미국 납세자 금융자산 정보보고 마감일을 2016년 9월 30일로 연장함
 - FATCA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특정 소득 및 해외도관지금부에 대한 원천징수 시작일자를 2019년 1월 1일로 연장할 계획이라 발표함
 - 연결금융그룹의 지사, 그룹 내 금융기관이 FATCA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그룹전체가 FATCA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로 연장할 계획이라 발표함

- 프랑스 정부는 2015년 9월 30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함
 - 프랑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크게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의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10월 중순부터 국회의 심의를 거쳐 12월경 입법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9월 28일 유럽연합은 *Tax reforms in EU Member States 2015—Tax policy challenges for economic growth and fiscal sustainability* 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는 회원국 간의 조세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2014년 반기부터 2015년 반기 기간 사이의 회원국의 조세정

책을 분석하고 회원국의 최근 조세개편 내용을 분석함

- 2015년 10월 8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OECD BEPS 2015 최종 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을 승인함
 - G20 재무장관회에서는 OECD가 10월 5일 발표한 BEPS Action 1~15의 2015년 최종 패키지에 담긴 권고사항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11월에 개최되는 G20에 정상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의함
 - 2015년 10월 5일 발표된 2015 BEPS 최종 패키지는 2014년 7개 Action (Action 1, 2, 5, 6, 8, 13, 15)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포함 및 통합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Action 1~15에 대한 총 13개의 보고서로 구성됨



1. 폴란드-연구·개발 소득공제에 대한 개정안 발표

■ 폴란드 의회는 R&D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R&D 소득공제에 대한 개정안을 9월 25일 승인함¹⁾

- 폴란드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의 혁신 과학, 기술이 취약하다고 보고 중장기적 계획으로 '기술·과학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²⁾'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폴란드는 R&D 투자와 관련하여 보조금지원과 조세지원을 함께 마련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은 조세지원에 대해 다루고 있음
- 이번 세제지원에 대한 초안은 전(前) 대통령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가 2015년 초에 대선공약으로 제안하였으며, 현재는 대통령의 승인 절차만 남았음

■ 기존의 기술혁신 소득공제(New Technology tax relief)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움에 따라 실효성이 크지 않았음

- 현재 연구·개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납세자의 수는 대략 70명³⁾에 불과하여 해당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지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함
- 기존의 기술혁신 소득공제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요건: R&D 센터⁴⁾를 갖춘 기업

- 대상금액: 연구·개발(R&D)에 지출된 비용
- 소득공제의 내용: 소유권, 특허권, 독점에 따른 권리, 이와 같은 무형자산의 형태나 실용신안, 노하우의 새로운 기술의 획득을 위해 발생한 지출의 50%까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음. 단, 결손법인은 3년 동안 이연하여 공제 가능함.

■ 개정되는 연구·개발 소득공제는 R&D 지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공제받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며 추가 법인세 면제도 이루어짐

- 공제 대상이 되는 R&D 지출은 다음과 같음
 -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 연구·개발활동과 직접 관련된 자재수급의 취득
 - 연구·개발 활동의 목적에서 적격과학단체로부터 제공받는 노하우, 자문, 의견 등 이와 유사한 서비스의 취득
 - 연구·개발의 목적에서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연구 장비의 대여
 - 연구·개발 목적에서 사용되는 유·무형자산과 관련된 감가상각충당금
- R&D의 지출에 대한 공제는 다음 금액의 비용이 모두 공제된 후의 과세표준에서 추가적으로 공제됨
 - 연구·개발의 활동에 관련된 직원의 사회보장 기여금과 근로대가의 30%

1) 폴란드 과학교육부: <http://www.nauka.gov.pl/aktualnosci-ministerstwo/ustawa-o-iinnowacyjnosci-przyjeta-przez-sejm.html>

2) 2011년에 발표한 폴란드의 'National Reform Programme': http://ec.europa.eu/europe2020/pdf/nrp/nrp_poland_en.pdf

3) Tax analysts, 2015.10.5.

4) R&D 센터는 '① 이전 회계연도에 최소 1,2백만유로의 순수익, ② R&D 서비스나 산업재산권의 판매수익이 순수익의 20%를 차지할 것, ③ 중요한 규제에 대한 책임이 없을 것' 요건을 갖춘 기업이 신청할 수 있음

- 그 외의 연구 · 개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적격 비용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
 - 납세자는 R&D 지출 등록자로 신고하고 공제 대상 지출을 매년 신고하여야 함
 - 추가 법인세 면제는 5천만유로의 가치를 가지는 R&D 과업에 법인의 자산을 최소 75% 투자하는 벤처캐피탈과 사모회사에 적용됨
 - 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기존의 기술혁신 소득공제는 폐지됨
 - 다만, 기술혁신 소득공제를 적용받던 과업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자료 수집 및 정리: 오유나 회계사)

2. 덴마크-국내 · 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규정 개정

- 현행 덴마크 세법은 '국내법인이 국외법인에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와 '국외법인이 국내법인에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함
- 국내법인이 국외법인에 배당을 지급(Outbound)하는 국내 원천배당과 국외법인이 국내법인에 배당을 지급(Inbound)하는 국외 원천배당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과세됨

<표 1> 국내 · 외 원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 요건

구분	적용 세율	요건
국내 원천배당 소득	0%의 세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되, 배당은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국외법인이 국내 법인에 재분배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① 해당 회사가 계열사 ②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수령하는 자가 유럽연합에 속하거나 조세조약, EU 모자회사 지침(The EU Parent - Subsidiary Directive, PSD)을 적용받는 경우
	15%의 세율	지분을 10% 미만 보유하고, 거주지국과 덴마크가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
	27%의 세율	상기 외의 경우
국외 원천배당	과세 면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배당 지급회사는 거주지국에서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① 자회사 : 자회사 지분으로 10% 이상 보유하고 조세협약이나 PSD를 적용받는 경우 ② 국제공동과세(international joint taxation)하는 계열사 지분

- 이러한 원천징수규정은 EU 협약 제43조 '설립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유럽사법재판소에서 판결함
- EU 협약은 EU 공동체의 거주자는 제한 없이 EU 공동체 내에서 기업을 설립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설립의 자유'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⁵⁾
- 현행 덴마크의 법령에 따른 과세는 조세조약이나 PSD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과세되며 일반법인에 적용되는 22%에 비하여 높게 과세됨
- 따라서,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설립국가에 따라 조세차별을 두게 되며 유럽사법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덴마크 재무부는 '설립의 자유'를 위배하였음을 인정함

5) EC조약 제43조,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services/docs/infringements/art49-establishment_en.pdf



■ 이에 따라 국내의 배당지급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이나 PSD의 여부에 관련없이 동일하게 원천징수규정 개정안을 제안함⁶⁾

- Outbound의 경우, 27%가 적용되는 국외법인에 대해서도 국내법인에 적용되는 22%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함
 - 다른 EU국가나 그 외 국가의 수령회사에 적용됨
 - 원천징수세율 27%는 계속 적용하되, 수령회사가 27%와 22%의 차액(5%) 환급 요청함
- Inbound의 경우, 자회사 주식의 배당에 대하여 조세협약이나 PSD와 관계없이 모두 면제하되,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은 거주지국에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됨
 - 기존에 과세되었던 법인의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요청함
- 개정된 법이 통과될 경우 201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오유나 회계사)

3. 중국-조세협약 혜택을 위한 신규 절차 공개⁷⁾

- 중국 과세당국(國家稅務總局)은 2015년 8월 27일 비거주자가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개정하는 '공고 제60호'를 공개함
- 이 공고는 4개의 장으로 구성된 총 27개의 조문과 비거주자의 형태와 소득별로 적용되는 10개의 서식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내용은 조세혜택을 받으려는 비거주자에 대해 기존의 사전승인절차 등을 폐지하고 자발적 평가(自行申報)에 따라 협약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임

- 따라서 이전의 협약 혜택에 대해 사전승인절차 등을 규정했던 '통지 124호', '통지 290호', '공고37호' 등을 폐지함

• 이 공고는 2015년 11월 1일부터 적용됨

■ 비거주자와 원천징수의무 등이 부여된 대리인은 협약혜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함

- 신고가 요구되지 않는 수동적 소득은 원천징수의무 대리인이 비거주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때, 신고가 요구되는 능동적 소득에 대해서는 비거주자가 소득신고시 관련 정보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면서 협약에 따른 혜택 적용 여부를 판단함

• 따라서 원천징수의무 대리인 또는 비거주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협약의 혜택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기존에는 과세당국의 사전승인 또는 소득신고시 승인을 득하는 경우에만 협약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음

■ 자발적 판단에 따른 협약 혜택의 적용에 따라 과세당국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 과세당국은 사후적으로 협약 혜택의 적용이 적절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

6) EY: [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Denmark_to_relax_taxation_of_dividends/\\$FILE/2015G_CM5864_Denmark%20to%20relax%20taxation%20of%20dividends.pdf](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Denmark_to_relax_taxation_of_dividends/$FILE/2015G_CM5864_Denmark%20to%20relax%20taxation%20of%20dividends.pdf)

7) 国家税务总局, 关于发布《非居民纳税人享受税收协定待遇管理办法》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60号, 2015.8.27.

8) 폐지되는 이전 규정에 대한 첨부은 제외함 숫자임

할 수 있음

- 또한 협약 혜택의 적정성 조사에서는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적용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4. 중국-특별과세조정방법 개정안 공개⁹⁾

- 중국 과세당국은 2015년 9월 17일 이전가격 등을 규정하는 특별과세조정방법 개정안을 공개함

- 이 개정안은 총 16개의 장¹⁰⁾으로 구성된 총 16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전가격, 무형자산, 그룹 간 용역, 이익수준평가 등의 포괄적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이 개정안에 대해 2015년 10월 16일까지 의견수렴 후 확정될 예정임
 -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기존 규정(《特别纳税调整实施办法》(國[2009]2号)을 대체하게 됨

- 무형자산의 정의, 수익의 배분 시 원칙과 고려요소, 평가방법에 대한 내용이 새로이 도입됨

- 무형자산을 기술 및 시장에 관련된 무형자산과 기타의 형태로 분류함
- 무형자산의 수익 배분에 있어서 경제적 활동과 가치 창출을 고려하도록 하여, 단순히 무형자산 취득에 대한 자금조달이나 어떠한 기여가 없이 단순한 법적 소유권 취득은 수익 배분의 권리가 없는 것으로 추정함

- 이러한 수익 배분에 대한 원칙과 고려요소는 OECD BEPS의 이전가격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임¹¹⁾

- 무형자산 평가는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이익분할법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 그룹 간 용역 제공 시 세무상 공제되기 위한 원칙 및 정상가격의 적용에 대해 새로이 도입됨

- 그룹 간 용역 제공 시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이익을 얻어야 하며 가격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익은 직·간접적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으며, 정상가격은 독립적인 제3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함

- 이미 다른 공급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있거나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주주 등의 지분 투자자와 관련된 용역, 본사보고 등 본사를 위해 수행되는 용역 등은 제공받는 자에게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이러한 견해는 OECD의 일반적 관점과 부합함¹²⁾

- 과세당국은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이익을 얻지 못하면 관련 비용을 부인하며, 용역의 대가가 정상가격이 아니라면 공제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9) 国家税务总局, 《特别纳税调整实施办法》征求意见稿, 2015.9.17.

10) 16개의 장들의 내용은 총칙, 특수관계신고, 문서화(同期资料), 이전가격산정, 세무조사, 무형자산, 그룹간용역(关联劳务), 사전합의절차, 원가부담약정, 피지배외국법인, 과소자본세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이익수준평가(利润水平监控), 상호합의절차, 벌칙,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11) Deloitte, SAT issues draft guidance on transfer pricing rules and BEPS initiatives, China Tax Alert, 21 September 2015, p. 5.

12) Deloitte, op. cit., p. 6.



- 납세협력을 증진시키고 위험평가접근방법을 도입하기 위해 이익수준평가를 새로이 도입함
 - 각 지방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위험평가에 따라 이익수준평가를 할 수 있는 지침을 설계하도록 함
 - 또한 납세자에게 납세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세무상 내부통제를 설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권고함
- 기존의 규정에 추가로 이전가격 문서의 확대, 특수항목에 대한 보고, 국가별 보고 등의 의무가 부여됨¹³⁾
 - 이전가격 등의 문서화를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특수항목에 대한 보고항목의 세 가지로 구분하도록 함
 - 이는 OECD BEPS Action 13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내용임
 -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은 특수관계자와의 매입·매출이 2억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의 거래에서는 4천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가 부여됨
 - 그룹 간 용역, 원가부담약정, 과소자본세제 등에 대해 특별보고의무를 부여함
 - 특별세무조사대상 회사의 국외 지주회사가 그 관할과세관청에 국가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하더라도 중국 과세관청이 정보교환을 통해 이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중국 과세관청은 대상회

사에 국가별 보고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5. 인도네시아-부채비율에 따른 관련비용 공제제한 규정 공개¹⁴⁾

-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2015년 9월 9일 부채/자본비율(부채비율)을 제한하여 관련 비용을 부인하는 규정을 공개함
 - 이 규정은 법인들의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관련된 차입비용을 부인하도록 함
 - 이의 배경은 인도네시아 기업들의 부채비율 증가(특히, 해외차입으로 기인한)에 따라 기업의 재무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정부 세수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¹⁵⁾
 - 이 규정은 2016년 과세기간부터 적용됨
- 부채비율의 적용대상은 일부 예외가 존재하며, 국외차입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 부채비율은 모든 법인에 적용되나 은행, 보험 등의 금융기관, 자원개발, 사회기반시설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은 제외됨
 - 부채와 자본 금액은 월평균잔액으로 계산되는데 부채는 이자부조건의 모든 채권이 포함되며, 자본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무이자차입금액이 가산됨

13) Ernst & Young, China's Tax Authorities issue groundbreaking consultation draft to update transfer pricing rules in a Post-BEPS environment, Global Tax Alert, 24 September 2015, p. 2.

14)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Penentuan besarnya perbandingan antara utang dan modal perusahaan untuk keperluan penghitungan pajak penghasilan, Nomor 169/Pmk. 010/20 15, 2015.9.9.

15) Deloitte, Indonesia's new armour-Thin Capitalization Rules, Tax Alert, September 2015, p. 1.

- 차입비용은 이자비용, 할인액, 차입부대비용, 금융리스원가, 지급보증수수료, 일부 이자비용 성격의 외환비용이 포함됨
- 국외사모차입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가 요구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차입금에 대한 비용은 전부 부인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6. 미국-해외금융계좌 신고(FATCA) 마감일 및 원천징수 시작일 연장의 내용을 담은 공지(Notice 2015-66)를 발표

- 미국 국세청은 2015년 9월 19일 해외금융기관의 '2014년 미국 납세자 금융자산정보'의 보고 마감일을 2016년 9월 30일로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함
 - 기존 금융자산정보 보고 마감일은 2015년 9월 30일이었으며, 마감기한을 2주 앞두고 1년 연장함
 - 이는 자동정보교환을 이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내국법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미국 국세청과 재무부의 판단하에 연장된 것임
 - 따라서 FATCA를 이행하기로 한 해외금융기관이 미국 과세당국에 정보제공 마감일의 연장 요청을 2015년 9월 30일 이전에 전달한 경우, 해외금융기관의 미국납세자 금융자산정보(2014, 2015년)의 마감기한은 2016년 9월 30일임
- FATCA 협약을 맺지 않은 해외금융기관의 주식, 채권 양도소득(gross proceeds) 및 해외도관지급금

(foreign passthru payment)의 원천징수 시작일자를 2019년 1월 1일로 연장할 계획이라 공지함

-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식, 채권 양도소득(gross proceeds)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할 예정이었음
- 현재 해외도관지급금 원천징수 시행일자는 규정된 바 없으나, 이번 공지를 통해 2019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될 예정임

- 연결금융그룹에 속하는 지사(limited branch)와 각 금융기관(limited FFI)이 내국법과의 상충으로 정보제공업무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그룹 전체가 FATCA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공지함
 - 현행 규정에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사, 자회사가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연결그룹 전체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 이는 연결그룹 내 각 금융기관들도 내국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FATCA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7. 프랑스-2015년 9월 30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함¹⁶⁾

- 프랑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크게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의 개정사항을 포함하며, 10월 중순부터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경 입법될 것으로 예상됨

16) France-Finance Bill for 2016-summary(05 Oct. 2015), News IBFD. <http://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global/Documents/Tax/dttl-tax-alert-france-1-october-2015.pdf>



가. 법인세법 개정안

- 법인세법 개정안은 이전가격 관련 신고의무, 중소기업 제조 산업용 로봇에 대한 가속상각기간 연장, 영화제작 세액공제의 확대 적용, 대기업 소득누진세(surtax) 적용기간 연장을 포함함
- 대기업은 세무조사 시 현 상황을 반영하는 이전가격 관련 문서를 조사 착수시점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법인세신고 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간소화된 이전가격 신고서를 전자신고하여야 함
 - 매년 신고해야 하는 이전가격 신고서에는 관계회사 거래가 있거나 무형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소재지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2013년 10월 1일부터 2015년 말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중소기업 제조 산업용 로봇에 대한 감가상각 특례기간을 연장하여 2016년 말까지 취득하는 로봇에도 상각특례를 인정함
 - 이 기간 취득한 산업용 로봇에 대하여 내용연수로 24개월을 선택 적용할 수 있음
- 프랑스 내에서 제작되는 영화 중 불어로 제작되는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편당 30백만유로를 한도로 적격 제작비용의 30%, 기타 영화제작에 대하여는 적격비용의 2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 기존에는 불어로 제작되는 영화에 한하여 편당 4백만유로를 한도로 적격 비용의 20%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음
- 프랑스 기업 중 매출액이 250백만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의 10.7%의 세율로 추가 징수

하는 세금(contribution exceptionnelle sur l'impôt sur les sociétés)의 폐지가 2015년 연말에서 2016년 연말로 연기됨

- 이러한 추가 과세규정이 폐지되는 경우 대기업에 적용되는 유효세율은 현행 38%선에서 34.4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나. 소득세법 개정안

-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물가상승에 따른 세율 인상, 개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도입, 점진적 전자신고·납부 의무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확대 적용 등을 포함함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각 과세표준구간(tax brackets)을 0.1%p 인상함
- 소득 지급시점에서의 납부('pay as you earn')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따라 2018년부터 개인 납세자의 소득원천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구조로 전환됨
 - 도입의 복잡성 때문에 원천징수체계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원천징수 시스템이 실행되는 경우에도 개인납세자들의 연말 소득세 신고의무는 유지됨
- 개인 납세자들의 소득세 전자신고·납부 의무가 소득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적용되어 2019년에는 모든 납세자가 전자신고·납부 의무 대상이 됨
 - 2014년 소득이 4만유로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2016년부터, 2015년 소득이 28,000유로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2017년부터, 2015년 소득이 15,000유로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2018년부터 전

자신고 · 납부 의무가 적용됨

- 저소득 가구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공제 (décote)의 확대 적용으로 소득세가 1,553유로(기존 1,135유로) 미만인 독신가구와 부부합산 소득세가 2,560유로(currently 1,870유로) 미만인 부부가구도 공제혜택이 적용됨

다. 부가세 개정안

- EU 역내의 다른 회원국에서 프랑스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공급이 연간 35,000유로를 초과하는 사업자는 프랑스에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세 신고 ·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됨
- 기존에는 프랑스 소비자에 대한 공급이 10만유로 이하인 공급자는 면세사업자로 분류하였음
(자료 수집 및 정리: 흥민옥 회계사)

8. EU-2015년 9월 28일 *Tax reforms in EU Member States 2015—Tax policy challenges for economic growth and fiscal sustainability* 보고서를 발표함¹⁷⁾

-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의 조세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2014년 반기부터 2015년 반기 기간 (조사대상 기간) 중 회원국의 조세정책을 분석하고 회원국의 최근 조세개편 내용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간함
- 회원국의 주요 조세정책 동향, 고용창출 및 투자

촉진에 호의적인 조세환경 구축, 조세포탈 대응 방안, 세목별 세원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EU 회원국의 GDP 대비 조세수입은 모든 세목(간접세, 직접세, 사회보장기여금 등)에서 증가 추세를 보임
 - 다만 2015년에는 전년 대비 조세수입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간접세와 직접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사회보장기여금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EU 회원국들은 노동에 대한 세금(labour taxes: 이하 '노동세')¹⁸⁾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된 세부담이 경제성장에 덜 해로운 세부담으로 이전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불가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등 3개국만이 소득세 또는 사회보장기여금 인상으로 노동세를 증가시킴
 - 벨기에,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몰타, 영국 등 8개국에서는 저소득자와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세금을 인하함
 -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 4개국에서는 저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화와 함께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이 병행됨

17) http://ec.europa.eu/economy_finance/publications/eeip/ip008_en.htm

18)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부가세의 표준세율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한 개정이 발견되지 않음
 - 슬로바키아에서는 부가세 세율을 1%p 인상하였고, 룩셈부르크에서는 2%p 인상이 있었음
 -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 9개국에서는 부가세 과세대상 거래를 확장하거나 부가세 경감세율(reduced VAT rate)을 인상함
 - 체코,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등 11개국에서는 새로운 경감세율 도입, 기존 경감세율의 인하, 경감세율 적용대상의 확대 등이 있었음
- 환경과 건강 관련 과세와 관련해서는 회원국의 3분의 1 이상이 에너지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하였고, 슬로베니아는 탄소세(carbon tax)를 인상한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에너지 소비세에 대한 일시적 경감기간을 연장함
 -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스페인, 프랑스, 몰타,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조세특례를 도입하거나 강화함
 - 반대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환경친화적 상품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일부 폐지함
 -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등에서는 오염과 자원사용에 대한 세금을 인상함
 - 3분의 1에 가까운 회원국에서는 담배와 주류소비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함
- 조사대상 기간 중 13개 회원국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세법개정을 하였거나 입법예고

를 함

-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핀란드, 영국 등에서는 부동산에 대해 매 회기 납부하는 세금(recurrent property taxes)의 세율을 인상함
- EU 회원국들은 법인세 과세표준 축소 등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개편 작업을 지속함
 - 법인세 세율 인하 추세는 이전 기간에 비해 다소 둔화되었으나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에서는 법인세 세율을 인하함
 - 법인세와 관련하여 투자촉진을 위한 과세표준 축소와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과세표준 확대 또는 비효과적인 조세특례의 폐지 등 상반된 경향이 동시에 나타남
- R&D 관련 과세특례와 관련해서 조사대상 기간 중 소수의 회원국에서만 개정이 파악됨
 -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영국 등 5개국에서 기존의 R&D관련 조세특례제도에 개정이 있었음
 - 오스트리아에서는 발명 프리미엄(invention premium) 관련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으며, 슬로바키아는 R&D 비용의 125%를 공제하는 'super allowance' 제도를 도입함
- 여러 회원국에서 투자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도(Incentives for entrepreneurship and investment) 도입이 있었음
 -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등 5개국에서는 생산설비와 기계장치 투자 촉진을 위해 추가 상각 허용(bonus depreciation) 또는 이익의 재투자에 대한 특례제도 등을 도입함

- 아일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영국 등 6개국에서는 소규모 또는 사업초기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함
-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몰타, 영국 등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촉진이 조세정책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음
 -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몰타,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자선적 기부에 대한 공제 범위가 확대됨
- 많은 회원국에서는 납세협력 간소화와 관련해서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3분의 2 이상의 회원국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개선하였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소화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조세포탈과 탈세행위 방지를 위해 대다수 회원국의 과세당국은 자국의 법집행기관뿐 아니라 해외 과세당국과 보다 밀접한 업무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3분의 2 이상의 회원국에서 조세분야 협력을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도입하였음
 - 체코,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등 다수의 회원국들에서는 OECD 조세행정 지원 협약(OECD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이 발효됨
 -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등에서는 해외금융계좌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이 발효됨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회원국들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덴마크, 아일랜드 등에서는 일반 및 특별 조세회피방지규정(general and specific anti-avoidance provisions)을 도입하거나 기존 규정을 강화함
 - 체코, 스페인,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 규정을 강화함
 - 폴란드와 스페인은 CFC(controlled foreign companies) 규정을 도입 또는 강화하였으며, 스페인의 경우 이중비과세를 야기하는 하이브리드 미스매치(hybrid mismatch) 관련 규정을 도입함
 - 슬로바키아는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s)를 도입하였고, 스페인과 폴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이자비용공제 요건을 강화함
 - 영국에서는 영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다국적기업들의 이익 중 인위적으로 부당하게 이전되는 소득(diverted profit)에 대해 과세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9. OECD-2015년 10월 8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OECD BEPS 2015 최종 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을 승인함¹⁹⁾

-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OECD가 10월 5일 발표한 BEPS Action 1~15의 2015년 최종 패키지²⁰⁾에 담긴 권고사항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11월에 개최되는 G20에 정상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의함
 - 이에 앞서 2013년 7월 G20 정상회의에서는 15개의 주요 영역에 대한 BEPS Action Plan을 승인함
 - 2014년에는 BEPS프로젝트의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s)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2015년 최종 패키지를 발표함

■ OECD와 G20은 후속작업의 완료와 합의된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2020년까지 협력할 것이며,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2016년 초까지 모니터링체계를 마련하기로 함

■ 2015년 10월 5일 발표된 2015 BEPS 최종 패키지는 2014년 7개 Action(Action 1, 2, 5, 6, 8, 13, 15)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포함 및 통합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Action 1~15에 대한 총 13개의 보고서로 구성됨

〈표 2〉 2015 BEPS 최종 패키지 주요내용 요약

Action	주요내용
Action 1.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경제의 성장으로 디지털경제를 세무 목적상 여타 경제와 구분짓기 어려워짐 ■ 디지털경제와 그 사업모델은 그 자체로는 BEPS 문제를 야기하지 않지만, 그들의 주요 특징은 BEPS 위험을 높일 수 있음 ■ 디지털경제가 야기할 수 있는 BEPS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도출한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사업장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개정 및 관계기업 간의 사업 분산(fragmentation)을 통한 고정사업장 제외 혜택 방지 규정(anti-fragmentation rule) 도입 ✓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 계약의 인위적 조작을 통해 고정사업장 과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고정사업장 정의 개정 ✓ 무형자산 사용에 대한 소득을 법적소유권자가 독점하지 않고 무형자산의 가치창출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해당 소득의 배분을 위한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개정 ✓ 디지털경제 소득이 궁극적으로 모법인의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도록 CFC(controlled foreign companies) 소득범위 개정 ✓ 디지털경제의 지속적인 진화로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반영한 최종 결과물은 2020년까지 산출될 것임

19) <http://www.oecd.org/newsroom/g20-finance-ministers-endorse-reforms-to-the-international-tax-system-for-curbng-avoidance-by-multinational-enterprises.htm>
 20) <http://www.oecd.org/ctp/beeps-about.htm>

〈표 2〉의 계속

Action	주요내용
Action 2. 하이브리드 미스매치 효과의 해소 (Neutralising the Effects of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브리드 미스매치는 혼성단체 또는 혼성상품에 대한 두 나라 이상의 세법 차이를 이용하여 이중비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달성하는 거래를 일컬음 ■ 본 보고서는 내국세법 개정에 대한 권고사항(Part I)과 OECD 모델협약 개정에 대한 권고사항(Part II)으로 구성됨 ■ 본 보고서는 2014년 중간보고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2014년 중간보고서와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 I의 권고사항에 추가 가이드라인과 실질적인 사례를 추가하여, 내국세법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설명함 ✓ 자산이전 거래, 수입된 하이브리드 미스매치, CFC규정 목적상 수입항목에 포함된 지급금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한 추가적 권고사항 포함
Action 3. 효과적인 CFC규정의 설계 (Designing Effective 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FC규정은 1962년 최초 도입한 이래 현재 OECD/G20국가 중 30개국에서 CFC규정을 이미 도입하고 있음 ■ 하지만, 많은 국가들의 기존 CFC규정은 국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해 BEPS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다음 6개 이슈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FC의 정의 ✓ CFC 규정 배제 및 배제기준 ✓ 소득의 정의 ✓ 소득의 계산 ✓ 소득의 배분 ✓ 이중과세 방지 및 제거
Action 4. 이자비용 및 기타 금융비용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Limiting Base Erosion Involving Interest Deductions and Other Financial Pay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비용의 과다 공제로 인한 세원잠식을 막기 위해 제시된 권고사항은 해당 법인의 EBIDT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sation)에 국가에서 설정하는 '고정 비율'(10~30%)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에 한하여 세무상 이자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함 ■ 비세무 목적으로 외부차입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업들을 고려하여 이러한 '고정비율' 접근을 대신해 해당 기업이 속한 그룹의 순이자비용/EBIDTA 비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예외규정을 마련함 ■ '그룹비율' 산정, 은행 및 보험 산업분야의 적용문제 등 추가적인 기술적인 작업이 2016년까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 ■ 이전가격(Action 8)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2016년과 2017년에 추가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함
Action 5. 투명성과 실질을 고려한 유해조세제도 대응(Countering Harmful Tax Practices More Effectively, Taking into Account Transparency and Subst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조세제도 경쟁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은 인위적인 소득이전에 활용되는 특혜제도(preferential regimes)와 그러한 특혜제도와 관련된 정보의 투명성 부재임 ■ 유해조세제도포럼(Forum on Harmful Tax Practices, FHTP)의 주된 업무 초점은 지적재산권(IP) 특혜제도와 기타 특혜제도 평가를 위한 '실질적 활동' 요건에 대한 정의 확립과 특혜제도 관련 정보의 의무교환을 통한 투명성 제고에 있음 ■ 본 보고서에는 특혜제도가 비OECD 회원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요소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 IP 특혜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특혜제도에 대한 지속인 모니터링과 검토체계 및 투명성체계(transparency framework)가 합의되었고 곧 시행될 것임
Action 6. 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혜택의 부여 방지(Preventing the Granting of Treaty Benefits in Inappropriate Circumstan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on 6는 조약남용, 특히 조약쇼핑(treaty shopping)을 BEPS의 가장 중대한 원인으로 보고, 조세회피방지규정 등 최소한의 기준을 조세 조약에 도입함으로써, 조세 조약의 의도에 위배되는 조약혜택 부여를 방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 조세회피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 조약이 조세회피 또는 조세경감 목적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을 조세 조약에 분명히 기술함 ✓ 조약쇼핑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혜택의 제한규정(Limitation-on-benefits, LoB)' 등 특별 조세회피방지규정(specific anti-avoidance rule)을 OECD 모델협약에 도입함 ✓ 조약쇼핑 외 다른 형태의 조약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주된 목적 테스트(principal purpose test, PPT)'와 같은 보다 일반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general anti-avoidance rule)을 OECD 모델협약에 도입함



〈표 2〉의 계속

Action	주요내용
Action 7. 고정사업장 지위 인위적 회피 방지 (Preventing the Artificial Avoidance of Permanent Establishment Stat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이 특정 국가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대한 정의는 BEPS와 관련하여 중요하며, 디지털경제의 확장으로 고정사업장 정의의 재수립은 더욱 중요해짐 ■ Action 7은 수의계약(commissionaire arrangement), 예비적 보조적 활동 등 고정사업장 예외조항을 이용한 인위적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등에 대응하기 위해 OECD모델협약의 고정사업장 정의에 대한 개정내용을 다룸 ■ 고정사업장 정의에 대한 개정사항은 Action 15에서 다루는 다자간협약에 포함되어 조세조약에 반영될 것임 ■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의 계산에 대하여는 2016년까지 추가적 작업 완료가 예상됨
Action 8-10. 정상가격산출과 가치창출의 연계(Aligning Transfer Pricing Outcomes with Value Cre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on 8-10의 업무 초점은 다국적기업의 정상가격산출이 가치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 다음의 3가지 주요영역에 대한 대응방안 내용을 다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on 8: 무형자산에 대한 소득의 분배와 관련한 이전가격 문제 ✓ Action 9: 계약상 위험부담에 따른 수익 배분과 관계회사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따른 이전가격문제 ✓ Action 10: 내부거래의 수익배분, 다국적기업그룹 내부에서 인위적인 소득 이전, 경영자문수수료 또는 본사경비 배분 등 조세조작 위험이 높은 내부거래 방지
Action 11. BEPS 측정과 모니터링 (Measuring and Monitoring BE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on 11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의 기간 동안 BEPS로 인한 법인세 손실을 전세계 법인 매출액의 4~10%로(매년 1,000억~2,400억달러)로 추산하고 이러한 BEPS 문제는 조세수입의 큰 부분을 법인세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에 더 큰 위험이 되는 것으로 판단함 ■ Action 11은 현재 활용가능한 데이터와 방법론을 평가하고 데이터와 방법론의 중대한 제한으로 BEPS의 규모와 BEPS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함 ■ 이에 정보접근의 개선, 기존 데이터 분석 강화, 그리고 Action 5, 13, 12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데이터 수집 등의 권고사항을 제시함
Action 12. 의무공시규정 (Mandatory Disclosure Ru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공시규정의 주요 목표는 (i)과세당국에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과 관련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promoter)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과세투명성을 높이는 것과 (ii)공격적 조세회피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부담으로 조세회피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에 있음 ■ 본 보고서는 공시의무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공시의무 대상자, 공시대상 자료, 자료제출 시기, 그리고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 등에 대한 사항을 기술함
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와 국가별 보고서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and Country-by-Country Repor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on 13은 이전가격문서에 대한 수정된 지침과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에 대한 견본(template)을 제시함 ■ 본 보고서에서는 이전가격 문서에 대한 세 가지 보고사항을 규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적기업은 글로벌 비즈니스 운영과 이전가격정책 관련 사항을 '마스터파일(master file)'에 포함하여 준비하고 다국적기업의 사업과 관련 있는 모든 국가의 과세당국이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요 관계회사 거래, 해당 금액, 정상가격 산출 근거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로 관련 국가에 특정한 '로컬파일(local file)'을 해당 과세당국에 신고하여야 함 ✓ 다국적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에 매년 신고해야 하는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에는 법인 소재국가별 매출액, 세전 이익, 법인세액, 종업원 수, 자본금, 이익잉여금, 유형자산, 사업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Action 14. 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 (Making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More Effec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PS프로젝트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이 건전한 납세자(compliant taxpayers)들에게 불필요한 조세 불확실성을 야기하거나 의도치 않는 이중과세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 필요한 분쟁해결 장치-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의 효과성 제고가 매우 중요함 ■ 관련국들은 MAP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조약 관련 분쟁에 대한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개발과 관련 국가들의 조속하고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peer-based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동의함 ■ '최소기준'은 조약상 MAP에 대한 완전한 이행과 분쟁사건의 적시적 해결, 조약 관련 분쟁 사전방지 및 적시적 해결을 위한 행정절차의 수립, 납세자의 MAP제도 접근성 확보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함

〈표 2〉의 계속

Action	주요내용
Action 15. 양자간 조세조약을 보완하기 위한 다자간 협약 개발(Developing a Multilateral Instrument to Modify Bilateral Tax Trea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PS 프로젝트의 권고사항을 3,000개가 넘는 양자조세조약에 반영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에 각국 정부들은 수천 개의 양자조약을 동시에 재협상하는 효과를 가지는 다자간협약(multilateral instrument)의 실행 가능성을 타진하기로 합의함 ■ Action 15는 다자간협약 개발을 위한 조세 및 국제공법(international public law) 문제들을 분석하여, 조약 관련 BEPS 조치들의 이행을 간편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Action 15는 다자간협약이 바람직하며 실행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으며, 다자간협약의 개발과 협약 서명을 위한 작업을 2016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임

출처: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5 Final Reports: Executive Summaries,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Explanatory Statement.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집행위원회, 회원국의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 24억유로 지원 결정(2015.8.10.)¹⁾
 - EU 집행위원회는 망명, 이주, 통합 기금(Asylum, Migration and Integration Fund: AMIF)²⁾ 및 내부 안보 기금(Internal Security Fund: ISF)³⁾ 23개 다년간 국가별 프로그램을 승인
 - (규모) 총 약 24억유로
 - (기간) 2014년~2020년
 - (내용) 그리스, 이탈리아 등 이민 최전선에 있는 회원국들과 대규모 이민 유입을 처리하는 EU 국가들에 자금 지원
 - ☞ (AMIF 기금) 이민 수용 능력 증진, EU 기준에 맞는 망명 절차 확보, 이주자 통합 등의 국가 활동 지원
 - ☞ (ISF 기금) 회원국의 국경 관리 및 감시 지원, 국가 간 범 집행 공조, 회원국의 안보 관련 리스크(테러, 마약 밀매, 사이버 범죄, 인신매매 등) 관리 능력 강화 등 지원
 - ☞ (이 외에도) 특정 초국가적 활동을 위한 추가 지원, AMIF 프로그램을 통한 2014~2015년 EU 재정착 프로그램 지원 등

- EU 집행위원회, 그리스에 대한 유럽안정화기구(European Stability Mechanism: ESM)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승인(2015.8.19.)⁴⁾
 - (경과) 그리스 지원 양해각서(MoU)에 대한 그리스와 EU 기관 간 합의(8.11), 유로그룹 회의 승인(8.14), ESM 운영위원회의 승인(8.19)을 거쳐 EU 집행위원회와 그리스 당국의 MoU 최종 합의(8.19)
 - * 한편 그리스는 유로 정상회의(7.12)에서 제시한 이행 요구 사항을 7월 16일, 22일 입법화했고 MoU에 제시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전 조치를 8월 14일에 입법화함
 - (지원 규모) 3년간(2015년~2018년) 최대 860억 유로를 지원하며 그리스의 MoU 조건 이행 수준에 따라 지급액 결정
 - 최초 분할 지급액은 260억유로임
 - ☞ 100억유로는 은행자본확충·정리를 위해 ESM에 마련된 별도 계정을 통해 지급(2016년 1월 31일까지)
 - ☞ 160억유로는 자금 조달 및 채무상환을 위해 사용되며 이 중 130억유로는 8월 20일 그리스에 지급, 30억유로는 MoU 이행 여부에 따라 가을에 지급될 예정
 - (MoU의 주요 내용) 금융지원을 위한 상세한 조건을 MoU에서 제시
 - (재정 지속가능성 회복) VAT 및 연금 시스템 개혁, 납세 순응 강화, 탈세 방지 등 재정 개혁을 통해 2018년까지 중기재정수지 목표(기초재정수지 3.8% 흑자) 달성

1) 출처: EU 집행위원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5-5483_en.htm

2) 이주 유입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망명 및 이주에 대한 공동 대응 개발에 기여

3) 'Borders and Visa'와 'Police Cooperation and Crisis Management Instrument'로 구성되며 높은 수준의 안보 및 범죄 예방 보장, 적법한 이주, 외부 국경 관리 등 확보를 지원

4) 출처: EU 집행위원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5-5512_en.htm

* 기초재정수지 : (2015) -0.25% → (2016) 0.5% → (2017) 1.75% → (2018) 3.5%

- (금융 안정성 보호) 은행자본확충, 부실채권 문제 해결 등 금융시장 안정성 보호를 위한 조치 이행
- (성장, 경쟁력, 투자 제고) 노동 및 생산시장(에너지 등) 개혁, 민영화 프로그램(민영화 절차 투명화, 적정 자산매각 가격책정을 위한 입법 등), 투자 지원 정책 등
- (공공행정 현대화) 공공재화·서비스 공급 효율성 제고, 사법 시스템 효율화, 부정부패 척결, 과세 당국 및 통계청 독립성 강화 등
- (개혁의 사회적 영향) 프로그램의 조치들이 완전히 이행되면 그리스가 재정·사회적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안정과 성장을 되찾을 것
 - 완전한 개혁 이행을 통해 잠재 GDP 제고, 소비자의 재화·서비스 가격 하락, 경쟁력 강화, 고용 기회 창출 등 가능
 - 또한 조정 과정의 부담을 가능한 공평하게 배분하고 그리스의 시급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
- (향후 계획) EU 집행위원회는 ECB 등과 함께 그리스의 개혁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프로그램 이행을 지원할 예정
 - (개혁 이행 지원) EU 집행위원회는 구조적 개혁 지원 서비스(Structural Reform Support Service: SRSS)⁵⁾를 통해 개혁 이행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전문 지식을 제공할 예정

- (성장·고용 지원) EU 집행위원회는 그리스의 성장과 고용을 위한 투자를 위한 지원 계획(2020년까지 EU 예산에서 350억유로 이상 지원) 발표(7.15)

* 2007~2013년 공동자금조달비율 100% 적용, 2014~2020년 사전자금조달비율 7%p 인상 등⁶⁾

■ EU 통계청(Eurostat), 2015년 2분기 GDP 성장률 발표(2015.8.14.)⁷⁾

• 2015년 2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유로존(EA19)은 0.3% 증가, EU 28개국은 0.4%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유로존(EA19)이 1.2%, EU 28개국은 1.6% 증가(잠정치 기준)⁸⁾

- 주요 국가별로 전분기 대비 2015년 2분기 GDP 성장률은 영국(+0.7%), 프랑스(+0.0%), 독일(+0.4%), 스페인(+1.0%), 그리스(+0.8%) 등으로 나타남

* 미국의 2015년 2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

5) SRSS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되었으며 회원국의 성장친화적 개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노하우 등 기술적 지원 및 가이드를 제공함

6) 출처: EU 집행위원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5-5373_en.htm

7) 출처: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web/products-press-releases/-/2-14082015-AP>

8) 확정치는 2015년 9월 8일 발표될 예정



〈표 1〉 유로존(EA19) 및 EU 28개국의 2015년 2분기 GDP 성장률(계절조정¹⁾)

(단위: %)


국가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14		2015		2014		2015	
	Q3	Q4	Q1	Q2	Q3	Q4	Q1	Q2
벨 기 에	0.3	0.2	0.4	0.4	1.0	1.0	1.0	1.3
불 가 리 아	0.4	0.4	0.9	0.4	1.5	1.3	2.0	2.2
체 코	0.5	0.5	2.5	0.9	2.3	1.3	4.0	4.4
덴 마 크	0.6	0.3	0.5	-	1.2	1.4	1.7	-
독 일	0.2	0.6	0.3	0.4	1.2	1.5	1.1	1.6
에 스토니아	0.2	1.0	-0.3	0.8	2.3	2.6	1.7	1.9
아 일 랜 드	1.4	1.2	1.4	-	4.2	5.9	6.1	-
그 리 스	0.8	-0.2	0.0	0.8	1.5	1.4	0.5	1.4
스 페 인	0.5	0.7	0.9	1.0	1.6	2.0	2.7	3.1
프 랑 스	0.2	0.1	0.7	0.0	0.2	0.1	0.9	1.0
크 로 아 티 아	0.2	-0.1	0.0	-	-0.3	0.2	0.1	-
이 탈 리 아	-0.1	0.0	0.3	0.2	-0.5	-0.4	0.1	0.5
키 프 로 스	-0.8	-0.2	1.4	0.5	-2.1	-1.6	0.2	0.9
라 트 비 아	0.5	0.5	0.4	1.2	2.3	2.1	2.0	2.6
리 투 아 니 아	0.5	0.7	-0.5	0.6	2.7	2.6	1.6	1.3
룩셈부르크	2.2	2.2	0.7	-	5.2	8.5	4.9	-
헝 가 리	0.6	0.7	0.6	0.5	3.5	3.2	3.2	2.4
몰 타	0.6	1.0	0.6	1.2	3.4	4.1	3.5	-
네 덜 란 드 ²⁾	0.4	0.9	0.6	0.6	1.2	1.6	2.5	2.0
오 스트 리 아	0.0	-0.2	0.7	-	0.3	-0.2	0.2	0.6
폴 란 드	0.9	0.8	1.0	0.9	3.4	3.5	3.4	3.6
포 르 투 갈	0.2	0.4	0.4	0.4	1.2	0.6	1.5	1.5
루 마 니 아	1.3	0.9	1.4	0.1	2.9	2.6	3.8	3.7
슬로베니아	0.7	0.3	0.8	-	3.1	2.1	3.0	-
슬로바키아	0.7	0.7	0.8	0.8	2.5	2.6	3.0	3.1
핀 란 드	-0.2	-0.2	-0.2	-0.4	-0.6	-0.4	-0.2	-1.0
스 웨 덴	0.6	0.9	0.4	1.0	2.6	2.6	2.6	2.9
영 국	0.7	0.8	0.4	0.7	3.0	3.4	2.9	2.6
EA19	0.2	0.4	0.4	0.3	0.8	0.9	1.0	1.2
EU28	0.3	0.4	0.4	0.4	1.3	1.4	1.5	1.6

주: 1) The seasonal adjustment does not include a working-day correction for Ireland, Slovakia and Iceland.

2) Percentage change compared with the same quarter of the previous year calculated from working-day adjusted data.

출처: EU 통계청, Flash estimate for the second quarter of 2015, 2015.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해란 연구원〉

 IMF

- IMF, 이라크에 대한 긴급금융지원(RFI) 승인(2015. 7.30.)⁹⁾
 - (지원배경) 이라크는 이슬람국가(IS) 문제와 유가 하락이라는 이중고(twin shocks)를 겪으면서 정부적자가 심화되고 외환보유액이 급감
 - (지원규모) 8억 9천만 특별인출권(SDR)(약 12억 4,000만달러) 규모의 긴급금융지원(RFI; Rapid Financing Instrument)¹⁰⁾을 제공
 - (정책제언) 이라크 재정당국의 현 재정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재정갭과 대외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노력이 필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당한 규모의 재정조정, 고정환율제 유지는 올바른 정책 방향
 - 재정균형 제고를 위한 조치(예: 전력요금 조정)가 필요하며, 거시적으로 경제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중기적 관점의 구조 개혁을 단행할 필요

- IMF, 우크라이나 확대신용공여(EFF)에 대한 1차 검토결과 발표 및 17억달러 규모의 2차 분할금 지급 승인(2015. 7.31.)¹¹⁾
 - (배경) IMF는 지난 3월 11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175억달러 규모의 확대신용공여(Extended Fund Facility)를 승인¹²⁾
 - 대외부분 및 금융부분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견고한 중기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안

- 정성 보장, 공공재정 강화, 구조개혁 등의 프로그램을 제안
- (평가) EFF지원 승인 후 우크라이나 재정당국은 경제조정프로그램을 순조롭게 진행
 - 경제의 취약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최근 몇 개월간 환율이 안정화되고 대내통화 표시 예금이 증가하였으며, 경기 둔화세가 완화되는 등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정책제언) 적정수준의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한편, 재정규율을 강화
 - 디스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상황에 따라서 경기부양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
 - 자본구조 재조정(recapitalization), 특수 관계자간 대출(related-party lending) 축소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회복
 -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부분의 개혁을 지속하는 동시에,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
 - 부패 문제 및 국영에너지기업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 실시
- (지원내용) 이번 검토를 통해 IMF는 우크라이나에 2차 분할금인 17억달러를 지원

9) 출처: <http://www.imf.org/external/np/sec/pr/2015/pr15363.htm>
 10) 긴급금융지원(RFI): 상품가격 충격, 자연재해, 정치갈등 등과 같은 외생적 충격으로 긴급한 국제수지 문제가 발생한 국가에 대해 자본조달을 지원하며, 구체적(full-fledged) 프로그램 이행과 평가를 조건으로 하지 않음
 11) 출처: <http://www.imf.org/external/np/sec/pr/2015/pr15364.htm>
 12) 2015년 3월 제2호 「재정동향」 참고



〈표 2〉 IMF의 우크라이나 지원 경과

일시	내용
2014.2.27	우크라이나, IMF에 구제금융 요청
2014.4.30	IMF, 대기성 차관(SBA; stand-by arrangement) 형태로 약 170억달러의 지원 승인
2014.8.29	IMF, 우크라이나 경제개혁프로그램 1차 검토
2015.1.21	우크라이나, IMF에 장기 구제기금 지원 요청
2015.3.11	IMF, 기존 대기성차관(SBA)을 대체하여 확대신용공여(EFF; Extended Fund Facility) 형태로 175억달러 지원 승인, IMF, 구제금융 1차 분할금 50억달러 지급
2015.5.31	IMF, 확대신용공여(EFF)에 대한 1차 검토 논의
2015.6.11	우크라이나, 모라토리엄 가능성 제기
2015.7.31	IMF, 확대신용공여(EFF)에 대한 1차 검토결과 발표 IMF, 구제금융 2차 분할금 17억달러 지급

- IMF, 네팔에 대한 긴급차관지원(RCF) 승인(2015. 7.31.)¹³⁾
 - (지원배경) 지진으로 인해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부채 수준 상승, 성장 잠재력의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
 - 피해규모는 네팔 GDP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
 - (지원규모) 3,500만 특별인출권(SDR)(약 4,900 만달러) 규모의 자금을 긴급차관제도(RCF; Rapid Credit Facility)¹⁴⁾로 지원
 - (정책제언) 재정 관리를 강화를 통해 재건노력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 공공투자의 질을 제고
 - 금융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포용성

(financial inclusion)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

- 교통, 에너지, 교육·훈련,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개선에 중점을 둔 구조개혁 시행

- IMF, 그리스 관련 성명 발표(2015.8.14.)¹⁵⁾
 - 3차 구제금융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긍정적으로 평가
 - 그리스 3차 구제금융인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 프로그램’ 합의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금융부분의 안정성, 지속가능한 성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으로 작용
 - IMF는 그리스 3차 구제금융 승인을 유보
 - 그리스 채무는 여전히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이며, 그리스에 대한 IMF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채무의 상당한 경감(debt relief)이 필요
 - 그리스는 자체적으로 채무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없으며, EU 파트너와 향후 긴밀히 협력할 필요
- IMF, 2016년 9월까지 현행 SDR구성 유지 발표(2015.8.19.)¹⁶⁾
 -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s)을 구성하는 기준통화 바스켓의 갱신 및 편성 시기를 기존 2016년 1월에서 10월로 9개월 연기¹⁷⁾

13) 출처: <http://www.imf.org/external/np/sec/pr/2015/pr15365.htm>

14) 긴급차관제도(RCF): 빈곤감축 및 성장금융 기금(PRGF :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하에 조성된 제도로 긴급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저소득 국가에 대해 0% 금리, 5.5년 유예기간, 10년 만기로 지원

15) 출처: <http://www.imf.org/external/np/sec/pr/2015/pr15381.htm>

16) 출처: <http://www.imf.org/external/np/sec/pr/2015/pr15384.htm>

17) SDR 바스켓 구성은 5년마다 갱신·편성되며, IMF 회원국의 쿼터(출자할당액)에 따른 투표 수로 결정(회원국 85% 동의). 현재 SDR은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로 구성되며 비중은 각각 45%, 36%, 10%, 9%

- SDR 구성통화에 새 통화가 편입될 경우 관련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SDR 사용국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부여
- 하지만 IMF는 연기 결정이 구성통화를 변경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
- SDR 구성 변경을 위한 집행이사회가 올해 말 개최되며, 2016년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선미 연구원)

 호주

1. 기타

- 호주 중앙은행(RBA), 기준금리 동결 발표(2015.8.4.)¹⁸⁾
 - RBA 이사회는 현행 기준금리인 2%를 유지하기로 결정
 - 2015.2월과 5월에 각각 0.25%p씩 기준금리를 하향조정하여 사상 최저 기준금리인 2%를 기록¹⁹⁾한 바 있음
 - 글렌 스티븐스(Glenn Stevens) RBA 총재는 “세계경제는 적절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으며 호주 경제는 장기적인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발표
 - ☞ 호주의 고용률은 증가하고 실업률은 유지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향후 1~2년간 목표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스티븐스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올 하반기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나 다른 중앙은행들은 완화된 금리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국제금융환경은 여전히 순응적(accommodative)일 것”이라 판단
- 호주 연방정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발표(2015.8.11.)²⁰⁾
 - 연방정부는 탄소배출 감축 계획을 논의하는 각료 회의에서 2030년까지 2005년 탄소배출량 대비 26~28% 감축 목표 설정에 합의
 - 호주는 2020년까지 2000년 탄소배출량 대비 5% 감축 목표를 제시해 왔으며, 기준년도를 2005년으로 변경하여 2030년까지의 새로운 목표치를 제시
 - 연방정부는 보도자료에서 “호주는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강력하고 책임 있는 기여를 할 것이며, 26~28% 감축 목표는 호주 경제와 환경적 책임 간에 적절한 균형 수준”이라고 발표
- 호주 재정부, “Medical Research Future Fund” (이하 MRFF) 법안 통과 발표(2015.8.12.)²¹⁾
 - (배경) 호주정부는 FY2014-15 예산부터 중장기적 관점에서 의료연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MRFF 설립을 추진
 - (목적) MRFF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의료연

18) 출처: 호주 중앙은행(RBA), <http://www.rba.gov.au/media-releases/2015/mr-15-13.html>

19) 2015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참고

20) 출처: 호주 연방정부, <http://www.pm.gov.au/media/2015-08-11/australias-2030-emissions-reduction-target>

21) 출처: 호주 재정부장관 홈페이지, <http://www.financeminister.gov.au/media/2015/0812-medical.html>
FY2015-16 Budget Paper No.1



구를 위한 펀드로 의료혁신과 호주국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지원

- (펀드 운용) 기존의 보건병원펀드(Health and Hospitals Fund)²²⁾ 재원과 예산절감분이 투입되며, FY2019-20까지 200억호주달러의 재원을 적립할 계획
 - FY2015-16에 1천만호주달러, 향후 4년 동안 4억호주달러 이상을 의료연구를 위해 추가로 지원할 계획
- (펀드 관리) MRFF는 8인의 독립적인 전문가 자문위원회에 의해 관리될 계획이며, 투명성을 위해 보건부 장관(Minister for Health)은 2년에 한 번씩 MRFF로부터 지원받는 연구와 관련된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요구됨
- (향후 계획) MRFF는 왕실승인을 거쳐 설립될 예정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진아 전문연구원)

모니터링하고 성과지표가 예산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프레임 워크를 개발

- 각 부처들은 한 개 이상의 프로그램 지출에 대해 성과목표를 정하고, 각 부처의 목표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여 매년 초 의회에 제출
- 성과목표 도달 여부에 따라 성과데이터를 Met, Not Met, Not Applicable(N/A) 중 하나로 평가하고 프로그램과 지출에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
 - ☞ Met은 성과목표에 도달했거나 초과했을 경우, Not Met은 성과목표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Not Applicable(N/A) 목표가 확실하지 않거나 측정 불가능한 경우
- 각 부처의 성과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증가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과가 낮은 프로그램 예산이 다소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
 - 지출 데이터는 공공계정 중 FY2010-2011부터 FY2013-2014까지 데이터 활용
 - 성과 데이터는 108개 연방정부부처를 대상으로 부처별 성과보고서와 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보고서를 활용
- 재정건전화 기간 동안 성과예산데이터(performance budgeting data)가 예산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적다는 OECD 조사내용과 일치²⁴⁾

(자료 수집 및 정리: 박신아 연구원)

 캐나다

1. 기타

- 캐나다 의회예산처(PBO), 재정건전화 시행 중 성과예산분석 보고서(Analysis of Performance Budgeting During Recent Fiscal Consolidation) 업데이트 발표(2015.7.23.)²³⁾
 - 2014년 캐나다 의회예산처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22) 보건병원펀드는 호주 국가건설펀드(Nation-building Funds)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펀드(호주건설펀드(Building Australia Fund), 교육투자펀드(Education Investment Fund), 보건병원펀드(Health and Hospital Fund)) 중 하나이며, 2008년 보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예산흑자를 재원으로 설립된 펀드. 보건병원펀드는 MRFF 설립되면 운영을 중지하고 재원을 MRFF로 이전(FY2015-16 예산안)

23) http://www.pbo-dpb.gc.ca/files/files/UPDATE_Performance_Budgeting_EN.pdf

24)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13 Issue 2 참고(http://www.keepeek.com/Digital-Asset-Management/oced/governance/budgeting-for-fiscal-space-and-government-performance-beyond-the-great-recession_budget-13-5jz2jw9l0pd3#page11)

프랑스

1. 기타

- 프랑스 통계청, 2015년 2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2015.8.14.)²⁵⁾
 - 프랑스의 2015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1분기 경제성장률 대비 감소한 0.0% 규모
 - 가계소비는 전분기보다 급속히 감소한 0.1%의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정부소비 또한 소폭 감소한 0.3%의 성장률을 기록
 - 마누엘 발스(Manuel Valls) 총리는 2015년도 성장률 1% 목표 달성 노력을 어느 때보다 강화하고 있으며, 가계소비에 유의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이번 분기 수치를 통해 세금 감면²⁶⁾ 지속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고 언급²⁷⁾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은 연구원)

독일

1. 기타

- 통계청, 문화재정백서* *Kulturfinanzbericht 2014* 발간(2015.8.11.)²⁸⁾
 - * 연방통계청과 주정부통계청이 연합하여 2년마다 발표하는 보고서로, 문화 및 문화관련 재정지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
 - 2011년 문화부문 재정지출은 총 94억유로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GDP 대비 0.36%, 총예산 대비 1.69%에 해당하는 수치
 - (연도별 추이) 2005년 대비 17% 증가하였으나 전년 대비 증가율은 0.2%를 기록하며 거의 증가하지 않음
 - (공공부문별 비중) 지자체 지출 비중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정부 지출

〈표 3〉 프랑스 최근 분기별 성장률 추이

(단위: 전분기 대비 %)

	2014 Q3	2014 Q4	2015 Q1	2015 Q2	2014 연간실적	2015 연간전망
경제성장률	0.2	0.1	0.7	0.0	0.2	0.8
가계소비	0.4	0.2	0.9	0.1	0.6	1.5
정부소비	0.5	0.5	0.5	0.3	1.5	1.5
총고정자본형성(GFCF)	-0.4	-0.3	0.0	-0.3	-1.2	-0.8
수출	1.0	2.8	1.3	1.7	2.4	5.3
수입	1.8	1.8	2.2	0.6	3.9	5.1

출처: 프랑스 통계청, 2015.8.14.

25) 프랑스 통계청, <http://www.insee.fr/en/themes/into-rapide.asp?id=26&date=20150814>

26) 프랑스는 2015년도 예산안에서 가계구매력, 건설 및 주택, 에너지전환, 해외영토 4가지 분야의 세제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발표, 자세한 내용은 '주요국 예산안 2015' 참조

27) 프랑스 정부, <http://www.gouvernement.fr/partage/4966-1-hypothese-du-gouvernement-d-une-croissance-de-1-pour-l-annee-2015-est-plus-que-jamais-confortee>

28) 통계청, Presse & Service,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5.8.11.

https://www.destatis.de/DE/Press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en/2015/08/PD15_287_216.html



이 41.9%, 연방정부 지출이 가장 낮은 13.3%를 기록

☞ 독일은 문화연방주의(Kulturföderalismus)에 따라 모든 수준의 공공부문에서 문화영역에 개별적 권한을 특화하여 문화정책을 수행²⁹⁾

☞ 또한, 개별적 권한은 문화기관과 문화활동의 공동지원을 통해 문화와 관련된 다른 권한과 협력³⁰⁾

- (내역별 비중) 공연·음악 관련 지출 비중이 34.6%로 가장 높고, 박물관·전시·수집 관련 지출이 19.5%, 도서관 관련 지출이 14.4%로 나타남

• 2011년 문화관련(방송통신, 종교, 지역대학 등) 재정지출은 약 22억유로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5년 대비 11.5%, 전년 대비 3.7% 증가한 수치

■ 통계청, 2015년 2사분기 GDP 성장률 발표(2015.8.25.)³¹⁾

• 2015.2사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를 기록, 이는 완만한 성장을 보인 1사분기(0.3%)보다 0.1%p 개선된 수치

- 경상수지 흑자가 GDP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수출 2.2% 증가, 수입 0.8% 증가, 경상수지의 GDP 성장기여 0.7%p)

-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0.2%, 정부 최종소비지

〈표 4〉 문화 및 문화관련 재정지출 추이

(단위: 억유로, %)

연도	문화부문 지출			문화관련지출	합계
	금액	GDP 대비	총예산 대비		
1995	74.9	0.41	1.38	21.3	96.3
2000	82.3	0.40	1.64	23.2	105.5
2005	80.4	0.36	1.61	20.0	100.3
2006	81.5	0.35	1.62	20.3	101.8
2007	84.6	0.35	1.67	20.0	104.6
2008	88.1	0.36	1.65	20.2	108.3
2009	91.4	0.38	1.64	20.6	112.0
2010	93.9	0.38	1.69	21.5	115.5
2011	94.1	0.36	1.69	22.3	116.4
2012 ¹⁾	94.9	0.36	1.67	22.7	117.7

주: 1) 잠정치

출처: 통계청, Kulturfinanbericht 2014, 2015, p. 30.

29) 참고: 임우택, 『문화다양성 정책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1.

30) 참고: 임우택, 『문화다양성 정책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1.

31) 통계청, Press release, 2015.8.25

https://www.destatis.de/EN/PressServices/Press/pr/2015/08/PE15_305_811.html

출은 0.3% 증가하였으나, 고정자본형성은 0.4% 감소하여 국내수요는 혼합된 양상을 보임

〈표 5〉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연도	분기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14	1	0.7	2.4
	2	-0.1	1.4
	3	0.2	1.1
	4	0.6	1.4
2015	1	0.3	1.1
	2	0.4	1.6

주: 연쇄가격조정, 계절조정 적용

출처: 통계청, Press release, 2015.8.25.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은숙 연구원)

■ 이탈리아 재무부, 2015년 상반기 세입 모니터링 결과 발표³³⁾ (2015.8.17.)

- 2015년 1월~6월, 이탈리아 전체 세입은 1,943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은 262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

〈표 6〉 세입 현황

(단위: 백만유로, GDP 대비 %)

	2014	2015	변화량	%
Totale entrate (전체 세입)	194,699	194,364	-335	-0.2
Imposte dirette (직접세)	105,493	106,07	582	0.6
Imposte indirette (간접세)	89,206	88,289	-917	-1.0
Entrate territoriali (지방자치단체)	24,364	26,200	1,836	7.5

주: 2014년 1~6월, 2015년 1~6월 각각의 세수입 현황임

출처: 이탈리아 재무부, Rapporto sulle entrate tributarie e contributive di gennaio-giugno 2015 e Report delle entrate tributarie internazionali, 2015.8.17.

이탈리아

1. 예산 · 결산 등

- Pier Carlo Padoan 경제재정부 장관, 상하원 합동 예산위원회와의 청문회에서 예산절차 개혁 과정에 관해 언급³²⁾ (2015.8.5.)
 - 예산법안의 개혁은 재정건전화 조치를 강화하고 정책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지출 점검(spending review)이 예산절차에 포함 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

2. 기타

- 이탈리아 정부, 초고속 인터넷 사업에 120억유로 투입 결정³⁴⁾ (2015.8.6.)
 - 이탈리아 경제기획위원회(CIPE) 회의에서 디지털 기반 확충을 위해 2020년까지 전국을 초고속 인터넷(Ultra Wide Band)으로 연결하는 사업에 20년간 총 120억유로를 투입하기로 결정

32) 이탈리아 경제재정부, http://www.mef.gov.it/inevidenza/article_0153.html

33) 이탈리아 재무부, Ministe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 Rapporto sulle entrate tributarie e contributive di gennaio-giugno 2015 e Report delle entrate tributarie internazionali, http://www.mef.gov.it/ufficio-stampa/comunicati/2015/comunicato_0170.html

34) 이탈리아 정부, http://www.governo.it/Notizie/Palazzo_Chigi/dettaglio.asp?d=79104



- 이탈리아 통계청, 2015년 2분기 실질 GDP 잠정치 발표³⁵⁾ (2015.8.14.)
 - 2015년 2분기 실질GDP 잠정치는 직전 분기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0.5% 상승
 - 농업 부문이 하락세를 보였으나 서비스 부문의 상승세가 경제성장을 견인

〈표 7〉 이탈리아 분기별 실질GDP

(단위: 백만유로, %)

	GDP(2010년기준)	직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13- I	385,900	-0.9	-2.5
2013- II	385,625	-0.1	-2.0
2013-III	385,991	0.1	-1.4
2013-IV	385,875	0.0	-0.9
2014- I	385,151	-0.2	-0.2
2014- II	384,371	-0.2	-0.3
2014-III	384,119	-0.1	-0.5
2014-IV	384,223	0.0	-0.4
2015- I	385,388	0.3	0.1
2015- II	386,102	0.2	0.5

주: seasonally and calendar adjusted, chain-linked volumes with reference year 2010

출처: 이탈리아 통계청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인 연구원)

- FY2014 신규 발생 잉여금은 2조 2,586억엔이며, 신규 발생 잉여금에서 특정재원 수익의 증가분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1조 5,808억엔 규모

〈표 8〉 FY2014 일반회계 결산개요 내역

(단위: 억엔)

구분	금액	참고
1. 세입결산총액(수납된세입액)	1,046,791	
2. 세출결산총액(지출된세출액)	988,134	
3. 재정법 제41조 1의 잉여금	58,656	(1-2)
4. 2013년도까지 발생한 잉여금의 사용잔액	21	
5. 이월예산재원	36,048	
6. 신규발생잉여금	22,586	(3-4-5)
일반분	22,135	
세입의 증감	8,017	
세출의 불용	14,118	
동일본대지진부흥분	450	
세입의 증감(2011년도 1·2차 추경분)	37	
세입의 증감(2011년도 3차 추경분, 2014년도 추경분)	412	
세출의 불용(2011년도 3차 추경분, 2014년도 추경분)	0	
7. 2015년도 이월세출예산 재원 순잉여금 계상 공제금액	6,777	
8. 재정법 6조의 순 잉여금(2011년도 3차추경분, 2014년도 추경분 412억엔포함)	15,808	(6-7)

주: 재정법 6조 순잉여금(2011년도 1, 2차 추경분)에 따른 잉여금 37억 원을 포함

출처: 재무성, 「平成26年度一般会計決算概要」, 2015.7.31.

● 일본

1. 예산·결산 등

- 2014년도 결산 발표(2015.7.31.)³⁶⁾
 - FY2014 결산 일반회계 세입결산총액은 104조 6,791억엔, 세출결산총액은 98조 8,134억엔 규모

35) 이탈리아 통계청, Stima preliminare del Pil, <http://www.istat.it/it/archivio/166848>

36) 재무성, 「平成26年度一般会計決算概要」, 2015.7.31.

〈표 9〉 FY2014 일반회계 결산개요(잉여금)

(단위: 억엔, 단위 미만 버림)

예산(추경 후)				결산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전년도 이월액	48,298	전년도잉여금 (이월자원포함)	58,360	내년도 이월액	36,048
						FY2013까지 발생한 잉여금 사용 잔액	
							21
						신규발생 잉여금	
						세출불용	14,118
						세입증감	8,467
전년도잉여금	20,406	세출예산액	990,003			지출세출액	988,134
		<주요내역>				<주요내역>	
		■ 사회보장관계비				■ 사회보장관계비	
			305,356				301,709
		■ 문교 및 과학진흥비				■ 문교 및 과학진흥비	
			56,417				58,659
공채금수입	404,929	■ 국채비		공채금수입	384,928	■ 국채비	
건설공채	65,770			건설공채	65,769		221,856
특례공채	339,159	■ 지방교부세교부금등	225,096	특례공채	319,158	■ 지방교부세교부금등	
세외수입	47,407			세외수입	63,794		170,962
			170,962			■ 방위관계비	
세수	517,260	■ 방위관계비		세수	539,707		50,628
			50,885			■ 공공사업관계비	
<주요내역>		■ 공공사업관계비		<주요내역>			73,208
■ 소득세	158,170		64,057	■ 소득세	167,902		
■ 소비세	153,390	■ 기타		■ 소비세	160,289	■ 기타	
■ 법인세	105,130		117,226	■ 법인세	110,316		111,109
세입예산액	990,003	세출예산액	990,003	세입결산총액	1,049,789	세출결산총액	988,134
		세출예산현재액 (전년도 이월액 포함)	1,038,301	수납된 세입액	1,046,791	재정법 41조에 따른 잉여금 합산시	1,046,791

출처: 재무성, 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account/fy2014/kessan_26_00.pdf



2. 기타

■ 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의, 「2015 경제·재정 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 발표(2015.6.30.)³⁷⁾

- (주요내용) 2020년 기초재정수지 흑자실현을 위해 2018년 중간목표(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1% 유지)를 설정하고 세출을 삭감
- (세출개혁) 일반세출³⁸⁾의 실질증가분을 3년간 1.6조엔 정도로 제한, 사회보장관계비의 증가분을 3년간 1.5조엔(고령화로 인한 증가를 감안)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 (의료·개호) 공적보험 혜택 범위의 재검토, 약가 단가 조사에 근거해 서비스 단가 억제, 나이 및 취업 등에 따른 부담능력에 따른 급여부담의 적정화, 후발 의약품 사용 촉진을 포함한 대처
 - (생활보호) 생활보호대상자 탈피를 위한 자립 지원 적극 실시
 - (연금) 지급개시 연령의 추가인상 검토, 단기간 노동자에 대한 피용자보험 적용확대
 - ※ (2015년 10월) 연금개혁 시행, 근로자연금 일원화, 국민연금 납부기한 연장 (60세 → 65세)검토
 - (양육지원) 서비스 내실화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주 부담의 확대, 2015년부터 5년간 '저출산 대책 집중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결혼지원, 육

아세대 포괄지원센터의 정비

☞ (세입개혁) 과세기반 확대 등에 따른 세수확대의 실현과 인프라의 정비, 세외수입 확보를 꾸준히 추진

■ 2015년 2분기 GDP 1차 속보치 발표(2015.8.17.)³⁹⁾

- 2015년 2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Delta 0.4\%$ (연율환산 $\Delta 1.6\%$), 명목GDP 성장률은 0.0% (연율환산 0.1%)로 2014년 3분기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
 - 엔저 심화로 식료품 등 가격인상이 지속, 계절성 요인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민간소비(-0.8%)가 4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중국 경기 부진 등 여파로 수출(-4.4%)이 부진한 것이 주요인⁴⁰⁾
 - 실질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재고투자(0.1%)가 증가한 데 비해 내수(-0.1%)와 순수출(-0.3%)은 감소

37) 내각부, 「經濟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 2015 について」

<http://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cabinet-index.html>

기본방침 보고서는 ① 현재 일본경제의 과제와 기본방향, ② 경제의 선순환 확대 및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 ③ 경제·재정 일체개혁, ④ 2016년 예산편성을 위한 기본적인 입장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

38) 일반세출=일반회계세출-부채비용-지방교부세·교부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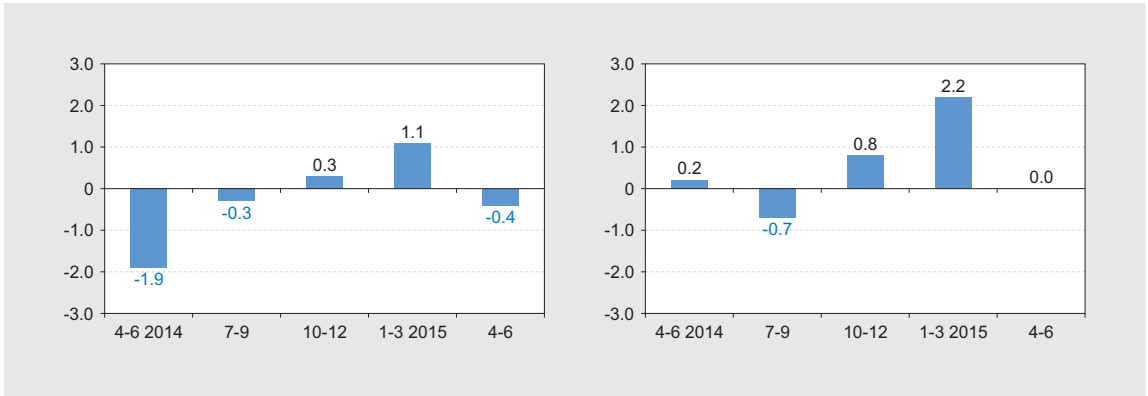
39) 내각부, 「2015(平成27)年4~6月期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2015.8.17.

http://www.esri.cao.go.jp/en/sna/data/sokuhou/files/2015/qe152/pdf/main_1e.pdf

40)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일본의 2015년 2분기 GDP 성장률, 2015.8.17.

[그림 1] 실질GDP 성장률(좌), 명목GDP 성장률(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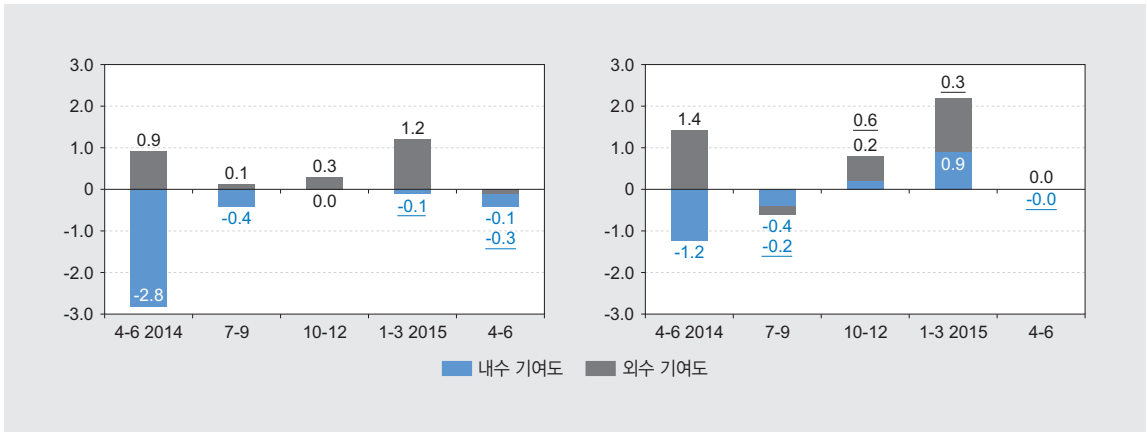
(단위: %)



출처: 내각부, 「2015(平成27)年4~6月期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2015.8.17.

[그림 2] 실질GDP 기여도(좌), 명목GDP 기여도(우)

(단위: %)



출처: 내각부, 「2015(平成27)年4~6月期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2015.8.17.



〈표 10〉 2015년 2분기 실질GDP 성장률 속보치(계절조정)

(단위: 전기 대비 %)

	2014년			2015년			2015년
	4~6월	7~9월	10~12월	1~3월	4~6월	성장기여도	4~6 연율환산
국내총생산(GDP)	-1.9	-0.3	0.3	1.1	-0.4	-	-1.6
국내수요	-2.7	-0.4	0.0	1.1	-0.1	-	-0.5
민간수요	-3.6	-0.8	-0.0	1.5	-0.4	(-0.3)	-1.7
민간소비	-5.0	0.3	0.3	0.3	-0.8	(-0.4)	-3.0
주택투자	-10.9	-6.3	-0.6	1.7	1.9	(0.1)	8.0
설비투자	-4.6	-0.0	0.2	2.8	-0.1	(-0.0)	-0.3
민간재고증감 ¹⁾	(1.2)	(-0.6)	(-0.2)	(0.5)	-	(0.1)	-
공적수요	0.1	0.6	0.3	0.0	0.8	(0.2)	3.1
정부소비	0.1	0.3	0.3	0.3	0.4	(0.1)	1.7
공적투자	0.2	1.7	0.3	-1.2	2.6	(0.1)	10.7
공적재고증감	(0.0)	(0.0)	(-0.0)	(0.0)	-	(-0.0)	-
재화·서비스 순수출 ²⁾	(0.9)	(0.1)	(0.3)	(-0.1)	-	(-0.3)	-
수출	0.6	1.8	2.8	1.6	-4.4	(-0.8)	-16.5
수입	-3.9	0.9	0.9	1.8	-2.6	(0.5)	-9.8

주: 1) () 안은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2) 재화서비스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

출처: 내각부, 「2015(平成27)年4~6月期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2015.8.17.

■ 내각부, 「중장기 경제 재정전망」 발표(2015.7.22.)⁴¹⁾

• (경제)

- (경제재생 가정) 일본 경제재생을 위한 대담한 금융정책, 구조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유발하는 성장전략인 세 개의 화살 효과가 지속적으로 실현 가정

☞ 중장기 실질 경제성장률은 2% 이상, 명목 성장률은 3% 이상, 소비자물가상승률(소비세율 인상 영향 제외)은 중기적으로 2%에

근접한 안정적인 추이를 나타낼 전망

- (기준선 전망)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장기간 추이 시, 경제성장률은 실질GDP 대비 1% 미만, 명목GDP 대비 1% 중반으로 전망

• (재정) 2020년 GDP 대비 국가·지방 기초재정수지는 Δ1.0%로 2023년 Δ0.2%까지 도달, GDP 대비 부채잔고(부흥채 제외)는 약 184.2%로, 2023년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가정) 2017년 이후 고령화 요인 등에 의한 사회보장지출 증가, 사회보장 외 일반세출이 물

41)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15.7.22.

<http://www5.cao.go.jp/keizai3/econome/h27chuuchouki7.pdf>

가상승률 수준으로 증가, ‘부흥재원확보법’⁴²⁾ 등을 바탕으로 한 복구·부흥대책 실시 및 부흥특별세 실시, 부흥채 발행을 가정
 - 2015년도 GDP 대비 국가·지방 기초재정수지 (복구·부흥대책 경비 및 재원 금액 제외 배이

스)는 △3.0%로, 재정적자 반감목표 (2010년 수준의 절반, GDP 대비 △3.3%)를 달성할 전망

〈표 11〉 중장기 경제 재정전망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 재생 가정	실질GDP 성장률	△0.9	1.5	1.7	0.6	2.6	2.1	2.2	2.3	2.3	2.4
	명목GDP 성장률	1.6	2.9	2.9	2.7	3.9	3.5	3.6	3.7	3.7	3.7
	소비자물가상승률	2.9	0.6	1.6	3.1	2.0	2.0	2.0	2.0	2.0	2.0
	완전실업률 ¹⁾	3.5	3.3	3.2	3.3	3.2	3.2	3.2	3.2	3.2	3.3
	기초재정수지 (명목GDP 대비)	△4.4	△3.0	△2.5	△2.3	△1.7	△1.4	△1.0	△0.6	△0.4	△0.2
	부채잔고 (명목GDP 대비)	195.6	195.1	193.7	192.7	189.1	186.6	184.2	181.8	179.8	178.1
기준선 전망 가정	실질GDP 성장률	△0.9	1.5	1.7	0.1	1.5	0.8	0.8	0.8	0.8	0.8
	명목GDP 성장률	1.6	2.9	2.9	1.5	2.0	1.3	1.3	1.3	1.3	1.3
	소비자물가상승률	2.9	0.6	1.6	2.5	1.2	1.2	1.2	1.2	1.2	1.2
	완전실업률 ¹⁾	3.5	3.3	3.2	3.3	3.3	3.3	3.2	3.3	3.3	3.3
	기초재정수지 (명목GDP 대비)	△4.4	△3.0	△2.5	△2.5	△2.1	△2.2	△2.2	△2.2	△2.3	△2.4
	부채잔고 (명목GDP 대비)	195.6	195.1	193.7	195.0	195.2	196.9	198.8	201.0	203.6	206.6

주: 1) 완전실업자는 직업이 없으나 직업이 생기면 바로 취업가능하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완전실업률은 노동력인구(취업자와 완전실업자의 합계)에서 완전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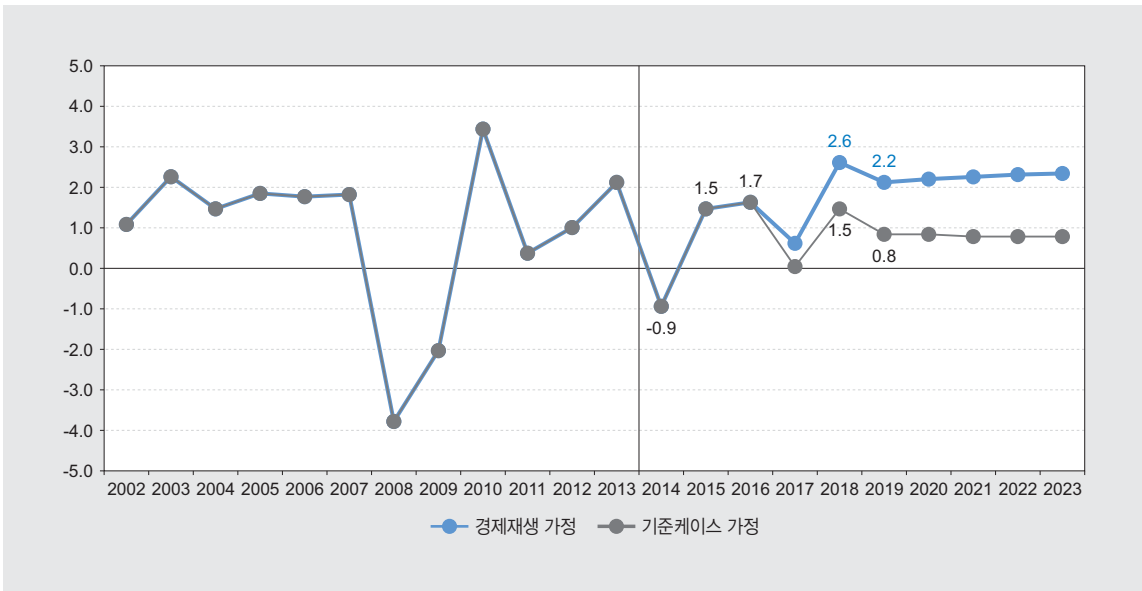
출처: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平成27年7月22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2015.7.22.

42)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년 12월 2일 공포·시행)



[그림 3] 실질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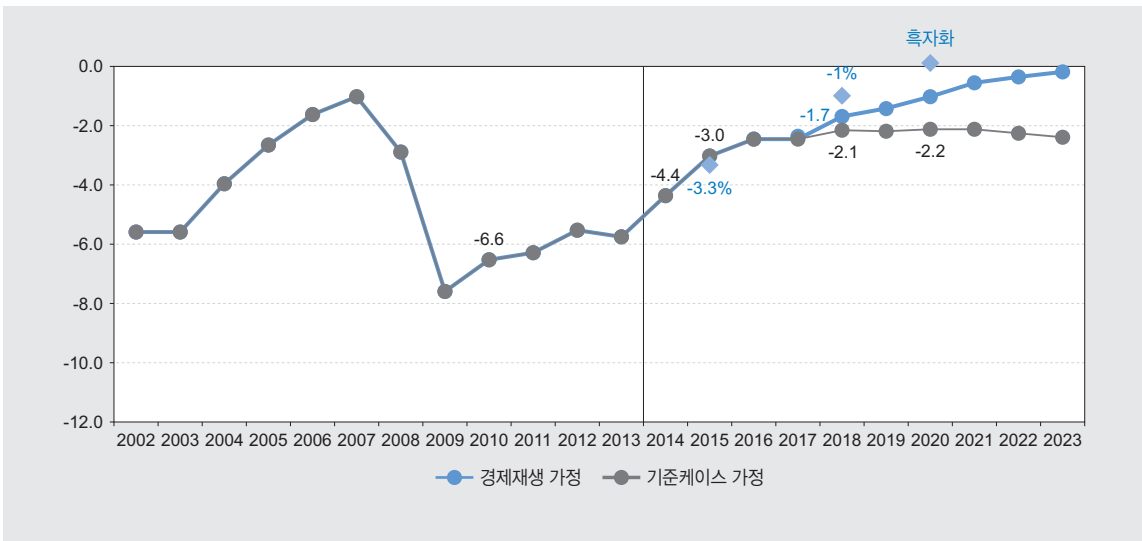
(단위: %)



출처: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關する試算(平成27年 7月22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2015.7.22.

[그림 4] 국가·지방 기초재정수지(GDP 대비)

(단위: %)



출처: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關する試算(平成27年 7月22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2015.7.22.

■ 내각부, 「FY2015 연차경제재정보고」 발표(2015.8.14.)⁴³⁾

- 일본 경제·재정을 둘러싼 과제에 대해 현황을 파악 및 논점을 정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일본경제 관련 제언을 정리
 - (경기동향과 선순환) 2013년 봄 이후 소비자물가가 완만하게 상승하여 디플레이션 탈출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명목GDP 성장률은 1994년 이후 2015년 1분기 최대로 증가
 - ☞ 향후 일본 경제는 임금인상에 따른 개인소비 회복, 저유가 등에 따라 선순환이 지속될 것
 - (성장력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경제성장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생산가능인구의 부족이 경제성장애 제약이 될 것으로 우려
 - ☞ 디플레이션 탈피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한 과제로 여성이나 고령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근무형태를 확장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필요
 - (혁신 시스템과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과제)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개별 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 생산성 증가가 높은 분야에 자원 배분을 촉진

(자료 수집 및 정리: 최경진 연구원)

스페인

1. 예산·결산 등

- 내각, 경제회복 강화·일자리 창출 및 복지확충에 중점을 둔 2016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2015.07.31.)⁴⁴⁾
 - (경제전망) 국내수요 회복에 힘입어 2014년 경제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지표들이 낙관적이며 2016년 3.0%, 2018년 2.9%로 상승세가 유지될 전망

〈표 12〉 2016년 예산안 거시경제전망

(단위: % 변화)

	2014	2015	2016	2017	2018
실질GDP	1.4	3.3	3.0	2.9	2.9
민간소비지출	2.4	3.4	3.0	2.7	2.5
정부소비지출	0.1	0.1	0.3	1.0	1.5
총고정자본형성	3.4	6.4	5.6	5.6	5.5
총수출	4.2	5.5	6.0	5.8	5.7
총수입	7.6	6.0	6.4	6.3	6.2
고용	1.2	3.0	3.0	2.9	2.9
실업률(%)	24.4	22.0	19.7	17.6	15.5

출처: 스페인, Presupuestos Generales del Estado 2016

- (재정전망)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 적자는 2016년 2.8%에서 2018년 0.3%로 꾸준히 개선될 전망이며 2016년에 일반정부 기초재정수지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할 전망

43) 내각부, 「平成27年度 年次經濟財政報告—四半世紀ぶりの成果と再生する日本經濟」, http://www5.cao.go.jp/j-j/wp/wp-je15/index_pdf.html 보고서는 제1장 경기동향과 선순환의 진전, 제2장 성장력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의 과제, 제3장 혁신시스템 및 생산성 향상을 구상

44) 출처: 재무부, http://www.minhap.gob.es/en-GB/Prensa/En%20Portada/2015/Paginas/20150804_PRESENTACION_PGE2016.aspx; 총리실, <http://www.lamoncloa.gob.es/consejodeminstros/referencias/Paginas/2015/refc20150731.aspx>



〈표 13〉 2016년 예산안 재정수지 및 공공채무 목표

(단위: GDP 대비 %)

	2014	2015	2016	2017	2018
중앙정부	-3.5	-2.9	-2.2	-1.1	-0.2
자치지역	-1.7	-0.7	-0.3	-0.1	0.0
지방정부	0.5	0.0	0.0	0.0	0.0
사회보장	-1.1	-0.6	-0.3	-0.2	-0.1
일반정부 재정수지	-5.7	-4.2	-2.8	-1.4	-0.3
일반정부 기초재정수지	-2.4	-1.1	0.1	-	-
일반정부 구조적 기초재정수지	2.4	2.2	2.2	-	-
공공채무	97.7	98.7	98.2	-	-

출처: 스페인, Presupuestos Generales del Estado 2016

- (세입) 세입은 2015년보다 4% 증가한 1,935.2만 유로이며 자치지역 및 지방정부 이전을 제외한 비금융수입은 2015년보다 0.8% 증가한 1,347.7만 유로로 추계
- (비금융지출) 2016년 비금융지출 한도는 1,233.9억 유로이며 중앙정부의 비금융지출 한도는 2015년보다 2.6% 증가한 404.76억유로
- (예산기조) 경제회복에 따른 세수 증대와 실업급여 및 공공채무 부담 감소로 증가한 예산은 사회서비스 강화에 중점적으로 지출
 - 2016년 사회부문 지출이 2015년보다 3.8%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53.5%가 배정됨
 -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적극적 고용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이 10% 가까이 증가해 52.15억유로로 책정
 - 교육부문 예산은 전년보다 9.3% 증가한 24.84억유로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모든 학생에

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

- 보건·복지 예산은 전년보다 5.3% 증가한 20.22억유로가 배정됨
- 금융위기 이후 동결되었던 공공부문 근로자의 급여가 1% 인상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장준희 연구원〉



영국

1. 예산·결산 등

- 영국 통계청, 2015년 2분기 공공부문⁴⁵⁾ 재정 현황 발표(2015.7.21.)⁴⁶⁾
 - 공공부문 순차입은 2010년 3월 이후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5년 2분기 차입규모는 251억 파운드(GDP 대비 1.4%)이고, 전년 동기 대비 61억파운드 감소
 - 공공부문 순채무는 1조 5,134억파운드(GDP 대비 81.5%)이고 전년 대비 774억파운드 증가
 - 일반정부 순차입은 FY2014-15(2014년 4월~2015년 3월) 동안 929억파운드(GDP 대비 5.1%)이고, 2015년 6월 말 일반정부 순채무는 1조 6,378억파운드(GDP 대비 88.2%)를 기록

45) 공공부문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영국은행, 기타 공기업들을 포함한 범위

46) 출처: 통계청, <http://www.ons.gov.uk/ons/rel/psa/public-sector-finances/june-2015/stb-june-2015.html>

〈표 14〉 공공부문 재정(Public Sector Finance)

(단위: 십억파운드, %)

	2분기			6월		
	2015	2014	변화분	2015	2014	변화분
경상수지적자	21.8	27.8	-6.0	7.6	8.7	-1.1
순투자	3.3	3.5	-0.2	1.8	1.5	0.2
순차입 ²⁾	25.1	31.3	-6.1	9.4	10.2	-0.8
순채무	1,513.4	1,436.0	77.4	1,513.4	1,436.0	77.4
GDP 대비 순채무 비율	81.5	80.1	1.4	81.5	80.1	1.4

주: 1) not seasonally adjusted

2) 순차입은 경상수지적자와 순투자의 합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연구원〉

 미국

1. 기타

- 미 상·하원 합동조세위원회(JCT), 세제감면연장 법안(S.1946, Tax Relief Extension Act of 2015)에 대한 재정영향 보고서 발표(2015.8.4.)^{47) 48)}
 - 동 보고서는 2014년 12월 31일에 종료된 세제감면조항이 2015년 10월1일을 기점으로 한시적(2016.12.31까지) 연장 및 소급적용 회복(reinstate) 되었을 경우의 재정적 효과를 다루고 있음
 - (재정영향) 2015~2025년 동안 870억달러의 재정적자 증가가 전망됨
 - 동 기간 동안 거시효과를 제외하여 분석할 경우 970억달러의 재정적자가 전망되나, 거시효과 포함 시 100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

효과 전망

- 거시효과를 제외한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의 경우, 주거주지 처분 시 수입을 총소득에서 제외 및 주지방정부의 판매세 공제 등을 포함하여 2016~2025년 동안 176억달러 세입감소 전망
- 영업세(business tax)⁴⁹⁾ 에너지세(energy tax)의 경우, 2016~2025년 동안 각각 626억 달러, 166억달러의 세입감소 전망⁵⁰⁾
 - * 영업세의 면제연장조항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구개발 세액환급제도 연장의 경우, 2016~2025년동안 총 226억달러 세입감소 전망

47) <https://www.jct.gov/publications.html?func=startdown&id=4807>

48) <https://www.cbo.gov/publication/50704>

49) IRS에 의하면, business taxes를 크게 5가지로 구분: 1) income tax, 2) self-employment tax, 3) employment taxes, 4) excise tax, 5) estimated tax (출처: <http://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Business-Taxes>)

50) 거시효과(macroeconomic feedback) 제외된 경우



〈표 15〉 세금감면연장법안의 세입 및 의무지출 재정영향

(단위: 십억달러)

구분	'16	'17	'18	'19	'20	'25	'15~'20	'15~'25
①거시반응을 제외한 재정효과									
지출효과	*	*	0	0	0	0	*	*
세입효과	-153	-17	34	21	14	-2	-100	-97
재정적자효과	154	17	-34	-21	-14	2	101	97
②거시반응을 포함한 재정효과									
지출효과	2	1	1	1	1	*	6	7
세입효과	2	2	2	2	2	1	10	17
재정적자효과	*	-1	-1	-1	-1	-1	-4	-10
①과 ②를 결합한 순 재정효과									
지출효과	2	1	1	1	1	*	6	7
세입효과	-152	-14	37	23	16	-1	-91	-79
재정적자효과	154	16	-36	-22	-15	1	97	87

주: 1. * = between zero and -\$0.5billion, 재정적자효과: 양의 수는 적자 증가, 음의 수는 재정감축을 의미, 각 년도는 회계연도(FY) 기준으로 작성
출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 the Joint Committee on Taxation

- CBO, FY2016 대통령 예산안 거시효과 분석 보고서 발표(2015.8.21.)⁵¹⁾
 - (재정) 2016~2025년 동안 대통령 예산안의 총 누적재정적자는 6조달러로 CBO의 수정 기준선전망(7.4조달러)보다 1.4조달러 낮은 수치로 전망
 - * 수정 기준선전망보다 낮아진 FY2016 대통령 예산안상의 재정적자는 저축, 투자 및 장기 생산성의 증가를 야기하여 세입증가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
 - 동 기간 동안 세입과 세출은 기준선 전망보다 각각 1.9조달러, 0.4조 달러 높음
 - (경제) FY2016 대통령 예산안상의 정책에 의한 경제효과는 크게 5가지로 구분
 - 이민개혁으로 인해 미국인구의 증가가 노동력의 증가로 이어져 요소생산성 신장

- * 동 개혁이 적용될 시, 2025년까지 1천1백만명의 거주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근로소득의 한계세율 증가로 인한 근로의욕 감소
 - * 근로소득에 대한 한계실효세율은2016~2025년까지 매년 0.3%p~0.5%p 인상 전망
-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자본소득(capital income)의 평균 한계세율 인상은 저축 의욕을 감소
- 세입확대를 통한 연방재정적자 감축 정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총수요가 감소하나, 장기적으로는 정부저축(public saving)을 증대시켜 총저축(national saving)을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 → 투자(private investment)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

51) <https://www.cbo.gov/publication/50734>

- 연방정부 투자 확대: 교육, 노면교통정리(surface transportation), 직업훈련 등의 투자규모 증가 및 기업의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표 16〉 대통령 예산안의 재정영향

(단위: 십억달러, %)

구분	'16	'17	'18	'19	'20	'25	'16~'20	'16~'25
① : Effects With Some Macroeconomic Feedback ¹⁾									
지출효과	22	76	110	79	59	-31	346	380
세입효과	108	141	176	189	195	229	809	1,780
재정적자효과	86	65	66	110	136	260	462	1,400
② : Effects of Additional Macroeconomic Feedback ²⁾									
지출효과	*	1	1	1	1	46	21	171
세입효과	-6	-7	-11	-9	1	58	10	17
재정적자효과	-6	-8	-14	-15	-10	12	-53	-36
③ : ①과 ②를 결합한 순 거시효과									
지출효과	22	77	114	86	69	15	367	551
세입효과	102	134	165	180	196	287	777	1,915
재정적자효과	81	57	52	94	126	272	410	1,364
Memorandum: 대통령 예산안상의 모든 Macroeconomic Feedback을 포함한 재정적자 전망치									
재정수지	-392	-422	-454	-525	-581	-783	-2,374	-6,012
GDP대비	-2.1	-2.1	-2.2	-2.5	-2.6	-2.9	-2.3	-2.9

주: 1. * = between zero and -\$0.5billion, 재정적자효과: 양의 수는 적자 증가, 음의 수는 재정 감축을 의미, 각 년도는 회계연도(FY) 기준으로 작성

1) 이민개혁안을 중심으로 한 feedback effects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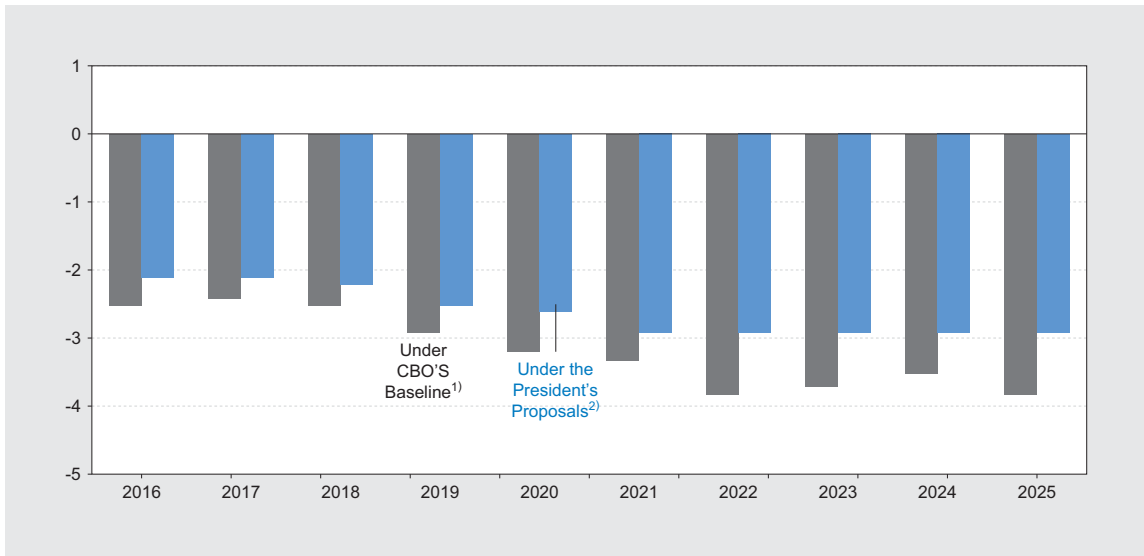
2) ①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feedback effects 포함

출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



[그림 5] 대통령 예산안과 CBO Baseline의 재정적자 전망치 비교

(단위: Percentage of Gross Domestic product)



주: 1) These projections have been adjusted from CBO'S March 2015 Baseline for the subsequent enactment of Medicare Access and CHIP Reauthorization ACT of 2015

2) These projections include all macroeconomic feedback that would result from the President's proposal.

출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윤모 연구원〉

정책흐름



- G20 정상회의 재무트랙(경제분야) 주요성과
- 농식품부, 내년 봄 가뭄대책 예산 1,450억원 추가 편성
-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환원 추진
- 연말정산, '정부3.0'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준다

G20 정상회의 재무트랙(경제분야) 주요성과

* 본 자료는 2015년 11월 1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G20 정상회의 재무트랙(경제분야) 주요성과」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1. G20 성장전략 이행평가 결과: 우리, G20 회원국 중 2위

- 금년 G20은 세계경제 저성장 극복을 위해 '18년까지 G20 GDP를 2%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2014년 브리즈번 정상회의에서 마련한 「종합적 성장전략」의 이행점검에 집중
 - 효과적 이행점검을 위해 IMF, OECD 등 국제기구는 회원국과 협의를 거쳐 성장효과가 큰 350여 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이행상황을 3단계(이행완료, 추진중, 부진)로 평가
- G20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자국 중점과제를 49% 이행 완료한 것으로 평가됨
 - * 【참고 1】 G20 성장전략 이행 평가 결과
 - 국제기구는 이를 통해 G20이 '18년까지 목표*(2%)의 3분의 1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음
 - * '14년 G20 정상회의에서 G20국가의 GDP를 향후 5년('14~'18년)간 現추세 대비 2.0% 이상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이행하기로 약속

☞ 대통령께서는 각국 성장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고, 4대 부문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성과를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1세션 선도발언)

- G20 정상들이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여, 정상선언문과안탈리아 액션플랜(정상선언문 핵심부속서)에 상당부분 반영

- ☞ 우리 성장전략에 대한 이행평가 결과가 G20 회원국 중 2위
- 규제개혁, 서비스경쟁력 제고 등 7개 분야 22개 중점과제에 대한 이행성적이 20개국 중 2위로 최상위 평가를 받음
 - 특히, 규제개혁, 투자활성화 등 분야 과제들의 이행(이행률 또는 이행의 질)에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음
- 이번 평가결과는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취약한 분야와 향후 추진방향을 점검하는 계기
 -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 일부 과제의 경우, 관련법 개정 지연 등을 이유로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았음

- 향후 「행정규제기본법」과 같이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등 이행노력을 지속할 필요
- 국제사회에 제시한 정책들에 대한 이행을 완료함으로써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고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필요
- 한편, 작년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한 우리 성장전략에 대한 성장효과 평가에서도 우리는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 작년과 올해 구조개혁의 성장효과와 이행성과 모두 최상위권에 포함된 유일한 국가*로서, ‘구조개혁의 글로벌 모범국가’로 인정받음
 - * 작년 상위 3개국 중 나머지 2개국은 모두 10위권 밖

2. G20 투자전략 수립

- G20은 세계 저성장 극복을 위해 G20 차원의 투자 전략을 마련
 - 회원국들은 투자환경 개선, 인프라 투자 확대,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을 중심으로 각국별 투자 활성화 정책을 금번 정상회의에 제출
 - 우리나라는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민관공동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활성화, 기술금융 확대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출
- OECD는 G20 투자전략이 완전히 이행된다면, G20의 GDP 대비 투자비율이 1%p 증가할 것으로 분석(25,4%(14년) → 26,4%(18년))

- ☞ 대통령께서는 G20 투자전략 마련에 더해 개발 잠재력이 큰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에 대한 국가 간 공동투자 제안
 -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 미국, 러시아 등이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전략*들을 연계하고,

* 중국의 일대일로, 미국의 뉴실크로드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신통방정책 등

-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수요*가 큰 점을 감안할 때, 북핵 포기를 전제로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하여 ADB나 AIIB와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소개

* 아시아 개발은행 연구소(ADB)에 따르면, 동북아의 '20년까지 인프라 투자 수요는 매년 약 630억달러로 예측

3.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비 공조 합의

- 선진국 통화정책 다변화와 신흥국 성장 둔화 리스크 등으로 내년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 G20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MF 긴급지원 체계, 지역금융안정망 등 글로벌 금융안정망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 정상회의 선언문

“급격한 자본변동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비하여 우리는 글로벌 금융안정망 강화를 포함한 적절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금융안정을 도모할 것”

“견고하고 회복력이 강한 국제금융체제는 성장에 중요한 요인. 재무장관들에게 국제금융체제 강화 방안을 연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

- G20은 이에 따른 가시적인 후속조치로 내년 중국 의장국*에서 글로벌 금융안정망 등 금융안정 전

반을 논의하는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를 2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

*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11~'13년 3년간 운영

- 우리나라를 프랑스와 함께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 공동의장으로 선임

☞ 대통령께서는 선진국들의 서로 다른 통화정책, 신흥국 경기둔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유출 등을 지적하고,

- 자국 경제여건만을 고려한 선진국의 통화정책이 신흥국에 부정적 파급효과(spillover)를 미치고, 이것이 다시 선진국에게 악영향을 주는 역파급효과(spillback)를 야기할 수 있음을 강조
- 통화정책 정상화는 파급효과를 감안, 신중하고 완만하게 조정되어야 하며, 국제금융시장이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정화를 위한 G20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

■ 앞으로 정부는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으로서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성과물 도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

- 우선, 현재의 금융안전망이 위기를 예방하고 위기 발생 시 실제로 작동 가능한지 점검하고,
- 인접국간 위기예방 및 관리 체제인 지역금융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이고 IMF와 지역금융안전망간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
- 그리고 급격한 자본이동에 대비하여 ‘거시건전성조치’에 대한 논의도 발전시켜 나갈 예정

4. 글로벌 조세회피 대응방안 마련

■ G20은 다국적기업 등의 조세회피에 대응하여 국제조세제도를 개혁하는 BEPS* 대응방안을 최종 승인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다국적기업 등이 국가간 세법차이 등을 이용하여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

- 그간 전세계적으로 각국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을 악용하는 역외 조세회피가 크게 증가
 - 국가 간 조세특혜 경쟁 심화와 국가 재정 부실 등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를 야기하는 조세회피는 국제공조를 통한 공동 대처로만 해결 가능한 문제

* OECD는 BEPS로 인한 세수 손실액이 매년 1,000억 ~2,400억달러(전세계 법인세수의 약 4~1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이에 G20과 OECD는 BEPS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였고, 각국은 국내 세법 및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할 계획

*【참고 5】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 승인에 따른 후속 조치

*【참고 6】 BEPS 과제별 대응조치

☞ 대통령께서는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BEPS)에 대응한 조세제도 개혁을 지지

- 또한, 개도국이 BEPS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G20 차원의 지원 강화를 제안

■ 금번 합의는 G20이 글로벌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국제조세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 다국적기업 등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법인세

누수*를 줄일 수 있어, 전세계적으로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공정한 국제조세 시스템 마련 계기도 될 전망이다

* OECD는 BEPS로 인한 글로벌 법인세 손실액을 매년 전 세계 법인세수의 4~10%(1,000억~2,400억달러)로 추정

- 향후 정부는 국정과제인 '조세정의 확립'과 맥을 같이하는 국제조세 개혁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각국의 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할 계획
 - 국내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 국내 기업이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BEPS 이행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지원과 교육·홍보를 추진할 계획

5. 기후변화 대응(파리 당사국총회 성공 지지 등)

- 이번 G20 정상회의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30~, 파리)를 2주 앞두고 개최되어,
 - 파리 당사국총회 및 신기후체제 합의의 중요성을 G20 차원에서 확인하고, 모든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
- G20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 클린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분야 발전노력이 기후변화 대응에 크게 기여한다는 데 공감

☞ 대통령께서는 COP 21의 성공은 G20이 다른 도전에도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

-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의견 차이로 합의가 지연되자 선진국에는 기후변화 대응은 新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라는 인식의 전환을, 개도국에는 GCF를 통한 충분한 지원을 강조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설득
- 또한, 우리나라가 에너지 신산업화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GCF(Green Climate Fund)와 협력하여 개도국과 공유하고 있음을 소개
 - 그 사례로, 우리나라의 가사도·가파도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를 포함한 페루 아마존지역 습지보전사업이 GCF의 첫 번째 승인사업에 포함되어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임을 설명

- 한국은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유치한 GCF가 기후변화 대응에 중추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에너지신산업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예정

6. 여타 의제: 對테러 대응 등

- G20은 별도 성명서를 통해 최근 파리(11월) 및 앙카라(10월)에서 발생한 테러행위를 인류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단결 의지를 표명
- 또한, 테러 자금과 관련한 정보 교환, 테러자산의 동결 등을 통해 테러 자금 경로 차단에 계속 전념

할 것을 약속하며,

-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테러자금 차단 및 선별적 금융제재 강화를 위한 법적 체계를 포함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요청

참고 1 G20 성장전략 이행 평가 결과

① (개요) 작년 G20 정상회의에서 국가별 성장전략 제출* → 금년 정상회의에서 IMF와 OECD는 국가별 「성장전략」*이행상태를 평가하여 G20 정상에게 보고 (11.15일 제1세션)

* '14년 G20 정상회의에서 G20국가의 GDP를 향후 5년('14~'18년간) 現 추세 대비 2.0% 이상 높이기 위한 「종합적 성장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IMF·OECD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한 우리 성장전략의 GDP 제고 효과(4.4%)를 1위로 평가

- IMF·OECD는 국가별 성장전략 중 성장효과가 큰 중점과제 (국가별 4~10개 분야) 이행 상황을 '완료-추진중-미진' 3단계로 평가
 - 중점과제 외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국제기구와 각 회원국들이 상호평가(peer review) 실시

② (결과) 우리는 7개 분야 22개 중점과제 중 18개 이행완료, 4개 추진 중

- 중점과제 이행율이 G20 국가 중 2위(82%)로, G20 평균(49%)보다 33%p 높고, 부진한 과제도 전혀 없어 이행의 질도 우수
 - 중점과제 외 나머지 과제(한국 80여개) 이행 역시 상위 5개국에 포함

③ (의미)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행과 4대 부문 구조개혁의 노력을 국제사회로부터 높이 평가받았으나, 규제비용총량제* 등 일부 관련 법안의 국회 계류 등으로 인해 간발의 차이로 2위

*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 (과제내용)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해 손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규제의 폐지·완화를 유도함으로써 규제비용총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제도(Cost-In, Cost-Out)를 도입
- (필요조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규제시스템 개혁 등)
- (현황)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 국회 계류 중 ('14.8월 국회 제출)

- 작년 성장효과 평가 및 금년 이행평가 모두에서 상위권에 포함된 유일한 국가로서, '구조개혁의 글로벌 모범국가'로 인정

* 작년 상위 3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2개국은 금년 10위권 밖임

→ GDP 제고효과와 높은 이행률 감안 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구조개혁으로 가장 높은 GDP 제고 효과 달성 가능

* 다만, 구조개혁 이행으로 인한 성장효과는 당장 나타나기보다는 시차(time lag)를 두고 2018년까지 성장잠재력이 제고될 것임

- 이번 평가를 구조개혁 추진 취약분야와 향후 추진방향을 점검 하는 계기로 활용

* '추진 중' 평가받은 중점과제

- ① 규제비용총량제 도입(「행정규제기본법」개정 지연),
- ② PPP 활성화(「민투법」개정 지연),
- ③ 법률시장 개방(「외국인자문사법」개정 추진 중) 등

- (향후 대응방향)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우리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

농식품부, 내년 봄 가뭄대책 예산 1,450억원 추가 편성

— 충남 서부권 및 내년 봄 가뭄대책비로 중점 투자 —

* 본 자료는 2015년 11월 11일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공동으로 발표한 「농식품부, 내년 봄 가뭄대책 예산 1,450억원 추가 편성」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내년 봄 가뭄대책 예산 1,450억원 추가 편성

- '15년 예비비 423억원, '16년 추가 예산 증액 1,027억원

- '15년 「공주보-예당지」 및 「상주보-화달지」 도수로 공사(예비비 20억원, 공주보예당지(15), 상주보(5)), 저수지 추가건설(403억원) 지원

- '16년 「공주보-예당지」 도수로공사(400억원), 「상주보-화달지」 도수로 공사(327억원), 한발대비용수개발(300억원) 예산 증액 추진

◆ 국민안전처 특교세 259억원 별도 지원

- 가뭄지역 시군 가뭄대책비(관정개발, 노후상수도 보수 등)

- 11.11일(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내년 봄 가뭄대책 예산으로 1,450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 추가로 편성한 예산 1,450억원은 '15년 예비비 423억원과 '16년 가뭄대책 연계사업비 1,027억원이 포함된 내용이다.

- 이번 추가 예산은 가뭄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충남 서부권과 내년 봄 가뭄 극복을 위한 대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첫째, 가뭄이 심한 「공주보-예당지」와 「상주보-화달지」에 대한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공급 사업을 금년도에 착수하기로 하였음

- ① 「공주보-예당지」 간 도수로(31km) 공사(988억원)는, 현재 해당저수지 저수율이 평년 대비 35% 수준(현 저수율 24%, 평년 68%)으로 내년 봄에 심각한 농업용수 부족 우려가 있어 조기 추진하기로 하였음

- 올해 예비비 15억원을 지원하여 조사·설계에 착수하고, '16년 소요예산 400억원을 반영하고 도수로 공사를 추진하여 '16.6월에는 154ha에 대한 부분급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 '17년에는 나머지 사업비 573억원을 지원하여 영농기전인 '17.6월까지의 해당지 전체 관개면적 7,887ha에 대하여 용수(218천㎥/일)를 공급함으로써 항구적인 가뭄해소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공주보-예당지」 도수로 공사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백제보-보령댐 도수로사업 사례와 같이 예타면제*

및 관련 인허가 사항 의제처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하였음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예타면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재난 인정)

공주보-예당지 농촌용수 공급계획



② 「상주보-화달지」 도수로(12km) 공사(332억원)는, 수리시설이 미흡하고 강수량 부족으로 현재 저수율이 평년 대비 47%(현 저수율 37%, 평년 79%)로 내년 봄에 심각한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고 있어, 「공주보-예당지」와 함께 우선 추진하기로 하였음

- 올해 예비비 5억원을 지원하여 조사·설계에 착수하고, '16년에는 나머지 소요예산 327억원 전액을 지원하여 도수로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며, '16.6월까지 전제 수혜면적(798ha)에 대한 용수(172천 m³/일)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임

상주보-화달지(상주1지구) 농촌용수 공급계획



③ 정부는 항구적인 가뭄대책사업으로 계획인 「공주보-예당지」 및 「상주보-화달지」 도수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충남서부권(7,887ha) 및 경북 북부 상주지역(798ha) 등 가뭄상습지 8,685ha에 대한 용수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함

* 공주보-예당지: 총사업비 988억원('15:15, '16:400, '17 이후:573)

* 상주보-중덕·화달지: 총사업비 332억원('15:5, '16:327)

② 둘째, 농어촌공사관리 저수지 중 저수율 50% 미만 178개소(4,239천m³)에 대한 준설을 위해 예비비 403억원을 지원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임

- 금년 6월부터 현재까지 수리시설개보수,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 및 특별교부세(안전처)를 세차례에 걸쳐 443억원(국고 394, 지방비 49)을 지원하여 750개 저수지(4,495천 m³)*에 대한 준설을 하고 있음

* 저수지준설 750개 중 356개(2,054천 m^3) 완공(11.5일 기준)

- 이번 저수지준설까지 포함하면 8,734천 m^3 의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토사활용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됨

③ 셋째, 내년 봄 가뭄이 확산될 것에 대비하여 관정개발, 양수장 설치 등 긴급용수대책 추진을 위해 '16년도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를 정부안 12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300억원 증액하기로 하고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임

④ 한편, 국민안전처는 가뭄지역 시·군에 대해 관정개발, 저수지 양수, 노후 상수관로 보수 등 지자체 가뭄대책 지원을 위해 지자체 수요를 바탕으로 특별교부세 259억원을 별도 지원하기로 하였음

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대책으로 저수지준설을 통해 8,734천 m^3 의 저수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공주보-예당지」 및 「상주보-화달지」간 도수로 공사 등으로 약 1만ha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항구적인 가뭄대책이 될 것이라 밝혔음

-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기 지원된 가뭄대책사업은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하는 한편,
- 농업인들에게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하여 논과 수로에 물 가두기, 제한급수 등 물 절약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환원 추진

* 본 자료는 2015년 11월 3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에서 발표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환원 추진」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1. 주요 내용

- '15.8.27일 소비여건 개선 등을 위해 상향 조정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일부 품목에 대해 환원 추진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15.8.27일 전	'15.8.27일 이후
가방, 시계, 사진기, 용단, 보석·귀금속, 모피	1개당 200만원	1개당 500만원
가구	1조당 800만원/ 1개당 500만원	1조당 1,500만원/ 1개당 1,000만원

- 과세 기준가격 상향 조정 후 가격인하가 부진한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용단의 기준가격을 당초 200만원 등으로 하향 조정

* 보석·귀금속, 모피의 경우 가격 인하가 다수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제외

2. 추진 배경

- 기준가격 상향 조정 후 고가 가방, 시계 등의 판매 가격은 개별소비세 인하분만큼 인하되지 않았음
- 당초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상향 취지는 제품 가격 인하로 세부담 경감의 최종 혜택이 소비자에

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으나

-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환원함

3. 향후 계획

- 입법예고(11.6~16) 등을 거쳐 11월 중 개별소비세 법 시행령 개정 추진

연말정산, '정부3.0'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준다

* 본 자료는 2015년 11월 3일 국세청 정부3.0 지원단에서 발표한 「연말정산, '정부3.0'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준다」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아내와 맞벌이를 하는 근로자 박모 씨는 연말정산 때만 닥치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항목별로 찾아서 공제액을 계산하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제신고서와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일일이 출력해서 제출하는 것도 번거롭고 귀찮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세법도 매년 바뀌고 용어도 생소해 항상 헛갈린다. 혹여 신고서를 잘못 작성했는지 불안하기도 하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편리한 연말정산' 제도 시행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선택만 하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공제신고서를 채워주고 예상세액까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니 모든 절차가 금세 완료됐다.

박 씨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한 뒤,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연금저축 납입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공제 폭을 최대한 늘렸다. 지난 3년간의 공제내역을 공제한도와 함께 그래프로 보여주니 부족한 공제항목을 쉽게 찾아 공제를 충분히 챙길 수 있었다. 특히 자신과 아

내 중 누가 부모님을 포함시켜 공제받을 것인지에 따른 환급세액을 맞벌이부부 절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비교한 게 유용했다.

■ 정부3.0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와 국세청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3.0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에 대해 발표했다.

• 정부3.0 추진위원회는 그간 정부3.0 정신에 따라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일환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실시한다면서,

-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여 미리 알려주고 공제·한도액 등을 계산하여 신고서(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채워주며 출력물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크게 ①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②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③ 간편 제출 서비스로 구분된다.

1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절세에 유용한 시각 정보(공제한도 미달 여부 등)를 제공

- 매년 10월*에 당해연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 금년에는 서비스 도입 첫해로 자료 수집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11.4. 제공
 -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 현황과 비교한 표, 그래프 등 시각자료와 공제항목 별 절세 방법을 알려준다.
- 1월에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해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세액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 맞벌이 부부의 절세를 위하여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비교해 볼 수도 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4일부터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 공제신고서·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나 당초분 지급명세서를 이용하여 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자동 작성하는 서비스 제공

-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 작

성된다.

* 총 5종의 부속명세서 중 간소화자료가 없는 '월세액 공제 명세서'는 제외하고 4종(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 카드) 자동 작성

-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예 : 교복·안경 구입비, 기부금 등)는 스스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 작성 편의를 위해 근로자 기본 사항과 부양가족 명세는 전년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변경사항도 수정 가능하다.
-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하여 추가공제가 필요할 때 작성하는 경정청구서를 간편하게 자동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그동안 전체 항목을 수동으로 재작성해야 했지만, 기존에 신고한 내용 중 추가할 항목만 수정하여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게 된다.
 - 경정청구 이후 진행되는 상황은 홈택스 쪽지와 이메일로 안내된다.
- 공제신고서·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3 간편 제출 서비스 : 온라인 제출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포함) 및 증명서류를 원클릭으로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

-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 근로자를 제외하고, 그동안 서류로 된 공제신고서와 출력물 혹은 파일로 된 증명서류(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던 근로자들은 내년 부터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해 진다.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에 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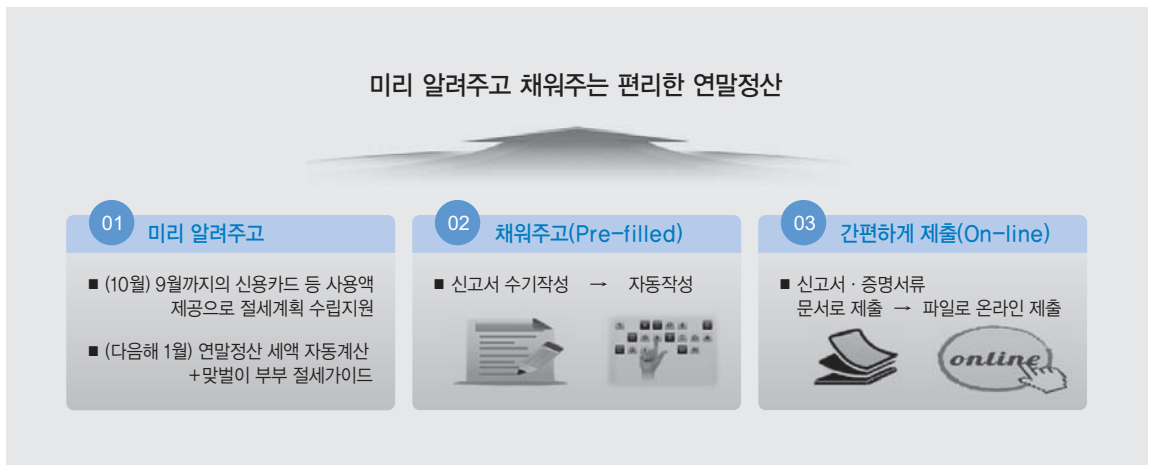
-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국민의 납세 편의

를 위해 제공하는 정부3.0 서비스로, 이 서비스를 통해 줄일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은 매년 2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라면서,

-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부3.0이 추구하는 서비스 정부를 내실 있게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편리한 연말정산 개요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여 ‘미리 알려주고’ 공제·한도액 등을 자동계산하여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며’ 출력물 없이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신고’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 ① 미리 알려주기(연말정산 미리보기)
 - ▶ 과거엔 간소화서비스 오픈(1월15일) 이후 공제사항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 ▷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도 중에 미리 조회할 수 있고,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활용하여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②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 ▶ 예전엔 간소화서비스의 공제내역을 일일이 공제신고서에 기입했으나,
 - ▷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간소화 자료를 선택하면 공제·한도액 등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손쉽게 공제신고서 작성 가능

③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 ▶ 당초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서 전체를 새로 작성했으나,
- ▷ 미리 채워진 경정청구서에 추가 공제받을 항목만 수정하여 제출

④ 간편제출

- ▶ 종전에는 공제신고서는 문서로 증명서류는 출력물 또는 파일로 제출했으나,
- ▷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과거 근로소득자 김○○씨	김○○씨는 연말정산을 하고 나니 난감해졌다. 월급의 절반만금이나 추가로 납부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미리 알았다면 대비를 했겠지만 이제야 알게 되니 답답했다. 바쁜 와중에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내역을 보고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작성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 연말정산 증명서류를 출력해서 인사과로 갖고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누락한 공제항목이 있으면 나중에 처음부터 경정청구서 서식 전체를 새로 작성해야하므로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걸어가며 꼼꼼히 살펴보았다.
---------------	--



정부3.0에서 근로소득자 김○○씨	김○○씨는 작년에 ①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200만원을 추가납부할 거라고 예상하였고 절세tip을 활용하여 11,12월에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연금저축 납입액을 늘려서 추가납부세액을 꽤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바쁜 시기인데 홈택스에서 ②공제내역과 한도액을 자동계산해주니 공제신고서 작성이 금방 끝났다. 증명서류도 출력물 없이 ④온라인으로 제출하니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누락한 공제항목이 있을지 걱정됐지만 나중에 ③경정청구서를 해당 부분만 수정하면 간단하게 자동 작성되는 걸 생각하니 마음의 부담이 덜했다.
--------------------	--

■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④ 간편제출

- ▶ 이전엔 수동으로 제출받은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여 연말정산하고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보관했으나,

- ▷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손쉽게 연말정산하고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의 편철·보관 불필요

과거 중소기업장 급여담당 이○○씨	중견 회사의 급여담당자 이○○씨는 직원들의 연말정산 때문에 매년 피곤하다. 직원들이 종이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보고 일일이 회사 연말정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일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입력하다보니 실수할까봐 다시 확인을 한다. 특히 입력도중 직원들이 제출한 공제신고서상의 오류가 발견되면 이를 확인하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	---



정부3.0에서 중소기업장 급여담당 이○○씨	이○○씨는 올해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쉽게 끝냈다. 온라인으로 제출된 공제신고서를 회사의 연말정산시스템에 업로드하여 클릭 몇 번으로 ④세액계산부터 지급명세서 작성까지 간편하게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마쳤다. 그리고 ④출력물 없이 온라인으로 서류를 받으니 귀찮은 편철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고 보관공간을 따로 확보할 필요가 없어서 간편하다.
-------------------------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요약

서비스 종류	현재	앞으로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신용카드 사용액 사전 제공	-	매년 10월 중순 제공
절세 계획 수립 지원	-	절세Tip, 유의사항, 3년간 추세 등(10월, 1월 제공)
연말정산 세액 계산	수동입력	간소화 자료 채워주기
맞벌이 부부 절세가이드	-	모의계산 기능 제공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종이없는 연말정산 사업장*만 자동작성 * 공무원, 일부대기업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자동작성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수동작성	지급명세서 채워주기 → 수정 →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간편제출 서비스		
공무원, 일부 대기업 근로자(종이없는 연말정산 사업장)	파일 다운로드(USB) → 회사프로그램에 업로드	현재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대리인 위임 근로자 ■ 자체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근로자 ■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이용 근로자 	간소화 자료 출력 → 회사 제출 또는 회사프로그램에 수동입력	온라인으로 회사 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조회, 출력, 다운로드	공제신고서 작성 및 세액 자동계산과 연동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공공부문 개혁, 공기업으로만 제한하지 않아야” 문체부 주최 ‘정책 소통 세미나’

공공부문 개혁을 공기업으로만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제3회 ‘정책 소통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제발표를 했다.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컨벤션홀에서 ‘공공부문 경영 혁신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다.

● 공공기관 혁신에도 예산 꾸준히 늘어

라 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시장 실패 탓으로 공공기관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공공재의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데다 준정부기관, 비영리단체,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고 전달하는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적 부담 확대와 공공기관의 책임성 문제로 인해 공공기관 개혁 문제는 공기업에만 한정할 수 없는 정책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정부가 소유권을 쥐 공기업뿐 아니라 지원 대상인 준정부기관이나 비영리단체의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무적 책무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게 됐다. 라 연구위원은 또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구조 조정과 조직 혁신을 피하지만 전체 숫자와 인력 규모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고 예산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 연구위원은 이어 공공기관 경영 효율 개념을 크

게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영평가지표에서 보는 업무 효율, 인적 자원·재무 예산·보수 및 성과·노사 관리에 그칠 게 아니라 사업 관리와 리더십 등도 넓은 의미에서 경영 효율성, 생산성 제고 요소로 보자는 얘기가. 풀어야 할 과제도 빼놓지 않았다. 공공기관들이 국민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혁신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공공기관 성과 측정의 어려움, 지나친 성과 경쟁으로 인한 협력 문화 저해 등의 부작용을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역량과 경험을 아우른 기관장·감사 선임과 책임경영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구조 개선도 강조했다.

세미나에선 하세정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이 ‘공공기관 기능 조정 추진 현황과 과제’를 발제하고 송상훈 경기연구원 박사와 광학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래기획부장, 임찬수 도로공사 기획부장 등이 경영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서울신문, 2015-11-18〉

[기고] 복지재정 늘리기 전에 새는 곳부터 찾아야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주요 복지제도를 도입해 제도상으로 선진국 수준의 틀을 마련했고, 복지지출 규모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려 가고 있다. 2012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규모가

각각 92조 6,000억원, 32조 9,000억원이었는데 2016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중앙정부 복지지출 규모만도 122조 9,000억원으로 최근 4년간 33%나 증가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복지제도 도입과 복지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복지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복지제도가 따로따로 도입되어 운영되다 보니 복지 수요의 일부분만 충족되기 때문이다. 또 유사·중복적인 복지사업이 남발되다 보니 일부 수혜 계층에만 복지 혜택이 집중되고 있고, 복지전달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해 복지지출 대비 효과성이 낮다는 측면도 있다. 특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복지사업을 신설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바람에 유사·중복·편중·누락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지역별 복지격차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은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년)'을 충실히 이행해 복지제도와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하겠지만, 이에 앞서 국민의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확보한 복지 재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복지지출의 내실화를 이뤄야 한다. 특히 인구고령화로 향후 복지지출의 증가가 불가피해 재원 조달을 위한 국민 부담의 증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선심성 제도, 유사·중복 급여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나 사업 신설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미 시행 중인 사업들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해 정비하는 작업은 반드시 선결돼야 할 정책 과제다.

유사·중복 복지사업의 유형을 보면 우선 중앙부처들이 각기 유사한 집단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도입하는 경우 특정 대상자 집단에 대해 복지 서비스나 혜택이 집중되거나 중복적으로 주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처별로 서로 다른 전달체계와 맞물려 복지사업의 비효율성이 더 커지기도 한다. 한편 지자체 복지사업에도 중앙정부와 유사·중복적인 사업이 상당수 존재한다.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자체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복지지출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도입하거나 지속하는 것보다는 그런 재원을 보다 시급한 복지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낫다. 또 이러한 노력은 복지제도의 통일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전부 개정해 2013년 1월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조정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또 기존 복지사업 중에서도 유사·중복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재투자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 이러한 두 조치는 유사·중복·누락·편중 방지,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가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생애주기별 복지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는 부처 간 또는 중앙·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비하거나 도입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별 부처나 지자체가 스스로 자기 예산을 줄일 인센티브가 없고 개별적으로 다른 복지사업들과 비교·검토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사회보장위원회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일정한 기준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다만 지자체의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과 지방자치 정신을 살려 중앙정부가 권고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지자체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복지제도와 복지지출의 내실화가 선결되어야 복지 확대 및 한국형 복지로의 안착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매일경제, 2015-11-09)

재정포럼

2015년 11월호 통권 제233호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희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담당연구위원 / 최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책임전문원)
신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15년 11월 16일 발행 / 제19권 제11호(통권 제233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044) 414-2130~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TEL: (02) 2269-2234

■ 인쇄 / 상일인쇄 TEL: (02) 2269-6770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 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 414-2114
- FAX: (044) 414-217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정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441-05-000011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